

# 199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질문표 (전수 조사구용)

지정통계 111-11-01.02

다음란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란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제 2 차 시험조사용)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통리동(아파트)	번지 호
				전화 ( )

조사구번호	거치번호	가구번호	매 층
			매

가구 구분	가족 구성	가구 원수
	핵가족세대구성	

명	모 든 사 람				만 5 세 이 상		만 12 세 이 상				만 15 세 이상					
	성 명	가구주와의관계	성 별	나 이	교 육 정 도	통근여부	직장또는학교(원)주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혼인상태						
<p>㉞ 1989. 9. 20. 0시현재 이 때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모두 몇 분입니까?</p> <p>㉟ 가족중 다음 사유로 현재 이 집에 없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성명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재해 주십시오.</p>	그러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분에 대해 가구주부터 빠짐없이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이 란은 왼쪽 란의 ㉞에 기재된 분 중에서 ㉟의 1~5에 해당되는 분을 추가한 후 ㉟의 6~10에 해당되는 분을 제외한 분만 기재하게 됩니다.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자녀의 경우 장남 또는 장남의 장녀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분의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 호적이거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분은 몇 년 만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 호적이거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집에 사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 연령 환산표를 보고 만나 이를 환산하십시오. ※ 이란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란입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 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대학원의 경우는 석사학위 과정이상을 말합니다.	현재 직업·학업 때문에 매일 아침 통근하고 있습니까? ※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㉟에서 ㉞까지 사선「\」을 그어 주십시오.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행정구역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주로 통근·통학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을 기준으로 하나만 표시해 주십시오.	통근·통학에 소요되고 있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총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유	성 명	가구주와관	조사대상여	①	②	③	④-1	④-2	④-3	④-4	⑤	⑥	⑦	⑧	⑨	⑩
1. 가족중 친지 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출타 중인 사람			조사대상			1 남	살	년도	월 일	살	1 안 다 녀 음 민 학 등 중 퇴	1 한 다.	1 같은 동·읍·면	1 시 내(외) 버 스 철도(지하철)	1 분	1 미 혼
2. 가족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			"			2 여	살	띠	1 양력	2 음력	2 안 한다.	2 다른 동·읍·면	2 다른 동·읍·면	2 통 근 버 스 택 승 차 거 보 타	2 분	2 유배우
3. 가족 중 선박, 항공기 등의 탑승승무원			"			1 남	살	년도	월 일	살	1 안 다 녀 음 민 학 등 중 퇴	1 한 다.	1 같은 동·읍·면	1 시 내(외) 버 스 철도(지하철)	1 분	1 미 혼
4. 가족과 함께 사는 영외 거주 직업 군인			"			2 여	살	띠	1 양력	2 음력	2 안 한다.	2 다른 동·읍·면	2 다른 동·읍·면	2 통 근 버 스 택 승 차 거 보 타	2 분	2 유배우
5. 가족 중 행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			1 남	살	년도	월 일	살	1 안 다 녀 음 민 학 등 중 퇴	1 한 다.	1 같은 동·읍·면	1 시 내(외) 버 스 철도(지하철)	1 분	1 미 혼
6. 가족 중 영내 거주군인 및 경찰대원			조사대상 이 아님			2 여	살	띠	1 양력	2 음력	2 안 한다.	2 다른 동·읍·면	2 다른 동·읍·면	2 통 근 버 스 택 승 차 거 보 타	2 분	2 유배우
7. 가족 중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 남	살	년도	월 일	살	1 안 다 녀 음 민 학 등 중 퇴	1 한 다.	1 같은 동·읍·면	1 시 내(외) 버 스 철도(지하철)	1 분	1 미 혼
8. 가족 중 요양소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사람			"			2 여	살	띠	1 양력	2 음력	2 안 한다.	2 다른 동·읍·면	2 다른 동·읍·면	2 통 근 버 스 택 승 차 거 보 타	2 분	2 유배우
9. 가족 중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에 재소중인 사람			"			1 남	살	년도	월 일	살	1 안 다 녀 음 민 학 등 중 퇴	1 한 다.	1 같은 동·읍·면	1 시 내(외) 버 스 철도(지하철)	1 분	1 미 혼
10. 가족 중 기숙사, 사회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 여	살	띠	1 양력	2 음력	2 안 한다.	2 다른 동·읍·면	2 다른 동·읍·면	2 통 근 버 스 택 승 차 거 보 타	2 분	2 유배우



<b>가. 모 든 가 구</b>	
① 댁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① 단독주택                      ⑤ 여관등 숙박업소 ② 아파트                        ⑥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③ 연립주택                      ⑦ 임시막사 ④ 비거주용건물내의주택      ⑧ 기타(오피스·판자집등)	⑪~⑫ 이 집의 건평과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⑪ 연건평                              평 ⑫ 대지면적                            평
② 이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까? ① 자기 집                        ④ 삭월세(보증부 월세) ② 전 세                            ⑤ 무 상 ③ 월 세	⑬~⑭ 이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⑬ 총 방 수                            개 ⑭ 거주가구수                        가구
③ 댁이 이집을 대표하는 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① 주가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③ 해당 집단가구는 ④~⑫까지 사선「\」을 그어 주십시오.	⑮ 이 집은 언제 지었습니까? ① 1950년이전                      ④ 1970 ~ 1979 ② 1950 ~ 1959                    ⑤ 1980 ~ 1985 ③ 1960 ~ 1969                    ⑥ 1986년 이후(            년도)
④ 댁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① 1                      ③ 3                      ⑤ 5 ② 2                      ④ 4                      ⑥ 6이상(            개)	⑯~⑲ 이 집의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⑯ 부엌시설: ① 재래식            ② 입 식 ⑰ 변소시설: ① 재래식            ② 수 세 식            ③ 없 음 ⑱ 목욕시설: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 음 ⑲ 상수도시설: ① 있 음            ② 없 음
⑤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① 상수도                      ④ 수동펌프 ② 간이수도                    ⑤ 우 물 ③ 자가수도                    ⑥ 기 타(            )	⑳ 이 집의 주된 난방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연탄아궁이                      ⑤ 재래식 아궁이 ② 연탄보일러                      ⑥ 가스보일러 ③ 단독기름보일러                ⑦ 기 타 ④ 중앙난방보일러
⑥ 취사 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① 연 탄                      ④ 전 기 ② 유 류                      ⑤ 입산연료 ③ 개 스                      ⑥ 기 타	다. 단독주택의 주가구 및 동거가구 * 가. 모든가구란의 ①란의 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가구와 동거가구만 해당됩니다.
⑦ 난방 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① 연 탄                      ④ 전 기 ② 유 류                      ⑤ 중앙난방 ③ 입산연료                      ⑥ 가스·기타	㉑ <b>주 가 구</b> ① 이 집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② 다음의 편의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개 2. 화장실시설.....                      개 3. 출입구시설.....                      개
⑧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① 텔레비전                      ④ 세 탁 기                      ⑦ 전축(오디오) ② 개인용 컴퓨터                ⑤ 전 화                      ⑧ 브이·티·알(V·T·R) ③ 냉 장 고                      ⑥ 자가용승용차                ⑨ 에 어 콘	㉒ <b>동 거 가 구</b> ① 댁에서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① 있 다            ② 없 다 2. 화장실시설: ① 있 다            ② 없 다 3. 출입구시설: ① 있 다            ② 없 다
나. 주택의 주가구 * 가. 모든가구란의 ①의 ①, ②, ③, ④와 ③의 ① 해당가구	
⑨ 이 집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나 무                      ④ 철근콘크리트 ② 적벽돌, 돌                    ⑤ 흙, 흙벽돌 ③ 시멘트제품                    ⑥ 기 타	
⑩ 이 집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① 기 와                      ④ 합 석 ② 스테이트                      ⑤ 짚, 갈대 ③ 스라브(~기와)                ⑥ 기 타	

홍, 권, 상 308

응답자 성명

조사자 성명

# 199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질문표 (표본조사구용)

## (제 2 차 시험조사용)

다음란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란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통읍동(아파트)	번지 호
			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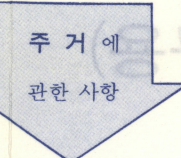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매

가구구분	가족 구성	세대구정	가구원수
	핵가족		

성명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나이	사 랫	출 생 지	만 1 세 이 상		만 5 세 이 상		통 근 여 부	12 세 이 상	이 용 교 통 수 단	상 통 근 통 학 소 요 시 간	경 제 활 동 상 태	취 업 여 부	15 세 이 상	세 산 이 상	직 업
						만 1년전거주지	만 5년전거주지	교육 정도	직장또는학교원주소									
1. 가족 중 친지 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출타 중인 사람																		
2. 가족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																		
3. 가족 중 선박, 항공기 등의 탑승 승무원																		
4. 가족과 함께 사는 영외 거주 직업 군인																		
5. 가족 중 행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6. 가족 중 영내 거주 군인 및 경찰대원																		
7. 가족 중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8. 가족 중 요양소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사람																		
9. 가족 중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에 재소중인 사람																		
10. 가족 중 기숙사, 사회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561 564 565





# 표문집 조사표 (주택조사표) 표문집 조사표 주택 및 주거 실태조사 (용인조형사 1차 5차)



만 15세이상 혼인상태	만 15세이상기혼자 혼인연령	만 15세 이상기 생존자녀수	만 15세 이상기 사망자녀수	혼 여자 총출생자녀수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혼인연령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의 연령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까? ※ 혼인연령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의 연령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은 모두 몇 분입니까? ※외지에 나가 생활하는 분도 포함됩니다.	남은 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분입니까?	지금까지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는 모두 몇 분입니까?
19	20	21	22	23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살 여 생일 전 후 년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가 모 든 가 구
<p>① 택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1 단독주택 5 여관등 숙박업소 2 아파트 6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3 연립주택 7 임시막사 4 비거주용건물 내의주택 8 기타(음막, 판자집등)</p> <p>② 이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까? 1 자기집 4 사월세(보증부 월세) 2 전세 5 무상 3 월세</p> <p>③ 택이 이집을 대표하는 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1 주거구 2 동거가구 3 집단가구 ※ 해당 집단가구는 ④~⑤까지 사선\"\"을 긋는다.</p> <p>④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1 1 3 5 2 2 4 6 6 이상(개)</p> <p>⑤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1 상수도 4 수도펌프 2 간이수도 5 우물 3 자가수도 6 기타( )</p> <p>⑥ 취사 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1 연탄 4 전기 5 임산연료 2 유류 6 가스 3 임산연료 6 가스·기타</p> <p>⑦ 난방 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1 연탄 4 전기 5 중앙난방 2 유류 6 가스·기타</p> <p>⑧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1 텔레비전 5 전화 9 에어컨 2 개인용 컴퓨터 6 자가용승용차 3 냉장고 7 전축(오디오) 4 세탁기 8 브리티알</p> <p>⑨ 가계를 꾸러나가기 위해 실제로 쓰고 있는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동안의 총지출액을 한달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1 20만원미만 5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2 20만원이상~40만원미만 6 150만원 ~200만원 3 40만원 ~70만원 7 200만원 ~300만원 4 70만원 ~100만원 8 300만원</p> <p>⑩ 가계를 꾸러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액을 한달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1 20만원미만 5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2 20만원이상~40만원미만 6 150만원 ~200만원 3 40만원 ~70만원 7 200만원 ~300만원 4 70만원 ~100만원 8 300만원</p> <p>⑪ 가구원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2개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1 임금, 급여 5 이자 및 배당소득 2 농림수산소득 6 연금소득 3 기타사업소득 7 생활보호 4 토지, 건물의 임대소득 8 기타</p>

나. 주택의 주거구 ※ 가. 모든가구란의 ①의 1, 2, 3, 4 와 ③의 1 해당가구
<p>⑫ 이집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 나무 4 철근콘크리트 2 적벽돌, 돌 5 흙, 흙벽돌 3 시멘트제품 6 기타</p> <p>⑬ 이집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 기와 4 합석 2 스테이트 5 짚, 갈대 3 스라브(~기와) 6 기타</p> <p>⑭~⑮ 이집의 전평과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14 연건평 평 15 대지면적 평</p> <p>⑯~⑰ 이집에는 방이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16 총 방 수 개 17 거주가구수 가구</p> <p>⑱ 이집은 언제 지었습니까? 1 1950년 이전 4 1970 ~ 1979 2 1950 ~ 1959 5 1980 ~ 1985 3 1960 ~ 1969 6 1986년 이후 ( 년도)</p> <p>⑲~⑳ 이집의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 부엌시설: 1 재래식 2 입식 20 변소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음 21 목욕시설: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3 없음 22 상수도시설: 1 있음 2 없음</p> <p>㉓ 이집의 주된 난방시설은 무엇입니까? 1 연탄아궁이 5 재래식 아궁이 2 연탄보일러 6 가스보일러 3 단독기름보일러 7 기타 4 중앙난방보일러</p>

다. 단독주택의 주거구 및 동거가구 ※ 모든 가구란의 ①의 1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구와 동거가구만 해당됩니다.
<p>㉔ 주거구 ① 이 집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개 ② 다음의 편의시설은 몇 개 있습니까? 개 1 부엌시설 ..... 개 2 화장실시설 ..... 개 3 출입구시설 ..... 개</p> <p>㉕ 동거가구 ① 이 택에서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시설: 1 있다. 2 없다. 2. 화장실시설: 1 있다. 2 없다. 3. 출입구시설: 1 있다. 2 없다.</p>

표문집 상 3기

응답자 성명

조사자 성명

2-7

199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 조 사 요 령 서

(제2차 시험조사용)

1988. 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목 차

I. 목 적 .....	3
II. 조 사 기 간 .....	3
III. 조사지역 .....	3
IV. 조 사 방 법 .....	3
V. 조 사 대 상 .....	4
VI. 일반적인 유의사항 .....	13
1. 마크상 유의사항 .....	13
2. 관리상 유의사항 .....	13
3. 조사표 기재 방법 .....	14
VII. 조사표 기입요령 .....	15
1. 난 외 사 항 .....	15
2. 난 내 사 항 .....	17
(1) 인구에 관한 사항 .....	17
(2) 가구에 관한 사항 .....	30
(3) 주택에 관한 사항 .....	35
(별첨) 행정구역 분류 .....	38

## I. 목 적

199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와 11월 상주인구조사에 대비하여 제 1차 시험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OMR 조사표를 사용하는데 설계상 문제점, 용어의 적합성, 조사원의 교육방법, 본 조사를 위한 경험축적 등 센서스 전반에 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 II. 조 사 기 간

1988. 8.29 ~ 9. 7 ( 10일간 )

## III. 조사지역

충북 충주시 충인동

충북 충주시 칠금동

## IV. 조 사 방 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한다.

## V. 조 사 대 상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구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 조사해야 할 사람

1. 가족중 친지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출타중인 사람
2. 가족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
3. 가족중 선박, 항공기등 탑승 승무원
4. 가족과 함께 사는 영외거주 직업군인
5. 가족중 행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 ○ 조사해서는 아니될 사람

1. 가족중 영내거주군인 및 전투경찰대원(의무경찰 포함)
2. 가족중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가족중 요양소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사람
4. 가족중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에 재소중인 사람
5. 양로원, 보육원, 부녀보호소등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6. 모든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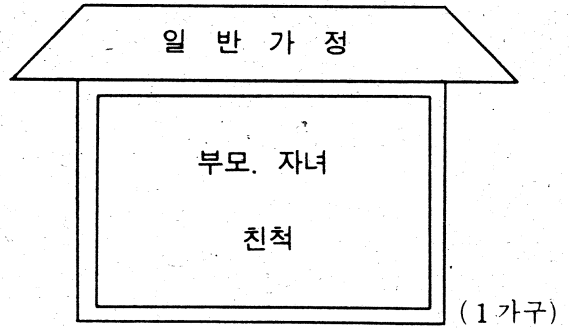
### 1. 가 구

이 조사에서는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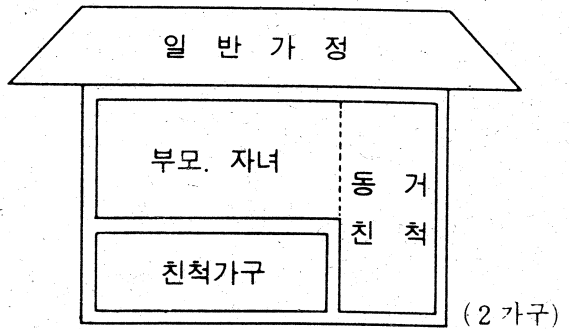
가. 일반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가구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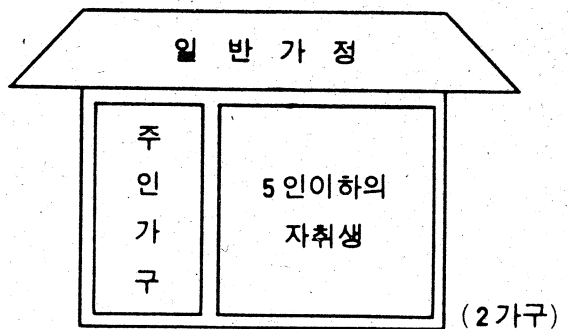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가구로 조사한다.



- 기타 친척(가구주와 관계란 참조)과 함께 살고 있으나 서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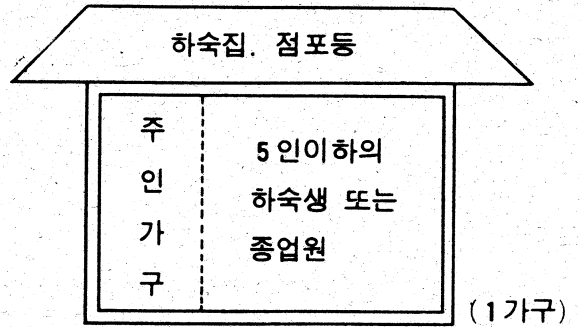
- 주인가구와 생계를 달리하는 5인이하의 자취생은 이들 자취생만을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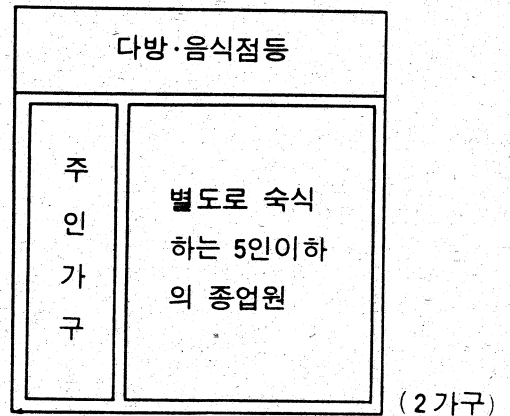
그런데 자취생들이 함께 살지않고 각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

을 때에는 각각을 별개의 가구로 본다.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또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의 동거가구원으로 보아 하나의 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이들 하숙생 또는 종업원이 6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인가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인가구와 독립시켜 별도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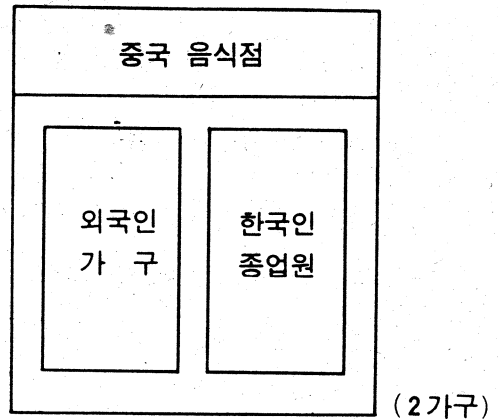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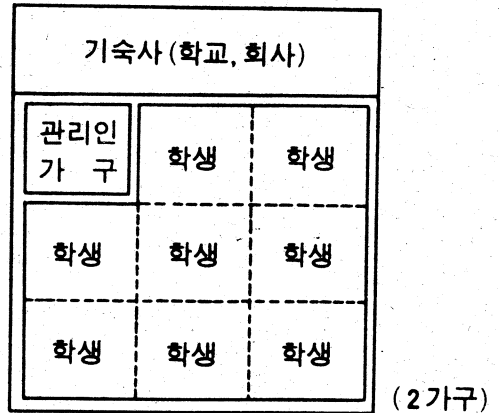
- 다방, 음식점, 상점등의 영업장소에서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은 이들 종업원만을 별도의 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종업  
원수가 5인이하이면  
주인가구에 포함시켜  
동거인으로 조사하고,  
6인이상이면 이들을  
독립시켜 별도의 집  
단가구로 조사한다.

- 기숙사, 고아원등 시  
설내에 거주하고 있  
는 관리인 또는 주  
인가구의 경우 공동  
취사를 하지 않고 독  
립취사를 하고 있으  
면 이들 관리인 또  
는 주인가구를 별도  
의 일반가구로 조사  
하고, 기숙생 또는 고  
아원생을 일괄하여 하  
나의 집단가구로 파  
악한다.

- 중국 음식점 등에서  
숙식하는 한국인 종업  
원은 중국인 가구의



는 별도로 독립시켜  
하나의 가구로 분리  
하여 조사하고 중국  
인 가구는 외국인 가  
구로 조사한다.

나. 집단가구란 통상 혈연관계가 없는 2인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거하는 기숙사, 고아원 또는 양로원등의 집단시설과 6인이상이 동일 거처에서 집단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가구로 파악한다.

- 고아원, 양로원, 영아원, 불구자 수용시설등 사회시설
- 공장, 학교, 병원, 회사등의 기숙사. 단, 명칭은 기숙사라 하더라도 공동취사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일반가구로 본다.
- 이재민, 수용소
- 공사장 및 건설현장의 임시 막사 또는 합숙시설
- 대사찰, 수녀원, 기도원등
- 주인가구와 숙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동거인수가 6인이상인 경우 동거인만을 별도로 하나의 집단가구로 파악한다.
- 혈연관계가 없는 6인이상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경우

## 2. 가 구 원

가구원이란 통상 함께 살고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 가. 상 주 자

담당조사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한다.

### 상주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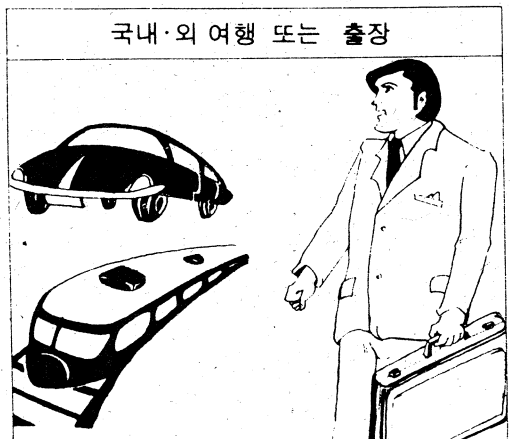
- 1) 현재 거처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 2) 계속 거주할 생각은 없으나 현재의 거처에서 **1개월이상** 살고 있는 사람
- 3) 1개월이상 살지는 않았으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살게될 사람

나. 집을 떠나 다른곳에 가 있는 가족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 본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 국내·외에 여행 또는 출장 중인 가족은 자기집에서 조사하나, 학업이나 직업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거나 기숙사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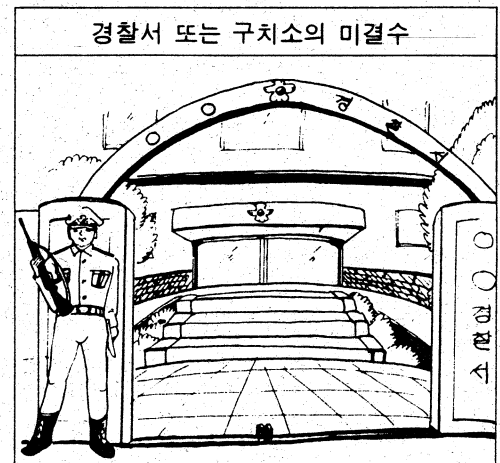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는 자기집에서 조사하나, 요양소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가족은 자기집에서 조사하지 않고 요양소에서 조사한다.



- 선박, 항공기의 탑승 승무원 은 반드시 자기집에서 조사하나, 외국회사 선박등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는 제외한다.



-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자기집에서 조사하나 실행 인도를 받고 교도소, 소년원 또는 보호감호소에서 복역중인 가족은 제외한다.



- 훈련 또는 동원, 소집 중인 모든 예비군과 방위병은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은 그 가족과 함께 자기집에서 조사하나, 가족과 함께 살지않는 영외거주 군인 또는 영내거주 군인, 전투경찰, 해양경찰은 소속부대에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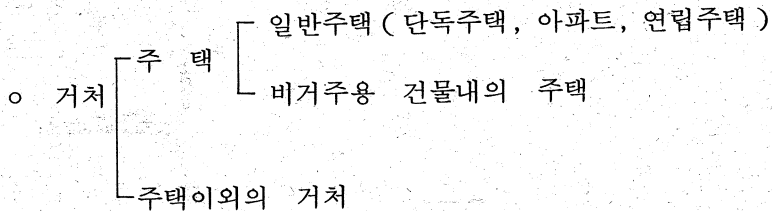


다. 위에서 열거한 경우 이외에 구직 또는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가족의 경우는 집을 떠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자기집에서 조사하고, 1개월 이상이면 제외한다.

라. 조사기간중 군에서 제대하여 집에 와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군에서 조사하였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군에서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 3. 거 처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주택이란 보통 독채로 된 살림집이나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 영구 건물이어야 한다.

둘째 :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

셋째 : 독립된 출입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넷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는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개별 거주 단위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나. 주택이외의 거처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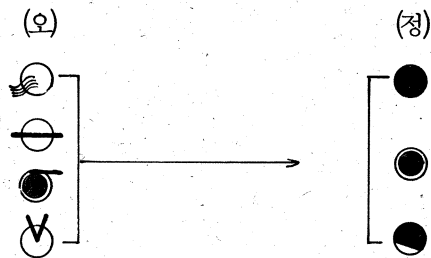
- 호텔, 여관등의 숙박업소
-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 사찰(암자 제외)
- 건설 공사현장의 임시 막사
- 기타 천막, 토굴, 폐차량, 판자집, 움막등



## Ⅵ. 일반적인 유의사항

### 1. 마크상 유의사항

- 가. 조사표는 한가구 단위로 작성한다.
- 나. 집단가구는 다음 조사표에 계속하여 작성한다.
- 다. OMR 조사표는 반드시 배부된 연필을 사용하고 볼펜, 싸인펜 등 기타 필기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라. 수정시는 칼등으로 굵지 말고 기 배부한 컴퓨터용 지우개로 깨끗이 지운다.
- 마. 마크시에는 중복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바. 마크는 해당 동그라미 전체를 까맣게 칠하되 동그라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사. 마크는 조사표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한다.
- 아. 조사표에는 어떠한 낙서를 하거나 기타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2. 관리상 유의사항

- 가. 조사표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말거나 접어서는 안된다.
- 나. 특히, 스트립(절단되는 점선)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는 안된다.
- 다.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며 우천시에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
- 라. 자석등의 근접을 피한다.

### 3. 조사표 기재방법

이 조사표의 색칠된 부분은 글씨나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며 동그라미 (○①②③④...⑨)부분은 해당 부분에만 까맣게 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 백단위, 십단위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도 마크한다.

“예” 대전시 동구의 행정구역 번호 → 01

(×)

시 군 구	○①②③④⑤
	○●②③④⑤⑥⑦⑧⑨

(○)

시 군 구	●①②③④⑤
	○●②③④⑤⑥⑦⑧⑨

조사구번호 002-1인 경우

(×)

조사구 번호	○①②③④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③④⑤⑥⑦⑧⑨
특 성 번호	●②③④⑤

(○)

조사구 번호	●①②③④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③④⑤⑥⑦⑧⑨
특 성 번호	●②③④⑤

총가구원수 3명인 경우

(×)

총 가 구 원 수	○①②③④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④⑤⑥⑦⑧⑨

(○)

총 가 구 원 수	●①②③④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④⑤⑥⑦⑧⑨

나. 행정구역란, 조사구번호란, 거처번호란, 가구번호란, 조사표매수란은 매 장마다 필히 마크한다.

다. 총가구원수란은 조사표가 2매 이상인 경우 맨 첫째장에만 총가구원수를 마크하고 다음 조사표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라. 가구 및 주택에 관한 면은 한가구마다 첫째장에만 마크한다.

## Ⅷ. 조사표 기입요령

### 1. 난외사항

#### 가. 행정구역

- 조사시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행정읍·면·동명 및 번지와 통리를 기입하고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명·동·호수로 기입한다.
- 전국 행정구역 분류표에 의한 행정구역부호를 매장마다 마크한다.  
 “예”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동 32번지 (칠금동 22)  
 (33) (12) (12)

#### 행정구역

	충청 시 도	충주 군 구	읍 면 동	통 반 리 호 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①②●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④⑤⑥⑦⑧⑨	①①●③④⑤⑥⑦⑧⑨	①①●③④⑤⑥⑦⑧⑨	①①●③④⑤⑥⑦⑧⑨	①①●③④⑤⑥⑦⑧⑨

#### 나. 조사구번호

’85년 센서스시의 조사구번호를 매장마다 마크한다.

“예” 3-1인 경우

	0   0   3   -   1
조사구 번호	●①②③④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①②●④⑤⑥⑦⑧⑨
특성번호	●②③④⑤

다. 거처번호

한 조사구내에서 거처번호는 1번부터 시작하며 매장마다 마크한다.

“예” 거처번호가

9인 경우

거 처	0	9
	-----	
번 호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	

라. 가구번호

한 조사구내에서 가구번호는 1번부터 시작하며 매장마다 마크한다.

“예” 가구번호가

8인 경우

가 구	0	0	8
	-----		
번 호	●①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⑨		

마. 총가구원수

조사표에 기재된 총가구원수를 첫째장에만 마크한다.

“예” 9명인 경우

105명인 경우

(보통 가구인 경우)

(집단 가구인 경우)

총 가 구 원 수	9	명
	-----	
	●①②③④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⑤⑥⑦⑧●	

총 가 구 원 수	105	명
	-----	
	①●②③④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②③④●⑥⑦⑧⑨	

바. 조사표 매수란

- 총가구원수는 6인 이하인 경우 앞면과 뒷면의 조사표 매수란에

“ 1매중 ①첫째장 ” 부분에 마크한다.

- 총가구원수가 7명이상 ( 2매이상 소요 )인 경우 앞면과 뒷면의 조사표란에 아래와 같이 마크한다.

“ 예 ” 조사표가 3매중 첫째장인 경우

조사 표 매 수	3 매중
	● 첫째장 ② 둘째장 ③ 셋째장 ④ 네째장이상

## 2. 난내사항

가. 인구에 관한 사항

### 1) 이름 및 성별

1	현재 이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모두 몇분입니까? 가구주(세대주)부터 빠짐없이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 ② 여
---	---	------------

- 응답자에게 가구주의 이름을 먼저 묻고 그 다음 가구원의 이름을 물어 가구원의 기입 순서에 의하여 기입한다.
- 가구원의 기입순서는 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 부모, 친척, 동거인 순으로 기입한다.
-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이름이 없는 아이는 “ 김○○ ” 등으로 기입한다.
- 응답자가 답변한 가구원중에 조사해서는 안될 사람 또는 조사해야할 사람이 빠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 성별은 조사대상자마다 성별을 구분하여 한란에 마크한다.

주의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이상(가구원수가 7인이상) 소요될 경우 가구원번호를 7, 8, 9 ... 로 정정할 필요는 없다.

2) 가구주와의 관계

2	이분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에 포함합니다)	⑩가구주 ⑪배우자 ⑫자녀 ⑳며느리·사위 ㉒손자·녀 ㉒손부사위 ③부·모 ③조부·모 ④형제·자매 ④형제자매의 배우자 ⑤기타친척 ⑥가사종사자 ⑦기타동거인
---	---	--

○ 가구주란

-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이상 함께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동거인으로 마크한다.
- 집단가구는 가구원중에서 한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 가구주는 반드시 첫번째란에 이름을 기입하고 “가구주와의 관계”란에는 “⑩가구주”에 마크하고 그외 가구원은 다음 관계란을 참조하여 마크한다.

⑪ 배우자 : 가구주의 처

⑫ 자녀 : 가구주의 자녀를 말하며 미혼 또는 기혼자녀를 포함한다.

㉑ 며느리 : 자녀의 배우자  
사 위

㉒ 손자·녀 : 가구주의 손자·녀를 말하며 미혼 또는 기혼 손자·  
녀를 포함한다.

㉓ 손 부 : 손자·녀의 배우자

㉔ 부 모 :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㉕ 조 부 모 :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㉖ 형제자매 :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㉗ 형제자매의 배우자 :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㉘ 기타친척 : 상기 열거된 이외의 친척

㉙ 가사종사자 : 가사일을 도우면서 보수를 받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

㉚ 기타동거인 : 동거인중 가사종사자를 제외한 사람

3) 나 이

3 나이	이분의 세는 나이는 몇살입니까?	세는나이	만	세
	*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살	띠	
		년	월	일
이분은 몇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띠입니까?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백 십 일	①①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정확한 만나이를 찾아내기 위해 아래 순서에 따라 질문한다.

-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를

물어 기입한다.

- 띠와 출생년월일을 물어 기입하고 ①양력 ②음력중 한란에 마크한다.
- 세는 나이, 띠, 출생년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질문하여 정정한다. 그래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띠, 세는 나이, 출생년월일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령환산표를 보고 세는 나이를 찾아낸다.
- 위와같은 질문이 끝나면 생일이 음력인 경우 양음력 환산표를 보고 양력으로 바꾸어 생일이 조사 기준시점 현재로 환산하여, 이전인 경우 세는 나이에서 1살을 빼고, 이후인 경우 2살을 뺀 만나이를 기입한다.(이 만나이가 마크되어야 한다)

4) 5년거주지

만 5 세 이 상	4	지금으로부터 5년전 (83. 8.29)에는 어디에서 살 았습니까?	1 같은집	시·도 국 ----- 시 군 구
	5 년 전 거 주 지		2 같은 시·군·구	
			3 다른 시·군·구	
			4 외국	

- 5년전 거주지는 만5세 이상인자에게만 질문한다.
- 현재 살고 있는 가족중에 5년전 고시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타지역에 살았던 가구원은 그곳을 5년전 거주지로 한다. 그러나 5년전에 군·전투경찰 또는 소년원에 있었던 사람은 당시 가족이 살고 있던 곳을 5년전 거주지로 한다.

① 같은집 : 5년전 살고 있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같은 경우



- ② 같은 시·군·구 : 같은 집은 아니나 5년전에 살고 있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같은 시·군·구에 있는 경우
- ③ 다른 시·군·구 : 5년전에 살고 있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당시 살고 있던 시·도, 시·군·구명을 기입하고 행정구역 분류표를 참조하여 해당부호를 마크한다.
- ④ 외 국 : 5년전 거주지가 북한 또는 외국일 경우에는 북한의 도명 또는 외국명을 기입하고 행정구역 분류표를 참조하여 해당부호를 마크한다.

5) 교육정도

만 6 세 이 상	5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학교</li> <li>② 중학교</li> <li>③ 고등학교</li> <li>④ 초대, 전문대</li> <li>⑤ 대학이상</li> <li>⑥ 안다녔음</li> </ul>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2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margin-left: 5px;">→</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학</li> <li>② 졸업</li> <li>③ 중퇴</li> </ul>
	교육 정 도				

- 교육정도는 만 6세이상인 자에게만 질문한다.
- 학교는 유치원(유아원)을 제외하고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모든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입시를 위한 학원과 타자, 경리, 부기 및 운전기술학원 등은 학교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 규 학 교	정규학교로 보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학교 (공민학교 포함)</li> <li>•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포함)</li> <li>• 고등학교 (구제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수학교 포함)</li> <li>• 초급대학·전문대학 (구제전문학교 포함)</li> <li>• 대학이상 (각급 사관학교, 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li> <li>• 검정고시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입검정고시합격 (국졸)</li> <li>② 고입검정고시합격 (중졸)</li> <li>③ 대입검정고시합격 (고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재, 미용학원</li> <li>• 타자, 경리, 부기학원</li> <li>•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li> <li>• 기술학원</li> <li>• 면허취득을 위한 학원</li> <li>• 노인대학, 주부대학등</li> </ul>

6) 혼인상태

6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 하여 주십시오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	--------------------------	-------------------------------------

- 만 15세 이상자에게만 질문한다.
-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

<주의>

만 14세이하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사선 또는 불필요한 표시를 기입해서는 안된다.

- ① 미 혼 : 이제까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사람
- ② 유배우 :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③ 사 별 : 배우자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있는 경우로써 6.25 등으로 배우자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있는 경우에도 사별로 간주한다.
- ④ 이 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있는 경우

7) 경제활동상태

7 경제 활동 상태	<p>지난 일주일 (8.21-8.27) 동안에 주로 무슨일을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음</li> <li>② 일시휴직</li> <li>③ 직장 (일자리) 을 구하고 있음</li> <li>④ 놀고 있었음</li> <li>⑤ 학교(원)에 다녔음</li> <li>⑥ 집안일을 돌보았음</li> <li>⑦ 기 타</li> </ul>
---------------------	--	--

○ 만 15세 이상자에게만 지난 1주일 ( 8.21 - 8.27 )간의 경제활동 상태를 묻고 해당되는 한란에 마크한다.

주의

“①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음 ②일시휴직”란에 마크되면 산업 및 직업항목이 조사되어야 하며 “③직장(일자리)을 구하고 있음~⑦기타”란에 해당되면 산업과 직업란의 기입이 끝난다. “②일시휴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휴직직전의 “산업과 직업”을 기입한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사를 짓거나 상점·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 다른 사람 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일한 사람
-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봉급을 받은 사람
- 일정한 직업 또는 직장은 없으나 지난 1주일간에 주로 돈벌이를 위해 일한 사람
- 임금 또는 봉급을 받지 않으나 가족이 하는 사업에 일의 도와 수입을 올린 사람 : 주 18시간이상 일했을 경우에 한하여 일한 것으로 본다.
-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일한 것으로 본다.
- 가정부·파출부

② 일시휴직

조사대상 주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휴가, 노동쟁의, 기계고장, 원료부족, 예비군훈련, 일기불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또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직장(일자리)을 구하고 있음

현재 전혀 일을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놀고 있었음

일정한 직업과 직장이 없고 생업이나 돈벌이 없이 놀고 있던 사람

⑤ 학교(원)에 다녔음

정규학교 뿐만아니라 양재, 미용, 타자, 자동차학원등 비정규학 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⑥ 집안일을 돌보았음

주로 자기 가정일을 돌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가정부, 정 원사, 자가운전사 등과 같은 가사종사자와 가족이 경영하는 사 업체에서 1일 평균 3시간이상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 “①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음”에 해당된다.

⑦ 기 타

이상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방위병, 연로 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재산수입, 이자수입, 배당금, 송금, 연금 등으로 일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8) 산 업

8  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분이 다니시는 직장 이름이나 사업체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li> </ul>	직장·사업체이름	
		주된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니시는 직장이나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데 입니까?</li> </ul>	대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중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소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만 15세 이상자로 경제활동상태란중 “①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 “②일시휴직”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질문한다.

( 직장, 사업체명 )

- 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사업체 ( 회사, 점포, 공장등 )의 이름을 기입하여 명칭이 길다고 간략하게 기입해서는 안된다.

(예) 산업분류

구 분	부 적 합	적 합	분류부호
주된 사업 내용 직장·사업체이름	음료판매	야쿠르트소매	621
	한국야쿠르트	한국야쿠르트삼포대리점	
"	염 색	섬유염색	321
	동양염공	동양염공주식회사	
"	제조업	섬유제조업	321
	상원실업	상원실업주식회사	
"	전자제품	전자제품소매	621
	부산프리텍션	부산프리텍션	
"	건 설	토목건설	512
	경제건설주식회사	경제건설주식회사	
"	대리점	여행사대리점	719
	대한항공주식회사	대한항공주식회사 구로대리점	
"	건축자재생산	건축자재알루미늄샷시생산	372
	조일공업주식회사	조일공업주식회사	
"	수선업	신발수선업	951
	시장에서	동부시장	
"	상자제조	나무상자제조	331
	유일산업	유일산업주식회사	
"	주류판매	주류도매	611
	주류합동상사	주류합동상사	
"	광 업	석탄광업	210
	한일광업주식회사	한일광업주식회사	
"	남자구두	남자구두소매	621
	○○제화○○대리점	○○제화○○대리점	

- 상호가 없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직장·사업체명)

파출부 - 남의집

미장이 - 건축공사장

지게꾼 - 시장 또는 서울역

농부 - 우리논 또는 남의논

(주된 사업내용)

-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기입한다.

“예” 남의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 파출부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 - 지게꾼

9) 직 업

9	이분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위 또는 직명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직위 또는 직명	
		말은일의 종류	
		대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중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소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직위 또는 직명)

- 직업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장, 계장, 전무, 상무, 공장장 등의 직위 또는 직명은 감독을 위한 책임의 정도 또는 수행하는 일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 주인이면서 사업체, 점포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이·미용사, 구멍가게 주인, 농부 등을 “자영인”으로 기재한다.

(맡은 일 종류)

-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사업체에서 자기 일하고 있는 일의 종류 또는 일하는 업무가 무엇인가를 조사한다.
  - 평소에 잘들어보지 못한 직업(굴신공, 절삭공)등을 대답하면 다시 질문하여 자세히 해석하여 기입한다.
  - 또한 직업을 물으면 공무원, 회사원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직장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범주에는 무수히 많은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정확히 질문하여 기입한다.



(예) 직업분류

구 분	부 적 합	적 합	분류번호
말은일의종류 직위또는직명	분 석 계 장	시멘트분석 분석계장	712
"	공 무 원 계 장	경리사무 경리계장	331
"	회 사 원	보 험 사 무	393 331 452
"	사 원	사 원	
"	사 무 원	병 원 안 내	394
"	계 원	계 원	
"	관 리	교 회 관 리	551
"	관 리 인	관 리 인	
"	전 기 과	전기고장수리	855
"	기 사	기 사	
"	의 사	내 과 의 사	061
"	의 사	의 사	
"	단 추	단 추 달 기	795
"	종 업 원	종 업 원	
"	판 매	의 약 판 매	451
"	사 원	사 원	
"	싱 크 대	싱크대소매	451
"	종 업 원	종 업 원	
"	판 매	신 발 소 매	410
"	자 영 인	자 영 인	
"	T . V	T . V 수 리	854
"	기 능 공	T . V 기 능 공	

나. 가구에 관한 사항

1) 거처의 종류

1	이택은 어떤 종류의 집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거처의	에 사는지 조사원이 판	③ 연립주택	④ 비거주용
종 류	단하여 하나만 마크하시		건물내의주택
	오.	⑤ 여관등	⑥ 기숙사, 특수
		숙박업소	사회시설
		⑦ 기 타	

- 이 항목은 각가구가 어떠한 곳(거처)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항목으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조사원이 판단하여 마크한다.
- 한주택이 주거와 영업(점포, 구멍가게등)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건물 건축의 주된 목적 파악
    - 주거용 : 단독주택
    - 영업용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건물 건축의 주된 목적이 불분명할때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평수가 클때 : 단독주택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평수가 클때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동일 거처에 여러가구가 살 경우에는 모든 가구는 같은 종류의 거처에 마크되어야 한다.

## 거처의 종류

### 1. 주 택

- ①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살림하며 살 수 있도록 건축 또는 개축된 건물을 말한다.
- ② 아 파트 : 한건물내에 다수의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상의 영구건물로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된 주택을 말한다.  
(상가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 ③ 연립주택 : 두가구 이상이 살도록 연립하여 건축한 3층 이하의 영구 건물내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주택을 말한다.  
(2-3층의 빌라, 맨숀, 다세대주택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 ④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사업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 부분이 주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예” 여관, 식당, 상가, 사무실 옥상, 병원, 공장등 건물내부의 일부분을 개조하였거나 건축하여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영업을 건물외 옥상 등에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해당된다.

### 2. 주택이외의 거처

- ⑤ 여관등 숙박업소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구

조물로서 여관에서 방을 빌어 살고있고 생계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

- “예”
-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여관건물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경우 - 주인가구는 “①단독주택”에 해당된다.
  - 여관주인이 여관 건물내에 별도의 주거시설을 갖추고 시설의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면 “④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해당된다.
  - 여관 주인가구에서 하숙하는 사람이 5명이하인 경우에는 “여관주인의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⑥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⑦ 기타 : 천막집, 판자집, 움막, 암자,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등과 같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2) 소유구분

2	이집은 택의 소유입니까?	① 자기집	② 전 세
소유	아니면 세들어 살고	③ 보증부월세	④ 월 세
구분	있습니까?	⑤ 무 상	

주택의 소유관계를 해당되는 번호에 마크한다.

① 자 기 집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전 세 : 자기집이 아닌 거처에서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

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월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월 세 :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와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별로 보증금액에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3) 취사연료

3	택에서는 취사연료로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 2개이상인 경우 주된 것 하나만 마크하시오 )	① 연탄                      ② 유 류 ③ 가스                      ④ 전 기 ⑤ 임산연료              ⑥ 기 타
---	---	---

일년 평균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를 물어 해당번호 하나만 마크한다.

### 4) 문화시설

4	택에서는 다음의 문화 시설 및 가재중 어느것을 갖고 있습니까?	①칼 라                      ②흑 색 ③냉장고                      ④세탁기 ⑤전 화                      ⑥자가용승용차 ⑦피아노·올젠 ⑧ ⑨에어컨
---	------------------------------------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를 모두 마크한다.

- 세탁기는 세탁을 위한 기기를 말하며 탈수 만을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전화기에는 교환전화도 포함한다.
-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가전용만 해당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사용방수

5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십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용방수	몇개입니까?	일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주택의 방수와는 관계없이 한가구가 실제 사용하는 방수를 말하며 해당되는 숫자에 마크한다.

— 방의 구성요건

- 바닥 또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막혀있고 1평(3.2㎡) 이상 높이 1.8m 이상으로 관습상 방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택내의 한 공간을 말한다.
- 다락방은 방의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경우에 방으로 보며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고 있을 때는 제외한다.
- 방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통로, 로비, 베란다, 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제외한다.

6) 가구구분

6	택은 이집의 주가구입니까?	① 주가구→(7번란에 계속)
가구구분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조사끝

- ① 주 가 구 : • 한주택에 한가구가 사는 경우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주가구로 본다
- 한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물론 주인가구가 주가구가 되나, 주인가구가 없이 세든 가구만이 함께 살고있는 경우 그중 한가구를 선정하여 주가구로 한다.
- ② 동거가구 : 한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있을 경우 주가구이외의 가구는 모두 동거가구로 한다.
- ③ 집단가구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등은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는 6인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에 관한 사항

1) 총거주가구수

7	이집에는 모두 몇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십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총거주 가구수		일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주가구 및 동거가구를 포함하여 이 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가구의 총수를 말한다.

2) 총방수

8	이집의 방은 모두 몇개 나 됩니까?	십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총 방 수		일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주가구 및 동거가구를 포함한 주택내의 총방수를 말한다.

3) 연건평

9	이집의 연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백	①①②③④⑤
연건평		십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일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 연건평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과 별도로 건축된 창고, 외양간, 차고 등은 제외하며 지하실은 포함한다.
-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은 분양평수를 연건평으로 한다.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또는 영업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부분만을 연건평으로 한다.

#### 4) 난방시설

10	이집의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2개이상인 경우 주된 것 하나만 마크하시오)	① 연탄아궁이 ③ 기름보일러 ⑤ 중앙난방 ⑦ 기 타	② 연탄보일러 ④ 가스보일러 ⑥ 재래식아궁이
----	--	---------------------------------------	--------------------------------

- 난방시설 종류중 해당하는 하나에만 마크한다.
- 주택내 부속건물이 있어 주건물과 난방시설이 다를 경우 주건물의 난방시설을 마크한다.
- 동거가구의 난방시설과 주가구의 난방시설이 서로 다를 경우 주가구의 난방시설을 마크한다.
- 난방시설이 두가지 이상일때는 주된 난방시설을 마크한다.
  - ① 연탄아궁이 : 연탄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도에 전달되어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② 연탄보일러 : 연탄으로 물을 데워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③ 기름보일러 : 기름(경유, 방카시유등)을 사용하여 물을 데워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④ 가스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여 물을 데워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⑤ 중앙난방 :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난방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대규모의 연탄 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⑥ 재래식아궁이 : 짚, 나무 등을 태워 생긴 열이 직접 온돌에 전달되어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⑦ 기타 : 태양열, 전기보일러, 실내난로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방법에 의한 난방시설을 말한다.

5) 목욕시설

11	이집의 목욕시설은	① 온수 ② 비온수
목욕 시설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③ 없음

목욕시설에는 온수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마크한다.

<b>11 서울특별시</b>			18 효창동	15 제전동	22 정릉동	22 상계동	16 신도동
19 용문동	19 강로제1동	16 동문동	16 한강로제2동	16 전농동	23 능계동	23 계동	17 화계동
20 한강로제3동	20 이촌제1동	17 동문동	21 이촌제2동	21 전농동	24 능계동	24 계동	18 도화동
11 청운동	22 이태원제1동	11 종로구	23 이태원제2동	22 답십리제1동	25 능계동	25 계동	19 용대동
12 효자동	24 이태원제3동	12 종로1.2가동	25 이태원제4동	23 답십리제2동	26 능계동	26 계동	20 용대동
13 사직동	26 한남제1동	23 종로3.4가동	27 한남제2동	24 답십리제3동	27 능계동	27 계동	21 염고산동
14 삼척동	28 한남제3동	24 종로5.6가동	28 한남제4동	25 답십리제4동	28 능계동	28 계동	22 노고산동
15 부암동	30 보광동	25 종로7.8가동	14 성동구	26 장안제1동	29 능계동	29 계동	23 수전동
16 평무동	11 하왕십리제1동	26 종로9.10가동	11 하왕십리제2동	27 장안제2동	30 능계동	30 계동	24 수전동
17 평무동	12 하왕십리제3동	27 종로11.12가동	12 하왕십리제4동	28 장안제3동	31 능계동	31 계동	25 수전동
18 교남동	13 도선동	28 종로13.14가동	13 도선동	29 장안제4동	32 능계동	32 계동	26 수전동
19 세종로동	14 마산강근동	29 종로15.16가동	14 마산강근동	30 장안제5동	33 능계동	33 계동	27 수전동
20 가회동	15 사당제1동	30 종로17.18가동	15 사당제2동	31 장안제6동	34 능계동	34 계동	28 수전동
21 종로1.2가동	16 행당제1동	31 종로19.20가동	16 행당제2동	32 장안제7동	35 능계동	35 계동	29 수전동
22 종로3.4가동	17 행당제3동	32 종로21.22가동	17 행당제4동	33 장안제8동	36 능계동	36 계동	30 수전동
23 종로5.6가동	18 흥당동	33 종로23.24가동	18 흥당동	34 장안제9동	16 중랑구	11 면목제1동	11 목동
24 이화동	19 금호1가동	34 종로25.26가동	19 금호1가동	35 장안제10동	12 면목제2동	12 면목제2동	12 목동
25 혜릉3가동	20 금호2가동	35 종로27.28가동	20 금호2가동	36 장안제11동	13 면목제3동	13 면목제3동	13 목동
26 명륜3가동	21 금호3가동	36 종로29.30가동	21 금호3가동	17 중랑구	14 면목제4동	14 면목제4동	14 목동
27 창신제1동	22 금호4가동	37 종로31.32가동	22 금호4가동	18 면목제5동	15 면목제5동	15 면목제5동	15 목동
28 창신제2동	23 옥수1가동	38 종로33.34가동	23 옥수1가동	19 면목제6동	16 면목제6동	16 면목제6동	16 목동
29 창신제3동	24 성수1가동	39 종로35.36가동	24 성수1가동	20 면목제7동	17 면목제7동	17 면목제7동	17 목동
30 창신제4동	25 성수2가동	40 종로37.38가동	25 성수2가동	21 상봉제1동	21 상봉제1동	21 상봉제1동	18 목동
31 승승제1동	26 성수2가동	12 중구	26 성수2가동	22 중화제2동	22 중화제2동	22 중화제2동	18 목동
12 태평로1가동	27 성수2가동	13 남대문로5가동	27 성수2가동	23 중화제3동	23 중화제3동	23 중화제3동	19 목동
12 소공동	28 필승로4.5가동	14 회현동	28 필승로4.5가동	24 중화제4동	24 중화제4동	24 중화제4동	20 목동
13 남대문로5가동	18 장충동	15 명동	18 장충동	25 중화제5동	25 중화제5동	25 중화제5동	21 목동
14 회현동	19 광희동	16 충무로4.5가동	19 광희동	26 중화제6동	26 중화제6동	26 중화제6동	22 목동
15 명동	20 을지3.4.5가동	17 필승로4.5가동	20 을지3.4.5가동	27 중화제7동	27 중화제7동	27 중화제7동	23 목동
16 충무로4.5가동	21 신당제1동	18 장충동	21 신당제1동	28 중화제8동	28 중화제8동	28 중화제8동	24 목동
17 필승로4.5가동	22 신당제2동	20 광희동	22 신당제2동	29 중화제9동	29 중화제9동	29 중화제9동	25 목동
18 장충동	23 신당제3동	21 을지3.4.5가동	23 신당제3동	30 중화제10동	30 중화제10동	30 중화제10동	26 목동
19 광희동	24 신당제4동	22 신당제1동	24 신당제4동	31 중화제11동	31 중화제11동	31 중화제11동	27 목동
20 을지3.4.5가동	25 신당제5동	23 신당제2동	25 신당제5동	32 중화제12동	32 중화제12동	32 중화제12동	28 목동
21 신당제1동	26 신당제6동	24 신당제3동	26 신당제6동	33 중화제13동	33 중화제13동	33 중화제13동	29 목동
22 신당제2동	27 신당제7동	25 신당제4동	27 신당제7동	34 중화제14동	34 중화제14동	34 중화제14동	30 목동
23 신당제3동	28 신당제8동	26 신당제5동	28 신당제8동	35 중화제15동	35 중화제15동	35 중화제15동	31 목동
24 신당제4동	29 신당제9동	27 신당제6동	29 신당제9동	36 중화제16동	36 중화제16동	36 중화제16동	32 목동
25 신당제5동	30 신당제10동	28 신당제7동	30 신당제10동	17 성북구	11 성북제1동	11 창제1동	11 염창동
26 신당제6동	31 신당제11동	29 신당제8동	31 신당제11동	12 성북제2동	12 성북제2동	12 창제2동	12 등촌1동
27 신당제7동	32 신당제12동	30 신당제9동	32 신당제12동	13 동소문동	13 동소문동	13 창제3동	13 등촌2동
28 중림동	33 신당제13동	31 신당제10동	33 신당제13동	14 삼선제1동	14 삼선제1동	14 월계제1동	14 화곡1동
13 용산구	34 신당제14동	32 신당제11동	34 신당제14동	15 삼선제2동	15 삼선제2동	15 월계제2동	15 화곡2동
11 후암동	35 신당제15동	33 신당제12동	35 신당제15동	16 동선제1동	16 동선제1동	16 월계제3동	16 화곡3동
12 용산2가동	36 신당제16동	34 신당제13동	36 신당제16동	17 동선제2동	17 동선제2동	17 공릉제1동	17 화곡4동
13 남영동	37 신당제17동	35 신당제14동	37 신당제17동	18 동선제3동	18 동선제3동	18 공릉제2동	18 화곡5동
14 청파제1동	38 신당제18동	36 신당제15동	38 신당제18동	19 동선제4동	19 동선제4동	19 공릉제3동	19 화곡본동
15 청파제2동	39 신당제19동	37 신당제16동	39 신당제19동	20 동선제5동	20 동선제5동	20 공릉제4동	20 화곡양동
16 원효로제1동	40 신당제20동	38 신당제17동	40 신당제20동	21 안암동	21 안암동	21 공릉제5동	21 화곡양동
17 원효로제2동	15 용두제1동	39 신당제18동	15 용두제1동	22 안암동	22 안암동	22 마포구	22 발산동
	16 용두제2동	40 신당제19동	16 용두제2동	23 안암동	23 안암동	11 아현제1동	23 공방동
	17 계기제1동	11 신실동	17 계기제1동	24 안암동	24 안암동	12 아현제2동	24 방화동
		12 용두제1동	12 용두제1동	25 안암동	25 안암동	13 아현제3동	25 방화동
		13 용두제2동	13 용두제2동	26 안암동	26 안암동	14 공덕제1동	25 구로구
		14 계기제1동	14 계기제1동	27 안암동	27 안암동	15 공덕제2동	

11	구로제1동	11	동작제1동	18	방배제1동	18	천호제1동	19	수정제4동	34	개금제1동
12	구로제2동	12	노량진제2동	19	방배제2동	19	천호제2동	20	정제5동	35	개금제2동
13	구로제3동	13	노량진제3동	20	방배제3동	20	천호제3동	21	제4동	36	개금제3동
14	구로제4동	14	상도제1동	21	방배제4동	21	천호제4동	22	제5동	37	개금제4동
15	구로제5동	15	상도제2동	22	방배제5동	22	천호제5동	23	제6동	38	개금제5동
16	구로제6동	16	상도제3동	23	방배제6동	23	천호제6동	24	제7동	39	개금제6동
17	가리봉제1동	17	상도제4동	24	방배제7동	24	천호제7동	25	제8동	<b>16 동래구</b>	
18	가리봉제2동	18	본동	<b>30 강남구</b>		25	천호제8동	26	제9동	11	수민동
19	가리봉제3동	19	혹석제1동	11	신사동	26	천호제9동	27	제10동	12	수복동
20	독산제1동	20	혹석제2동	12	논현동	27	천호제10동	28	제11동	13	명륜동
21	독산제2동	21	혹석제3동	13	학동	<b>21 부산직할시</b>		29	제12동	14	명륜동
22	독산제3동	22	사당제1동	14	압정동	<b>14 영도구</b>		11	대교동	15	은은동
23	독산제4동	23	사당제2동	15	압정동	<b>11 중구</b>		12	대평동	16	은은동
24	독산본동	24	사당제3동	16	삼성제1동	11	중안동	13	남향동	17	사사동
25	시흥제1동	25	사당제4동	17	삼성제2동	12	중광동	14	영선제1동	18	사사동
26	시흥제2동	26	대방제1동	18	대치제1동	13	대청동	15	영선제2동	19	사사동
27	시흥제3동	27	신대방제1동	19	대치제2동	14	보수제1동	16	영선제3동	20	사사동
28	시흥제4동	28	신대방제2동	20	대치제3동	15	보수제2동	17	영선제4동	21	거제동
29	시흥본동	<b>28 관악구</b>		21	역삼제1동	16	부평동	18	영선제5동	22	거제동
30	고척제1동	11	봉천본동	22	개포제1동	17	광복동	19	영선제6동	23	거제동
31	고척제2동	12	봉천제1동	23	개포제2동	18	남포동	20	영선제7동	24	거제동
32	고척제3동	13	봉천제2동	24	개포제3동	19	영주제1동	21	영선제8동	25	연산동
33	개봉제1동	14	봉천제3동	25	개포제4동	20	영주제2동	22	영선제9동	26	연산동
34	개봉제2동	15	봉천제4동	26	개포제5동	<b>12 서구</b>		23	영선제10동	27	연산동
35	개봉제3동	16	봉천제5동	27	개포제6동	11	대신제1동	24	영선제11동	28	연산동
36	개봉제4동	17	봉천제6동	<b>31 송파구</b>		12	대신제2동	25	영선제12동	29	연산동
37	오류제1동	18	봉천제7동	11	풍납제1동	13	대신제3동	26	영선제13동	30	연산동
38	신도림동	19	봉천제8동	12	풍납제2동	14	대신제4동	<b>15 부산진구</b>		31	연산동
<b>26 영등포구</b>		20	봉천제9동	13	거여동	15	서대신제1동	11	부전제1동	32	연산동
11	영등포제1동	21	봉천제10동	14	마천제1동	16	서대신제2동	12	부전제2동	33	연산동
12	영등포제2동	22	봉천제11동	15	마천제2동	17	서대신제3동	13	범진동	34	안락동
13	영등포제3동	23	남림본동	16	방이동	18	서대신제4동	14	범지동	35	안락동
14	영등포제4동	24	신림본동	17	송파동	19	부용동	15	초읍동	<b>17 남구</b>	
15	당산제1동	25	신림제1동	18	송파촌동	20	부성동	16	양정제1동	11	대연제1동
16	당산제2동	26	신림제2동	19	가락동	21	아미제1동	17	양정제2동	12	대연제2동
17	도림제1동	27	신림제3동	20	문정동	22	아미제2동	18	양정제3동	13	대연제3동
18	도림제2동	28	신림제4동	21	잠실본동	23	초장동	19	양정제4동	14	대연제4동
19	문래제1동	29	신림제5동	22	잠실제1동	24	충무동	20	전포제1동	15	대연제5동
20	문래제2동	30	신림제6동	23	잠실제2동	25	남부민제1동	21	전포제2동	16	대연제6동
21	양평제1동	31	신림제7동	24	잠실제3동	26	남부민제2동	22	전포제3동	17	용호제1동
22	양평제2동	32	신림제8동	25	잠실제4동	27	남부민제3동	23	전포제4동	18	용호제2동
23	신길제1동	33	신림제9동	26	잠실제5동	28	암남동	24	부암제1동	19	용호제3동
24	신길제2동	34	신림제10동	27	잠실제6동	<b>13 동구</b>		25	부암제2동	20	용호제4동
25	신길제3동	35	신림제11동	<b>29 서초구</b>		11	초량제1동	26	부암제3동	21	용호담동
26	신길제4동	<b>29 서초구</b>		11	하일동	12	초량제2동	27	당감제1동	22	감만제1동
27	신길제5동	11	서초제1동	12	일일동	13	초량제3동	28	당감제2동	23	감만제2동
28	신길제6동	12	서초제2동	13	명일동	14	초량제4동	29	당감제3동	24	우암제1동
29	신길제7동	13	잠초본동	14	고덕동	15	초량제5동	30	당감제4동	25	우암제2동
30	대림제1동	14	반포본동	15	암사제1동	16	수정제1동	31	가가야제1동	26	남천제1동
31	대림제2동	15	반포제1동	16	암사제2동	17	수정제2동	32	가가야제2동	27	남천제2동
32	대림제3동	16	반포제2동	17	암사제3동	18	수정제3동	33	가가야제3동	28	문현제1동
<b>27 동작구</b>		17	반포제3동	17	암사제3동						

29	문헌현제제	16	하	11	11	25	남	14	20	23	6	동
30	문문문문	17	신	12	12	26	남	11	21	24	금	동
31	현현현현	18	장	12	12	27	남	12	22	13	림	동
32	제제제제	19	장	12	12	28	남	13	23	11	창	동
33	영영영영	20	다	12	12	29	남	14	24	12	구	동
34	미미미미	21	구	12	12	12	동	15	25	13	구	동
35	망망망망	22	감	12	12	11	신	16	26	14	구	동
36	광광광광	23	감	12	12	12	신	17	27	15	구	동
37	광광광광	21	금	12	12	13	신	18	28	16	구	동
38	광광광광	11	서	12	12	14	신	19	29	17	구	동
39	광광광광	12	서	12	12	15	신	20	11	18	구	동
40	광광광광	13	서	12	12	16	신	21	12	19	구	동
18	북	14	서	12	12	17	신	22	13	20	구	동
11	구포제	15	서	12	12	18	신	23	14	21	구	동
12	구포제	16	서	12	12	19	신	24	15	22	구	동
13	구포제	17	서	12	12	20	신	25	16	23	구	동
14	구포제	18	서	12	12	21	신	26	17	24	구	동
15	구포제	19	서	12	12	22	신	27	18	25	구	동
16	구포제	20	서	12	12	23	신	28	19	26	구	동
17	구포제	21	서	12	12	24	신	29	20	27	구	동
18	구포제	22	서	12	12	25	신	30	21	28	구	동
19	구포제	23	서	12	12	26	신	31	22	29	구	동
20	구포제	24	서	12	12	27	신	32	23	30	구	동
21	구포제	25	서	12	12	28	신	33	24	31	구	동
22	구포제	26	서	12	12	29	신	34	25	32	구	동
23	구포제	27	서	12	12	30	신	35	26	33	구	동
24	구포제	28	서	12	12	31	신	11	27	34	구	동
25	구포제	29	서	12	12	32	신	12	28	35	구	동
26	구포제	30	서	12	12	33	신	13	29	11	구	동
27	구포제	31	서	12	12	34	신	14	30	12	구	동
28	구포제	32	서	12	12	35	신	15	31	13	구	동
19	해운대구	11	내	11	11	13	서	24	11	14	남	동
11	우우우우	12	내	11	11	12	내	11	12	11	구	동
12	우우우우	13	내	11	11	13	내	12	13	12	구	동
13	우우우우	14	내	11	11	14	내	13	14	13	구	동
14	우우우우	15	내	11	11	15	내	14	15	14	구	동
15	우우우우	16	내	11	11	16	내	15	16	15	구	동
16	우우우우	17	내	11	11	17	내	16	17	16	구	동
17	우우우우	18	내	11	11	18	내	17	18	17	구	동
18	우우우우	19	내	11	11	19	내	18	19	18	구	동
19	우우우우	20	내	11	11	20	내	19	20	19	구	동
20	우우우우	21	내	11	11	21	내	20	21	20	구	동
21	우우우우	22	내	11	11	22	내	21	22	21	구	동
22	우우우우	23	내	11	11	23	내	22	23	22	구	동
23	우우우우	24	내	11	11	24	내	23	24	23	구	동
24	우우우우	25	내	11	11	25	내	24	25	24	구	동
20	사하구	11	피	11	11	12	피	11	12	11	구	동
11	피피피피	12	피	11	11	13	피	12	13	12	구	동
12	피피피피	13	피	11	11	14	피	13	14	13	구	동
13	피피피피	14	피	11	11	15	피	14	15	14	구	동
14	피피피피	15	피	11	11	16	피	15	16	15	구	동
15	피피피피	16	피	11	11	17	피	16	17	16	구	동





32	동신	산동	면	34	봉용	평평	면	35	강현	면
33	신남	동	면	35	진도	면	면	44	명주	군
34	남서	면	면	36	도	부	면	11	문진	읍
35	사사	면	면	37	정선	읍	면	31	성왕	면
36	신신	면	면	37	정선	읍	면	32	구강	면
37	복복	면	면	11	정고	읍	면	33	옥사	면
38	복산	면	면	12	사신	읍	면	34	연연	면
32	홍천	군		13	동남	읍	면	35	삼척	군
11	홍천	읍		14	북부	읍	면	36	도원	읍
31	화두	면		31	읍	면	면	37	근하	면
32	내내	면		32	읍	면	면	45	노미	면
33	서서	면		33	읍	면	면	11	가	면
34	동동	면		34	읍	면	면	12	가	면
35	남남	면		35	읍	면	면	31	가	면
36	서서	면		38	읍	면	면	32	가	면
37	북북	면		11	읍	면	면	33	가	면
38	내내	면		12	읍	면	면	34	가	면
39	방방	면		13	읍	면	면	35	가	면
33	횡성	군		14	읍	면	면			
11	횡성	읍		31	읍	면	면			
31	우천	면		32	읍	면	면			
32	안안	면		39	읍	면	면			
33	둔내	면		11	읍	면	면			
34	감천	면		31	읍	면	면			
35	청일	면		32	읍	면	면			
36	공근	면		33	읍	면	면			
37	서원	면		34	읍	면	면			
34	원성	군		40	읍	면	면			
31	소초	면		11	읍	면	면			
32	호저	면		31	읍	면	면			
33	지문	면		32	읍	면	면			
34	부막	면		33	읍	면	면			
35	부론	면		34	읍	면	면			
36	귀래	면		41	읍	면	면			
37	홍대	면		11	읍	면	면			
38	관부	면		31	읍	면	면			
39	신림	면		32	읍	면	면			
35	영월	군		33	읍	면	면			
11	영월	읍		34	읍	면	면			
12	상동	면		35	읍	면	면			
31	중동	면		42	읍	면	면			
32	하동	면		11	읍	면	면			
33	북면	면		12	읍	면	면			
34	남서	면		31	읍	면	면			
35	서주	면		32	읍	면	면			
36	주천	면		33	읍	면	면			
37	수주	면		43	읍	면	면			
36	평창	군		11	읍	면	면			
11	평창	읍		31	읍	면	면			
31	미탄	면		32	읍	면	면			
32	방림	면		33	읍	면	면			
33	대화	면		34	읍	면	면			

34 충청남도		
00	대전	시
01	동	구
11	원인	동
12	인효	동
13	효신	동
14	판용	동
15	암운	동
16	대동	1 동
17	대동	2 동
18	대자	동
19	신안	동
20	신소	동
21	신소	동

40	양	면	39	구	면	35	읍	면	면
11	입	면	41	예	산	36	둔	포	면
12	장	면	11	산	교	37	영	인	면
13	세	면	12	교	솔	38	인	주	면
14	석	면	31	대	양	39	신	장	면
15	초	면	32	신	시	40	도	고	면
37	초	면	33	광	홍	41	신	창	면
11	장	읍	34	대	봉	45	천	원	군
12	서	읍	35	웅	산	11	성	황	읍
31	마	면	36	덕	단	12	성	거	면
32	화	면	37	봉	덕	31	공	세	면
33	기	면	38	고	신	32	광	덕	면
34	한	면	39	신	암	33	목	천	면
35	마	면	40	오	가	34	북	성	면
36	시	면	42	서	산	35	성	수	면
37	문	면	11	서	안	36	수	병	면
38	판	면	12	태	면	37	병	동	면
39	죽	면	13	안	지	38	동	직	면
			31	인	석	39	직	입	면
			32	부	봉	40	입	장	면
			33	팔	곡				
			34	지	산				
			35	대	연				
			36	성	암				
			37	음	산				
			38	운	미				
			39	해	북				
			40	고	북				
			41	남	원				
			42	근	원				
			43	소	원				
			44	원	원				
			45	이	원				
			46	고	남				
			43	당	진				
			11	당	진				
			12	합	덕				
			31	고	대				
			32	석	문				
			33	대	호				
			34	정	지				
			35	면	면				
			36	순	성				
			37	우	강				
			38	신	평				
			39	송	악				
			40	송	산				
			44	아	산				
			31	송	악				
			32	배	방				
			33	탕	정				
			34	염	치				

33	문	화	2	동
34	산	성		동
03	서	구		
11	북	수		동
12	도	마	1	동
13	도	마	2	동
14	변	용		동
15	용	문		동
16	과	정		동
17	가	장		동
18	갈	마		동
19	가	수		원
04	유	성		출
11	은	천	1	동
12	은	천	2	동





17	덕평남	연덕제	동동동	38	입	면	40	남	양	면	39	음	천	46	합	평	군	35	지	산	면
18	남	덕	동	39	검	면	41	동	강	면	42	해	남	군	11	평	군	36	조	도	면
19	제	전	동	40	오	산	42	대	서	면	11	삼	읍	면	31	불	읍	51	신	안	군
20	장	천	동	33	구	레	43	두	원	면	31	화	면	면	32	광	면	11	진	도	면
21	중	안	동	11	문	채	38	보	성	면	32	현	면	면	33	교	면	31	신	자	면
22	대	평	동	31	간	척	12	보	성	면	34	송	면	면	34	동	면	32	증	도	면
23	덕	홍	동	32	토	전	31	별	교	면	35	북	면	면	35	력	면	33	임	자	면
24	인	안	동	33	마	지	32	노	동	면	36	옥	면	면	36	백	면	34	하	비	면
25	왕	조	동	34	광	산	33	미	동	면	37	북	면	면	37	내	면	35	도	금	면
26			동	35	용	의	34	결	동	면	38	계	면	면	38	덕	면	36	하	초	면
14	나	주	동	36	산	방	35	을	동	면	39	마	면	면	47	영	군	37	신	의	면
11	송	월	동	37	양	동	36	문	동	면	36	내	면	면	11	영	읍	11	장	의	면
12	영	강	동	34	광	양	11	분	동	면	37	덕	면	면	12	백	읍	12	안	산	면
13	향	교	동	11	광	양	37	조	동	면	38	성	면	면	13	홍	읍	13	팔	좌	면
14	금	남	동	31	봉	강	38	득	동	면	39	량	면	면	31	대	면	40	압	금	면
15	성	북	동	32	옥	통	39	회	동	면	40	치	면	면	32	영	면	32	압	태	면
16	송	현	동	33	옥	곡	40	웅	동	면	39	순	면	면	33	암	면	33	암		면
17	남	산	동	34	진	상	39	화	동	면	11	순	면	면	34	진	면	34	장	소	면
18	영	산	동	35	진	실	11	화	동	면	31	천	면	면	35	정	면	35	소	약	면
19	부	산	동	36	다	압	32	한	동	면	32	양	면	면	36	복	면	36	금	태	면
20	이	덕	동	35	여	천	33	춘	동	면	33	청	면	면	37	종	면	37	안	금	면
21	가	창	동	11	돌	산	34	이	동	면	34	능	면	면	38	포	면	38	성	시	면
15	여	천	시	31	소	라	35	도	동	면	35	도	면	면	48	장	면	11	포	항	시
11	쌍	봉	동	32	울	촌	36	도	동	면	36	이	면	면	11	장	면	11	대	향	동
12	시	전	동	33	화	양	37	이	동	면	37	능	면	면	31	진	면	12	중	양	동
13	여	천	동	34	남	정	38	이	동	면	38	도	면	면	32	남	면	13	덕	수	동
14	주	삼	동	35	화	산	39	이	동	면	39	부	면	면	33	동	면	14	대	신	동
15	삼	일	동	36	삼	정	40	부	동	면	40	복	면	면	34	삼	면	15	동	빈	동
16	묘	도	동	36	승	주	40	동	동	면	11	동	면	면	35	호	면	16	화	산	동
17	상	암	동	11	승	주	41	남	동	면	12	동	면	면	36	무	면	17	상	간	동
31	담	양	군	31	해	주	42	동	동	면	12	홍	면	면	37	안	면	18	상	대	동
11	갑	양	읍	32	서	전	39	장	군	면	11	관	면	면	38	로	면	19	상	1	동
31	봉	산	면	33	황	등	11	관	읍	면	12	대	면	면	39	향	면	20	해	2	동
32	고	서	면	34	월	암	12	관	읍	면	13	대	면	면	40	탄	면	21	해	2	동
33	남	서	면	35	주	광	31	대	읍	면	31	용	면	면	49	계	면	22	송	도	동
34	창	평	면	36	송	서	32	용	읍	면	32	안	면	면	11	경	면	23	양	화	동
35	대	덕	면	37	의	안	33	안	읍	면	33	장	면	면	12	운	면	24	죽	1	동
36	무	정	면	38	낙	량	34	장	읍	면	34	평	면	면	13	해	면	25	죽	2	동
37	금	성	면	39	별	사	35	장	읍	면	35	유	면	면	31	운	면	26	용	1	동
38	용	성	면	40	상	안	36	유	읍	면	36	부	면	면	32	제	면	27	용	2	동
39	일	산	면	37	홍	군	37	회	읍	면	37	회	면	면	33	남	면	28	우	2	동
40	수	부	면	11	고	읍	41	강	읍	면	31	진	면	면	34	지	면	29	두	2	동
41	대	전	면	12	도	양	11	강	읍	면	32	진	면	면	35	곡	면	30	장	2	동
32	곡	성	군	31	도	덕	31	군	읍	면	33	동	면	면	36	남	면	31	환	1	동
11	곡	성	읍	32	풍	양	32	대	읍	면	34	량	면	면	37	시	면	32	치	2	동
31	오	곡	면	33	금	산	33	대	읍	면	35	구	면	면	38	평	면	33	계	2	동
32	삼	곡	면	34	도	화	34	대	읍	면	36	암	면	면	45	안	면	34	효	1	동
33	석	곡	면	35	포	래	35	신	읍	면	37	전	면	면	50	천	면	35	대	2	동
34	목	사	면	36	봉	암	36	성	읍	면	38	전	면	면	11	포	면	36	내	2	동
35	죽	곡	면	37	점	내	37	성	읍	면	40	전	면	면	31	평	면	37	성	1	동
36	고	달	면	38	산	역	38	작	읍	면	41	전	면	면	32	도	면	38	성	1	동
37	옥	과	면	39	과		38	병	읍	면	42	천	면	면	33	황	면	39	황	1	동

14	중성	양건	동동	16	선원	주남	동동	16	모달	전성	동	43	녹청	전송	면	36	현강	곡동	면	37	벽초	진전	면
15	탑	정남	동동	17	신신	시	동동	17	가	성	군	35	청	송	군	37	천	북	면	38	월	향	면
16	황	교도	동동	18	신신	평	동동	18	다	창	면	31	부	동	읍	40	영	천	군	39	칠	향	군
17	인	도동	동동	19	신신	1	동동	19	하	사	면	31	현	남	면	11	금	읍	면	11	왜	관	읍
18	선	동동	동동	20	비공	2	동동	20	화	빈	면	31	안	동	면	31	청	면	면	31	지	천	면
19	도	동동	동동	21	평산	단	동동	21	옥	원	면	32	파	서	면	31	청	면	면	31	동	명	면
20	보	동동	동동	22	공광	평	동동	22	현	포	면	33	진	동	면	32	신	면	면	32	가	산	면
21	용	동동	동동	23	사단	곡	동동	23	유	공	면	34	안	서	면	33	화	면	면	33	석	전	면
22	정	천	동동	24	상임	모	동동	24	구	공	면	35	과	덕	면	34	화	면	면	34	석	삼	면
23	불	래	동동	25	모	오	동동	25	지	가	면	36	진	천	면	35	자	면	면	35	복	목	면
24	국	국	동동	26	오	동	동동	26	위	지	면	37	영	보	면	36	임	면	면	36	약	산	면
25	시	시	동동	27	동	미	동동	27	군	위	면	38	양	안	면	37	고	면	면	37	기	산	면
26	시	시	동동	28	양	포	동동	28	32	위	면	39	영	안	면	38	북	면	면	46	금	흥	면
13	김	천	동동	29	양	포	동동	29	11	위	면	11	영	안	면	39	대	면	면	31	동	소	면
11	용	호	동동	16	영	시	동동	11	31	보	면	31	입	기	면	40	화	면	면	31	남	아	면
12	성	암	동동	16	산	주	동동	12	32	령	면	32	청	월	면	41	경	면	면	32	개	가	면
13	평	내	동동	12	하	1	동동	13	33	계	면	33	일	비	면	11	하	면	면	33	감	어	면
14	남	화	동동	13	하	2	동동	14	34	보	면	34	수	석	면	12	와	면	면	34	문	모	면
15	환	산	동동	14	하	3	동동	15	35	호	면	37	영	덕	면	31	진	면	면	35	부	산	면
16	신	금	동동	15	하	4	동동	16	36	성	면	11	강	구	면	32	자	면	면	37	대	항	면
17	금	음	동동	16	영	1	동동	17	37	로	면	31	남	진	면	33	용	면	면	38	감	천	면
18	미	산	동동	17	영	2	동동	18	38	의	면	32	달	산	면	34	남	면	면	39	조	마	면
19	부	곡	동동	18	영	3	동동	19	11	성	면	33	지	산	면	35	양	면	면	40	구	성	면
20	지	곡	동동	19	영	4	동동	20	31	촌	면	34	추	품	면	36	암	면	면	41	지	례	면
21	좌	곡	동동	20	휴	1	동동	21	32	곡	면	36	영	해	면	37	남	면	면	42	부	하	면
22	옹	좌	동동	21	휴	2	동동	22	33	산	면	37	병	곡	면	42	도	면	면	43	대	덕	면
23	양	좌	동동	22	휴	3	동동	23	34	산	면	38	창	수	면	11	화	면	면	44	대	산	면
14	안	시	동동	17	영	2	동동	11	35	음	면	38	영	일	면	12	청	면	면	11	청	산	면
11	중	구	동동	17	영	시	동동	12	36	성	면	11	일	군	면	31	도	면	면	31	도	산	면
12	평	문	동동	12	동	부	동동	13	37	양	면	12	구	읍	면	32	남	면	면	32	남	산	면
13	육	울	동동	13	중	부	동동	14	38	안	면	13	룡	읍	면	33	각	면	면	33	각	산	면
14	신	홍	동동	14	교	부	동동	15	39	친	면	14	연	읍	면	34	각	면	면	34	북	개	면
15	용	성	동동	15	완	부	동동	16	40	밀	면	15	오	읍	면	35	이	면	면	35	서	문	면
16	동	성	동동	16	산	부	동동	17	41	복	면	16	신	면	면	36	운	면	면	36	문	천	면
17	대	남	동동	17	주	부	동동	18	42	계	면	17	청	면	면	37	금	면	면	37	천	전	면
18	대	홍	동동	18	봉	부	동동	19	43	인	면	18	송	면	면	43	매	면	면	38	고	령	면
19	당	신	동동	19	영	대	동동	20	44	인	면	19	기	면	면	11	고	면	면	39	고	령	면
20	대	화	동동	18	대	명	동동	21	45	평	면	20	죽	면	면	31	역	면	면	40	고	령	면
21	법	화	동동	19	명	산	동동	22	46	평	면	21	대	면	면	32	운	면	면	41	고	령	면
22	평	화	동동	18	상	주	동동	23	34	안	면	22	동	면	면	33	성	면	면	42	고	령	면
23	안	화	동동	11	중	시	동동	24	11	동	면	23	지	면	면	34	다	면	면	43	고	령	면
24	안	기	동동	12	남	시	동동	25	12	봉	면	24	대	면	면	35	개	면	면	44	고	령	면
25	속	기	동동	13	원	시	동동	26	13	후	면	25	기	면	면	36	우	면	면	11	고	령	면
26	송	하	동동	14	문	시	동동	27	33	천	면	26	포	면	면	37	생	면	면	32	고	령	면
27	송	천	동동	15	문	시	동동	28	34	직	면	27	강	면	면	38	성	면	면	33	고	령	면
28	강	남	동동	17	문	시	동동	29	35	후	면	28	강	면	면	39	성	면	면	34	고	령	면
15	구	정	동동	19	현	시	동동	11	37	선	면	11	안	면	면	44	성	면	면	11	고	령	면
11	송	1	동동	11	현	시	동동	12	38	하	면	12	건	면	면	11	선	면	면	31	고	령	면
12	원	2	동동	12	현	시	동동	13	39	안	면	13	외	면	면	32	용	면	면	32	고	령	면
13	원	3	동동	13	현	시	동동	14	40	안	면	14	양	면	면	33	수	면	면	33	고	령	면
14	원	3	동동	14	현	시	동동	15	41	안	면	15	내	면	면	34	가	면	면	34	고	령	면
15	도	3	동동	15	현	시	동동	16	42	안	면	16	산	면	면	35	금	면	면	35	고	령	면

44	은공이	척검안	면면면	32	서근원기은죽호	면면면	14	전전남남주	하하목목	1212	동동동	38	회양양	성덕덕	1231	2121	28	풍장행	호천암	1212	동동동	17	서활삼	부천안	동동동
45				33			15	15				39					29				18	18			
46				34			16	16				40					30				19	19			
49	문경	경은순양계북로성암천	읍읍면면면면면면	35	울릉	읍면면	17	17				41					31				20	20			
11	문가영산호산동마농	경은순양계북로성암천	읍읍면면면면면면	36	울릉	읍면면	18	18				42					32				21	21			
12				37			19	19				43					33				22	22			
32				38			20	20				44					34				23	23			
33				54			21	21				45					16				24	24			
34				11			22	22				46					11				25	25			
35				31			23	23				14					12				26	26			
36				32			24	24				11					13				27	27			
37				38			25	25				12					14				28	28			
38				00			26	26				13					15				29	29			
50	예용상하감보호유용개지	찰문리리천문명천궁포보양	읍면면면면면면면	01			27	27				13					16				30	30			
11				11			28	28				11					17				31	31			
31				12			29	29				12					18				32	32			
32				13			30	30				13					19				33	33			
33				14			31	31				14					20				34	34			
24				15			32	32				15					21				35	35			
35				16			33	33				16					22				36	36			
36				17			34	34				17					23				37	37			
37				18			35	35				18					24				38	38			
38				19			36	36				19					25				39	39			
40				20			37	37				20					26				40	40			
41				21			38	38				21					27				41	41			
40				22			39	39				22					28				42	42			
51	영풍기산은수수정현홍산석	읍면면면면면면면	02	11			12	12				23					29				43	43			
11				12			13	13				24					30				44	44			
31				13			14	14				25					31				45	45			
32				14			15	15				26					32				46	46			
33				15			16	16				27					33								
34				16			17	17				28					34								
35				17			18	18				29					35								
36				18			19	19				30					36								
37				19			20	20				31					37								
38				20			21	21				32					38								
39				21			22	22				33					39								
52	봉화화야성전양천포산호운	읍면면면면면면면	03	11			23	23				34					40								
11				12			24	24				35					41								
31				13			25	25				36					42								
32				14			26	26				37					43								
33				15			27	27				38					44								
34				16			28	28				39					45								
35				17			29	29				40					46								
36				18			30	30				41													
37				19			31	31				42													
38				20			32	32				43													
39				21			33	33				44													
53	울진진해	읍읍면	03	11			34	34				45					18				11	12			
11				12			35	35				46					11				13	13			
12				13			36	36				47					12				14	14			
31				13			37	37				48					13				15	15			

34	이유대계영장도길부	방어지성산마친곡곡	면면면면면면면면	32	녹장주진한생상대	산유촌레림림동	면면면면면면면면	43	거사	류천	면	35	지안서서백병	곡의하상전곡	면면면면면면	23	아오연노의이도	라라형도호두	동동동동동동	6200	캐맥브아기아	나시라아리	다코질나북역	
35				33				43			읍	36				24				6300	르헨타남	티남	북역	
36				34				11	사정사용측곤서	천동남현동양명포	면면면면면면	37	거주응고북위마남남신가가	창상양제상천리상하원조북	면면면면면면	25				64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7				35				31			면	38	합천	합천	면	26				65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8				36				32			면	39	하동	하동	면	27				66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9				37				33			면	40	합천	합천	면	28				71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40				38				34			면	48	합천	합천	면	29				72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41				39				35			면	49	합천	합천	면	12	서귀포시			73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42				40				36			면	11	합천	합천	면	11	서귀포시			74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43				41				37			면	12	합천	합천	면	12	서귀포시			75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5	밀양	읍	면	31	내동북대구진진진	산산동북전가	면면면면면면	44	남해	읍	면	13	합천	합천	면	13	서귀포시			76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11	밀양	읍	면	32				11	남해	읍	면	14	합천	합천	면	14	서귀포시			77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12	삼하부상산단상초무청	남북동의내장남동안도	면면면면면면	33				31	이상삼미남서고실창	해동주동조	면면면면면면	15	합천	합천	면	15	서귀포시			78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13				34				32			면	16	합천	합천	면	16	서귀포시			79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1				35				33			면	17	합천	합천	면	17	서귀포시			81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2				36				34			면	18	합천	합천	면	18	서귀포시			82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3				37				35			면	19	합천	합천	면	19	서귀포시			83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4				38				36			면	20	합천	합천	면	20	서귀포시			9000	아리카지	리카지	역	
35				39				37			면	21	합천	합천	면	21	서귀포시			9999	아리카지	리카지	역	
36	양산	읍	면	31	용산도광육한사	영남양산도지산량	면면면면면면	45	하동	읍	면	31	합천	합천	면	31	북제주군							
11	양기장동원상하응일정철	읍읍읍읍읍읍	면면면면면면	32				11	하화악적황고금진양부청옥	개양량천전남교보천암종	면면면면면면	32	합천	합천	면	11	북제주군							
12				33				31			면	33	합천	합천	면	12	북제주군							
13				34				32			면	34	합천	합천	면	13	북제주군							
31				35				33			면	35	합천	합천	면	14	북제주군							
32				36				34			면	36	합천	합천	면	15	북제주군							
33				37				35			면	37	합천	합천	면	16	북제주군							
34				38				36			면	38	합천	합천	면	17	북제주군							
35				39				37			면	39	합천	합천	면	18	북제주군							
36				40				38			면	40	합천	합천	면	19	북제주군							
37				41				39			면	41	합천	합천	면	20	북제주군							
38				42				40			면	42	합천	합천	면	21	북제주군							
39				43				41			면	43	합천	합천	면	22	북제주군							
37	울주	읍	면	37	연하장	성포	읍	46	산청	읍	면	44	합천	합천	면	4100	북제주군							
31	농강온서온청응범두두언상삼	소동산생양량촌서동서양북남	면면면면면면	38				11	산청	읍	면	45	합천	합천	면	4200	북제주군							
32				39				31			면	46	합천	합천	면	4300	북제주군							
33				40				32			면	39	제주도	제주시	4400	북제주군								
34				41				33			면	40	제주시	제주시	4500	북제주군								
35				42				34			면	41	제주시	제주시	4600	북제주군								
36				43				35			면	42	제주시	제주시	4700	북제주군								
37				44				36			면	43	제주시	제주시	4800	북제주군								
38				45				37			면	44	제주시	제주시	4900	북제주군								
39				46				38			면	45	제주시	제주시	5000	북제주군								
40				47				39			면	46	제주시	제주시	5100	북제주군								
41				48				40			면	47	제주시	제주시	5200	북제주군								
42				49				41			면	48	제주시	제주시	5300	북제주군								
43				50				42			면	49	제주시	제주시	5400	북제주군								
38	김해	읍	면	40	고성	읍	면	43	합양	읍	면	11	제주시	제주시	5500	북제주군								
11	김진가	읍	면	41				11	합양	읍	면	12	제주시	제주시	5600	북제주군								
31				42				31	합양	읍	면	13	제주시	제주시	5700	북제주군								
				43				32	합양	읍	면	14	제주시	제주시	5800	북제주군								
				44				33	합양	읍	면	15	제주시	제주시	5900	북제주군								
				45				34	합양	읍	면	16	제주시	제주시	6000	북제주군								
				46				35	합양	읍	면	17	제주시	제주시	6100	북제주군								
				47				36	합양	읍	면	18	제주시	제주시	6200	북제주군								
				48				37	합양	읍	면	19	제주시	제주시	6300	북제주군								
				49				38	합양	읍	면	20	제주시	제주시	6400	북제주군								
				50				39	합양	읍	면	21	제주시	제주시	6500	북제주군								
				51				40	합양	읍	면	22	제주시	제주시	6600	북제주군								

1990년 인구및주택센서스

# 조사지침서

(제2차 시험조사용)

1989. 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목 차

I. 조사원의 일반적 주의사항 .....	3
II. 조사시점 및 조사대상 .....	8
III. 실지조사(본조사) .....	19
- 인구에 관한 사항 .....	20
① 이름, ② 가구주와의 관계 .....	20
③ 성 별 .....	22
④ 나 이 .....	23
⑤ 출생지 .....	24
⑥ 만 1년전 거주지, ⑦ 만 5년전 거주지 .....	25
⑧ 교육정도 .....	27
⑨ 통근여부, ⑩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⑪ 이용교통수단	
⑫ 통근 통학 소요시간 .....	28
⑬ 경제활동상태, ⑭ 취업여부, ⑮ 구직활동 .....	29
⑯ 산업, ⑰ 종사상의 지위 .....	35
⑱ 직 업 .....	38
⑳ 혼인상태 .....	41
㉑ 혼인연령 .....	42
㉒ 생존자녀수, ㉓ 사망자녀수, ㉔ 총출생자녀수 .....	42
- 주거에 관한 사항 .....	43
① 거처의 종류 .....	43
② 소유관계 .....	44
③ 가구형태 .....	45

④ 사용방수 .....	46
⑤ 식수 이용실태 .....	46
⑥ 취사연료, ⑦ 난방연료, ⑧ 문화시설 및 가재 .....	47
⑨ 한달 평균생활비 .....	48
⑩ 한달 평균소득 .....	49
⑪ 소득의 종류, ⑫ 외벽재료 .....	50
⑬ 지붕재료 .....	51
⑭~⑮ 건평, 대지면적 .....	52
⑯~⑰ 총 방수와 거주가구수, ⑱ 건축시기 .....	53
⑲~⑳ 부대시설 .....	54
㉑ 난방시설, ㉒ 주가구 .....	55
㉓ 동거가구 전용편의시설 .....	56
첨부 1. 행정구역부호 .....	59
2. 연령 조건표 .....	61



## I. 조사원의 일반적 주의사항

조사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조사구내의 각 가구를 방문하여 인구와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되는 바, 가구방문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고 지켜서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언행을 바로 하여 응답 불응 또는 조사거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1. 조사원의 준수사항

가. 동읍면 담당자로부터 자기가 맡은 조사구의 경계를 실지 확인하여 조사구내의 대상가구가 누락되거나 다른 조사구의 가구를 잘못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간중에는 본 조사업무에만 전념하고 도중에 다른 일을 하거나 틈나는 시간에만 조사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또한 본 업무를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만일 특별한 사고 즉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동읍면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조사지침서를 철저히 읽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단체, 교회 또는 사회단체등을 위한 어떠한 사항도 본 조사와 함께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조사결과 알게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비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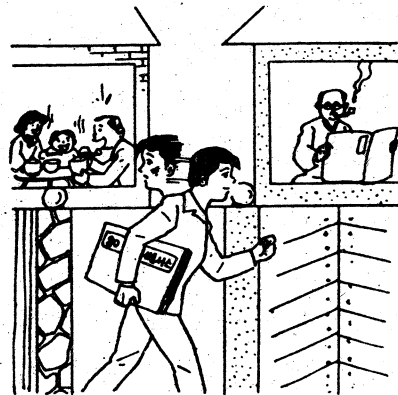
( 만일 누설하게 되면 통계법 제 18 조 1 항에 의거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 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됨 )

아. 항상 지도원의 지시와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진행 상황을 동읍면 지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기존의 기록에 의하여 탁상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2. 가구를 방문할 때 주의사항

가구방문은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면 언제라도 좋으나 너무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은 가능한한 피하고,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조사업무 수행중에는 항상 조사원 신분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나. 가구를 찾아가서는 반드시 대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부자(초인종 등)가 있을 때는 짧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 문에 들어서기 전에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즉 검은 안경을 쓰거나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라. 만일 방문한 시간이 식사중이거나, 응답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른 가

구를 먼저 방문한다.

바. 본 조사의 내용이 세금이나 병역등 응답자에게 불리한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도 설명한다.

사. 조사가 끝나면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 3. 응답자 선정시 유의사항

가. 본 조사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그 가구의 내용을 잘 알아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가구원에게만 질문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가정부등에게 물어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특히 동거인(가정부, 종업원, 하숙인등)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여야 한다.

### 4.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치사항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본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조사내용은 비밀로 취급되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며 단순히 정

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와 주택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만 사용된다는 점과 이 조사가 정확히 조사되므로써 우리나라의 살림을 올바르게 꾸려 나가는데 긴요히 사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는 것을 알기쉽게 설명하여 설득한다.



나. 이와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읍면 지도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지시받도록 한다.

## 5. 대상가구 재방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방문 하여 조사 하여야 한다.

가. 조사하여야 할 가구에 아무도 없을때

나. 응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외출하여 답변을 얻기 어려울때.

다. 혼사 또는 상사(喪事)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매우 바쁠때.



라. 조사가 끝난후 기입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하였을때,  
불응가구등 재방문을 하는 것이 귀찮고 또 가구의 사정을 잘 안다고  
해서 조사원이 마음대로 기입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만일 재방문해서도 완  
전한 조사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또다시 방문해서라도 정확하게 끝마쳐  
야 한다.

## Ⅱ. 조사시점 및 조사대상

### 1. 조사기준 시점

1989년 9월 20일 0시 현재

### 2. 조사대상

조사구내의 모든 가구와 그 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및 가구가 들어있는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가. 가 구

가구는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나뉘어진다.

#### 1) 일반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등 생계를 같이하는 모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가구로 파악한다.

(1)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생계를 독립으로 하는 독신자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은 각각 하나의 가구로 조사한다.

(2) 다방, 음식점, 상점 등의 영업장소에서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을 같이하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그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6인 이상인 경우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단, 숙박업소에 투숙하거나 다방, 음식점, 상점 등의 종업원으로서 여관주인 또는 음식점등 주인가구와 숙식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 투숙객이나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때에는 주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3)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같이 자취를 하는 경우 5인 이하까지는 하나의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6인 이상인 경우 하나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단,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경우 수의 다소에 불문하고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4) 조사구내의 외국인은 가구의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조사한다.  
단, 다음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한다.

(가)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나) 외교관, 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제중인 공무원자와 그 가족

(5) 외국인 가구 또는 사업소(중화요리집등)에서 숙식을 하는 한국인 종업원은 외국인 가구와 별도로 하나의 일반가구 또는 집단가구로 본다.

(6)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발견된 장소에서 생계단위로 하나의 일반가구로 조사한다.

\* 일반가구의 가구원

일반가구에서 계속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가) 조사대상가구에서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사람

① 잠시 친척집에 방문차 가 있는 사람(국내외 불문)

② 본래 이 가구에서 모시고 있었으나 잠깐 형제, 자매집에 가 계시는 부모

③ 국내외 여행중인 가족

④ 국내외에 출장중인 가족(단, 학업이나 직업 때문에 외지에서 상주하는 가족 제외)

- 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인 가족(요양소 입소자 제외)
- ⑥ 선박, 항공기등 탑승 승무원인 가족(기숙사에 들어있는 가족 제외)
- ⑦ 예비군, 민방위 또는 방위소집중인 가족(영내거주 군인 또는 전 투경찰인 가족제외)
- ⑧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교도소)에 미결수로 들어있는 가족 (교도소, 소년원에 수형중 또는 보호중인 가족 제외)
- ⑨ 즉결심판에 의하여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중인 가족
- ⑩ 일정한 기간없이 행상을 나간 가족(외지에 취업중인 가족 제외)
- ⑪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영외거주 직업군인(영외거주는 하고 있으나 가정을 갖지 않고 혼자 방을 얻어사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⑫ 숙식을 같이하는 5인 이하의 동거인(하숙인, 가사사용인, 종업원, 정원사 등)
- ⑬ 구직, 무단가출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 ⑭ 조사기간에 군에서 제대한 가족은 군에서 조사여부를 확인한후 조사한다.

(나) 조사대상가구에서 조사해서는 아니될 사람

- ① 군 또는 전투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가족
- ② 취업, 취학등으로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 ③ 요양소에 정양중인 가족
- ④ 교도소,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가족중 형이 확정된 자(즉결심판에 의해 구류처분 받은자 제외)



⑤ 사회시설(양노원, 부녀 보호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⑥ 가족중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중인 경찰간부 후보생

## 2) 집단가구

통상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 시설에서 기거를 같이하고 있는 집단시설과 6인 이상이 동일 거처에서 집단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집단가구는 다음과 같다.

① 고아원, 양로원, 영아원, 불구자 수용시설등 사회시설

② 공장, 학교, 병원, 회사등의 기숙사

단, 명칭은 기숙사라 하더라도 공동취사를 하지 않고 취식을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각각을 하나의 일반가구로 본다.

③ 피난민, 이재민 수용소

④ 공사장 및 건설현장의 막사

⑤ 숙식을 같이하는 합숙시설

⑥ 대사찰, 수녀원, 기도원등

⑦ 주인가구와 숙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동거인 수가 6인이상인 경우의 동거인

⑧ 자취를 하는 1 단위가 6인이상인 경우의 자취단위

\* 다음의 경우는 일반가구로 본다.

① 여관, 호텔등에 투숙하여 생계를 독립으로 유지하고 있는 독신자 또는 가족

② 여관등에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주인가구

③ 집단시설내에서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영자 또는 관리인

## 가구

### 나. 주택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서

첫째 :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둘째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넷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일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등 건물은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방이라 함은 바닥 또는 마루에서 천정까지 달하는 벽으로 싸여 있고 적어도 1.8m(6척)이상의 높이와 3.3㎡(1평)이상의 넓이를 가진 주택내의 한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차고, 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현대식 주택의 주방겸 식당은 방으로 간주한다.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이 있다.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처

- ① 기숙사, 수녀원, 수도원, 사찰
- ② 합숙소, 여관, 호텔
- ③ 수용소
- ④ 임시막사

⑤ 천막집, 판자집, 움막집, 동굴

⑥ 선박, 폐차량, 이동차량

### 사 례 연 습

사례 1	방위병으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에 포함 되는가?
해 설	방위병으로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기간은 현역군인(일반사병)과 같이 군복무중에 있으나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가구원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 2	보통 조사구내에도 집단가구가 들어 있을 수 있는가?
해 설	동거인이 6인이상인 경우에는 주인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사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구주와의 관계란에는 동거인중 연장자나 대표자를 가구주로 선정 기재한 후 동거인을 계속 기입한다.
사례 3	기숙사에 사감이나 관리인이 기숙생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때 사감이나 관리인의 포함여부?
해 설	사감이나 관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가구에 포함하지 않고 별개의 일반가구 또는 가구원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 4	상점이나 식당같은 곳에서 주인과 같이 숙식을 하는 영업사용인 혹은 가사사용인은 주인가구에 포함할 것인가?
해 설	숙식을 같이하므로 주인가구에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본다. 다만, 동거인이 6인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단위로 처리한다. (집단가구)

### 3. 가구명부 작성

제 1 호 및 제 2 호

조사구 번호	전수 표본	조사표 매수	종합표 매수
		매	매중 매

1990 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 가 구 명 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 도	구시군	동읍면

① 거 처 번 호	② 가 구 번 호	③ 가구주(대표자)성명	④ 주 소			⑤ 인 구 수			⑥ 거 처 의 종 류				⑦ 빈 집	⑧ 농 어 가 분		⑨ 부 재 여 부	
			통 리	반	번 지	계	남	여	주 택			주 택 이 외 의 거 처		농 가	어 가		
									단 독 주 택	연 립 주 택	아 파 트						비 거 주 용 건 물 내 의 주 택

가. 가구의 파악이 끝나면 다시 거처일련번호에 따라 가구명부를 작성한다.

나. 가구명부의 기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구번호 :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2) 전수·표본 : 담당조사구가 전수 또는 표본조사구인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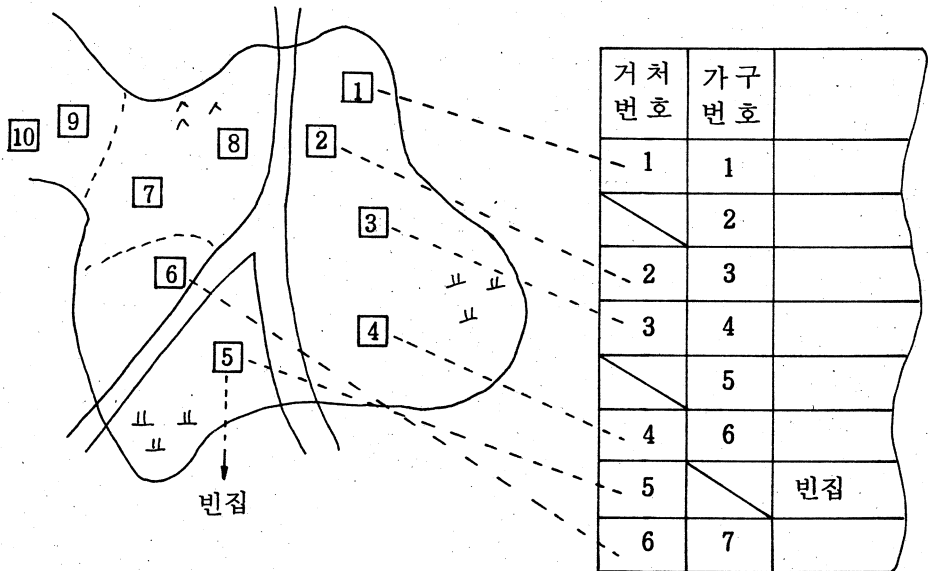
(3) 조사표매수 : 실지조사에 필요한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조사표 소요량 판단은 총가구수+가구원수 7명이상 가구수+예비량 10%이다.

(4) 조사구 소재지 : 조사구의 소재지명을 동읍면 단위까지 기입한다.

(5) ①거처번호 : 거처번호를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예시① : 거처 및 가구번호 기입요령



(주의) : 빈집이라 하더라도 거처번호는 기입해야 한다.

(6) ②가구번호

(가) 한 거처내에 몇 가구가 살고 있나 확인하며 거처번호와 관계없이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시①참조 )

(나)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내에 있는 일반 가구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있는 보통조사구에 포함 조사한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담당자가 그러한 시설에 들어있는 보통조사구를 같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시설내에 있는 일반가구를 누락조사하기 쉬우므로 발견즉시 동읍면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빈집일 경우에는 가구번호란에 사선 「\」을 긋는다.

(7) ③가구주(대표자)성명

(가) 가구주라함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8) ④주소

거처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통반,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한다. 단 동일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 대표가구만 기입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긋는다.

(9) ⑤인구수

(가)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가구별 인구수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이는 본조사시 조사표 소요량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니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10) ⑥거처의 종류

(가) 12 페이지 및 43 페이지 주택의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표시 한다.

(나) 빈집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거처변호란의 거처총수와 이란의 합계는 일치 하여야 한다.

(11) ⑦빈집

(가) 조사구역내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으로서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전부 포함한다.

(나) 과거에 살다가 비워논 집인 경우 다시 살기 위하여 대폭적인 수리가 요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는 조사하지 않는다.

(12) ⑧농어가

(가) 다음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표시한다.

(나) 농가나 어가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선「\」을 긋는다.

(다) 한가구가 농업활동과 어업활동을 다같이 하는 경우 농가와 어가란에 둘다 ○표시를 한다.

농가와 어가의 정의

가. 농 가

가구원중에서 다음과 같은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1) 경지 300평이상을 경작 또는 경영하는 가구

(2)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각각 100평, 과수나 묘목을 각각 200평이상 재배하는 가구

(3) 소, 말등 대가축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경마, 달구지용 소

등 운반용 제외)

- (4) 돼지, 산양, 면양등 중가축 3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5) 토끼등 소가축 40 마리 이상,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금 30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6) 꿀벌 5 군(群) 이상을 양봉하는 가구
- (7) 잠종(누에씨) 12g 이상을 소잠하는 가구
- (8) 연간 총수입중 농업 부대서비스업 또는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나. 어 가

어가라함은 가구주나 가구원중에서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업을 자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 4. 질문표 배부

종합표작성이 완료되면 매 가구마다 질문표를 배부하여 책임있는 응답자가 질문표를 직접 기입토록 배부하여 실지조사 방문시 회수한다.



### Ⅲ. 실지조사(본조사)

#### 1. 조사일자

9월 23일부터 가구를 방문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 2. 응답자 선정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가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응답자를 선정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단, 동거인의 경우는 반드시 직접 면담하여야 한다.

#### 3. 누락 또는 전입 전출가구 처리

본 조사당시 누락 또는 전입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가구명부에 추가 기재하고 전출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의 해당 비고란에 전출일시를 기입하고 붉은선을 긋는다. 단, 전입된 가구는 이사 전 상주지에서 조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4. 질문표의 기입요령

가. 질문표는 흑색 볼펜으로 작성한다.

나. 질문표는 한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기입한다.

다. 집단가구는 계속하여 작성한다.

라. 질문표 난외사항의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가구명부의 기입내용을 확인하여 기입한다.

인구에 관한  
사 항

① 이 름      ② 가구주와의 관계

이름 및 가구주와의 관계	
<p>현재 이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모두 몇분입니까?                      가구주부터 빠짐없이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께 생활하는 분이면 친척, 가정부, 점원 등도 포함되며 반대로 가족중 취업·취학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p>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①	②
01	<input type="checkbox"/>
02	<input type="checkbox"/>

- (1) 응답자에게 먼저 가구주를 묻고 그다음 가구원의 이름을 답변하는대로 기입한다.
- (2) 기입순위는 가구주,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친척, 동거인 순으로 기입한다.
- (3) 응답자가 답변한 사람이 조사대상에 들어가는지 또한 누락된 사람 (특히 유아, 동거인 등)이 없나를 확인한다.

빠지기 쉬운 사람	잘못 포함되기 쉬운 사람
<p>갓난애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유아)                      가정부, 하숙인, 노인, 선박, 항공기 및 철도탑승 승무원, 잠시 여행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정에 잠시 다니러 온 딸</li> <li>2. 타지에서 학교 다니는 가족</li> <li>3. 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li> <li>4. 병역 의무자로서 입대한 군인</li> </ol>

빠지기 쉬운 사람	잘못 포함되기 쉬운 사람
인 가족, 방위병으로 집에서 출·퇴근하거나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	(지원 입대한 여군 포함) 5. 타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

- (4)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예 : 자취, 종업원 등)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가구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하여 기입한다.
- (5) 집단가구는 집단가구원 중에서 대표를 선정 가구주로 한다.
- (6)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음	음	름	름
장녀, 차녀, 삼녀		딸	
장남, 차남, 삼남		아	들
장남의 장남		손	자
차남의 삼녀		손	녀
장남의 처		며	느 리
삼남의 처		며	느 리

**사례연습**

사례 1	“박길동”의 가족은 배우자, 타지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 군에 있는 아들과 아직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딸이 하나 있다. 이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은 몇명인가?
해 설	3명(가구주, 처, 딸)

사례 2	가장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때 그 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할 것인가?
해 설	그렇다.
사례 3	동거하고 있는 수명의 종업원이 있는 가구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해 설	동거인이 5명이하일 경우 주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기입하되 6명이상일 때는 동거인만 집단가구로 분류하여 별도 조사표에 조사하고 연장자를 대표자로 기입한다.

**③ 성 별**

성 별
이분은 남자입 니까? 여자입 니까?
③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1)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한다.
- (2) 특히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남녀 별 구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나 이

나		이	
이분은 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이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연령 환산표를 보고 만나이를 환산하십시오
4-1	4-2	4-3	4-4
살	년도 ----- 띠	월  일 ----- 음양	살
살	년도 ----- 띠	월  일 ----- 음양	살

- (1) 정확한 만세를 찾아내기 위하여 4 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한다.
- (2) 먼저 세는 나이를 묻는다.  
그냥 나이를 묻는 경우 만세, 호적상 나이, 주민등록상 나이 등을 응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집에서 세는 나이를 물어야 한다.
- (3) 다음에 출생년도를 묻고, 모르는 경우 띠를 묻는다.
- (4) 그다음 집에서 쇠는 생일을 묻고 음력인가 양력인가를 표시한다.
- (5) 세는 나이와 연도가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재질문하여 정정한다.
- (6) 최선을 다해서도 일치되지 않을 경우 2 가지 이상 일치하는 것을 택하고, 모두 일치되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를 띠, 나이, 연도순으로 정하여 만나이를 환산한다. 연령 환산표는 조사표 표지 안쪽에 표시되어 있다.

**사례연습**

사례 1	“최병현”이라는 사람은 1989년 9월 20일 현재 세는 나이는 44살이고 띠가 개띠이며 출생연도가 46년생,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11월 12일일때 “최병현”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해 설	42세
사례 2	“강복석”이라는 사람은 1989년 9월 20일 현재 세는 나이가 44살이고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3월 5일일때 “강복석”의 나이는 만 몇살인가?
해 설	43세

**⑤ 출 생 지**

출 생 지
어느 곳에서 태어났습니까?
⑤
<input type="checkbox"/> 같은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같은 구시군

- (1)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
- (2) 본적지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조사 기입한다.  
다만, 산모가 출산을 병원, 천정등에서 하였을 때에는 산모의 상주지를 출생지로 본다.
- (3) 행정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출생지의 현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 (4) 출생지가 현재의 구시군과 다른 경우에는 시도, 구시군을 물어 기입하고 출생지가 외국인 경우는 국명을 기입한다.

**사례연습**

사 례	현재는 서울 영등포에 살고 1977년에는 서울 관악구 노량진 1동에 살았던 “이갑순”산모는 그 당시 친정인 수원에서 “강을동”이라는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때 “을동”군의 출생지는 어디인가?
해 설	“강을동”군의 태어난 곳은 수원이지만 산모의 상주지는 서울 관악구이나 노량진 1동은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동작구로 되었으므로 “강을동”군의 출생지는 동작구가 된다.

**⑥만 1년전 거주지 ⑦만 5년전 거주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만 1년전 (1988. 9.20)에는 어디에 사셨습니까? ⑥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만 5년전 (1984. 9.20)에는 어디에 사셨습니까? ⑦
① 같은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 시도(국) ..... 구시군	① 같은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구시(국) .....구시군

- (1) ⑥ 란은 만 1세이상, ⑦ 란은 만 5세 이상에서 묻는다.
- (2) ㉠ “다른구시군”에 해당된자는 시도, 구시군 또는 국명을 물어 기입한다.
- (3) 집을 떠나 군에 입대한 기간은 그가 속했던 가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4) 취업, 취학 등으로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는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때부터 상주한 것으로 조사해

야 한다.

(5) 구시군의 경계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사례연습**

사례 1	“박갑석”은 경기도 양주군에서 1986년 3월 1일 군에 입대하였다가 1989년 2월 1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는데 본가는 이미 87년 12월에 서울종로구로 이사를 하였다. 이때 “박갑석”의 1년전 거주지는 어느 곳인가?
해 설	군복무기간은 “박갑석”이 속했던 가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1988년 9월 20일 이전에 본가가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였으므로 1년전 거주지는 서울 종로구로 간주한다.
사례 2	“김을석”은 87년 1월~88년 12월까지 사우디에서 건설노무자로 취업한 적이 있다. 이때 “김을석”의 1년전 거주지는 어느 곳인가?
해 설	취업, 취학등은 집을 떠나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부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김을석”은 88년 9월 20일 당시 사우디에 있었으므로 1년전 거주지는 사우디(국)으로 간주한다.



**⑧ 교육 정도**

교육 정도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⑧

- |         |           |      |
|---------|-----------|------|
| ① 안 다녔음 |           |      |
| ② 국민    | ⑤ 초대·전문   | ① 졸업 |
| ③ 중학    | ⑥ 대 학 (교) | ② 재학 |
| ④ 고등    | ⑦ 대 학 원   | ③ 중퇴 |
- 
- |         |           |      |
|---------|-----------|------|
| ① 안 다녔음 |           |      |
| ② 국민    | ⑤ 초대·전문   | ① 졸업 |
| ③ 중학    | ⑥ 대 학 (교) | ② 재학 |
| ④ 고등    | ⑦ 대 학 원   | ③ 중퇴 |

- (1) 만5세미만의 어린이는 ⑧란에 전부 사선「\」을 긋는다.
- (2) 학교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 기관을 말한다(타자, 경리, 부기학원 및 재수생을 위한 학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이상을 말한다.

**사 례 연 습**

사례 1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정규학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고등공민, 전수중고등학교 및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검정고시등)의 자격소유자의 학력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해 설

두 경우 모두 당해과정 이수 및 합격내용대로 학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력 및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안했다라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고시 합격은 학력을 인정하여 기입한다)

⑨ 통근 여부 ⑩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⑪ 이용교통수단 ⑫ 통근통학소요시간			
통근 여부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현재 직업 또는 학업때문에 매일 아침 통근(학)을 하고 있습니까? ※ ② “안한다”에 해당하는 ⑩에서 ⑫까지 사선「\」을 긋는다.	하고 있다면 학교(원) 또는 직장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로 통학 통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통근통학에 소요되고 있는 시간은 몇분입니까?
⑨	⑩	⑪	⑫
① 한다 ② 안한다	① 같은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 시 도 ..... 구 시 군 ..... 동 읍 면	① 시내(외) 버스 ② 철도(지하철) ③ 통근버스 ⑥ 자전거 ④ 택 시 ⑦ 도 보 ⑤ 승용차 ⑧ 기 타	분

(1) 만12세 이상의 사람에게 우선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통근(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 ⑨란 ① “한다”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⑩⑪⑫란을 묻는다.

따라서 ⑨란 ① “안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⑩⑪⑫란에 사선「\」을 긋는다.

(2) 여기에서 학교(원)이란 정규학교 뿐만아니라 이·미용,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의 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3) ⑩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는 직장 또는 학교(원)가 위치하고 있는 동읍면을 말하는 것으로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가 ② “다른 동읍면”에 있을 때에는 시도, 구시군, 동읍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물어 모두 기입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택시 운전사인 경우는 차고지를 근무지로 한다.

(나) 열차,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해당사무실을 근무지로 한다.

(다) 논밭에서 일하는 경우는 ⑨란 ②“안한다”에 해당된다.

(라) 근무처가 일정하지 아니한 행상인들은 지난 1개월간 주로 경제 활동을 한 지역을 조사한다.

(4) ①란은 주로 아침 출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주된것 하나만 ○ 표시한다.

(5) 통근 통학 소요시간은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 학교(원)에 도착 하는 총소요시간을 기재한다.

**사 례 연 습**

사례 1	특정회사,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배우, 음악가, 연예인들의 통근지는 어느 곳으로 볼 것인가?
해 설	전속인 경우 전속된 직장 주소를 자유인 경우 제일많이 출 연하는 곳을 통근지로 본다.
사례 2	본사, 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 원이나, 통신원 등으로 일한 사람은 통근지를 어디로 볼 것인가?
해 설	주재하고 있는 장소를 통근지로 본다.

⑬ 경제활동 상태	⑭ 취업 여부	⑮ 구직 활동
경제 활동 상태	취업 여부	구 직 활 동
지난 일주일(9.3~9.9) 동안에 주로 무슨일을 하였습니까? ※ ① 해당자는 ⑭과 ⑮에 사선「\」을 긋는다.	조금이라도 수입을 위하여 일한적이 있습니까? ※ ① 해당자는 ⑮에 사선「\」을 긋는다.	없다면 일자리는 구해 보았습니까? ※ 이 항목 해당자는 ⑮에서 ⑮까지 사선「\」을 긋고 ⑮부터 다시 질문한다.

⑬ 경제활동 상태	⑭ 취업 여부	⑮ 구직 활동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 ② 놀고 있었다. ③ 학교(원)에 다녔다. ④ 집안일을 돌보았다. ⑤ 기 타	① 있 다.  ② 없 다.	① 구해 보았다. ② 특별한 사유로 구해 보지 못했다. ③ 구하지 않았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 ② 놀고 있었다. ③ 학교(원)에 다녔다. ④ 집안일을 돌보았다. ⑤ 기 타	① 있 다.  ② 없 다.	① 구해 보았다. ② 특별한 사유로 구해 보지 못했다. ③ 구하지 않았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 ② 놀고 있었다. ③ 학교(원)에 다녔다. ④ 집안일을 돌보았다. ⑤ 기 타		

(1) ⑬⑭ 및 ⑮란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 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만 15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2) ⑬란 경제활동 상태의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에 해당되는 사람은 ⑭⑮란에 사선「\」을 긋고 ②~⑤에 해당되는 사람은 ⑭란을 다시 물어 취업여부를 확인한다.

(3) ⑬란의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는 다음과 같이 일한 사람이 해당된다.

(가) 농사를 짓거나 상점, 공장등을 경영한 사람

(나) 다른 사람 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일한 사람

- (대)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봉급을 받은 사람
- (태) 일정한 직업 또는 직장이 없으나 지난 일주일간에 주로 수입(돈 벌이)을 위해 일을 한 사람
- (매) 임금 또는 봉급을 받지 않으나 가족이 하는 사업의 일을 도와 수입을 올린 사람(단, 이 경우에는 주 18시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한하여 일한 것으로 본다).
- (배)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일주일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 ① 자기 또는 가족의 병
- ② 일기불순
- ③ 휴가, 연가, 예비군훈련
- ④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 ⑤ 사업체사정(기계고장, 원료미확보등)

(사) 영외거주 군인 및 방위소집중인 자는 여기에 포함하고 ⑩란 “주된 사업내용”에 군인 및 방위소집이라 기입하며 ⑪~⑬란에는 사선「\」을 긋고 ⑭란부터 다시 묻는다.

## ② “놓고 있었다”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지난 일주일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과 새로이 취업전선에 나섰으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 ③ “학교(원)에 다녔다”

정규학교 뿐만아니라 재수생을 위한 학관, 기술 습득을 위한 각종 학원, 직업훈련원등 비정규학교에 다닌 사람도 포함한다.

#### ④ “집안 일을 돌보았다”

지난 일주일간 주로 자기 가정일을 돌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가정부, 정원사, 자가용운전자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①의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에 해당된다.

#### ⑤ 기 타

만 15세 이상의 사람중에서 전항 4가지 항목중에서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아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사람, 불구로 돈벌이를 하지 못한 사람, 재산수입, 이자수입, 배당금, 송금, 연금등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4) ⑭란 “취업여부”는 ⑬란 ②“놀고 있었다” ~ ⑤“기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재차 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항목이다. 따라서 ⑬란 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재하지 않고 사선「\」을 긋는다. ⑭란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때에는 ①“있다”에 ○표시 하고 ⑮란에 사선「\」을 긋고 ⑯란부터 다시 묻는다.

②“없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⑮란을 다시 묻는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정주부가 가사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남의 논밭에서 일하고 품삯을 받은 경우
- ② 학생이 틈틈이 일하고 돈을 받거나 신문팔이 등으로 돈을 번 경우
- ③ 연로자나 불구자가 가끔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

단,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등이 자기집에서 하는 농사, 상점등에서 조금씩 일한 경우는 무급 가족 종사자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일한 것으로 포함한다. 즉 일주일에 적어도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만 포함한다.

(6) ⑮란 **구직활동**은 ⑭란의 ②“**없다**”에 해당하는 사람 즉 지난 일주일간 전혀 돈벌이를 하지 않은 사람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①,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되고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이 란에 해당되는 사람은 ⑯~⑲에 사선「\」을 긋고 다시 ⑲란부터 묻는다.

⑮란 ②“**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말한다.

- ① 일기불순
- ② 일시적인 병
- ③ 발령대기 및 사업준비
- ④ 자기에 알맞는 일거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한 것.

**사 례 연 습**

사례 1	근무처가 결정되어 있으나 조사기간 중에는 아직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제활동여부?
해 설	조사기간중에 아직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지라도 ⑬란의 ①“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⑭란의 “취업여부”도 ②“없다”에 해당되고 ⑮란의 “구직활동”은 ②“특별한 사유”로 기입한다.
사례 2	사업개시를 위하여 자본 및 자재를 조달하거나 기타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의 구분?
해 설	사업개시의 출발점은 본연의 업무를 개시하는 때부터이며 이때부터 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⑮란의 “구직활동”은 ②“특별한 사유”로 분류한다.

사 례 연 습

사례 3	<p>조사기간중 수도 또는 원동기의 고장(사업체내 사정)으로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경제활동여부?</p>
해 설	<p>일시 휴직으로 잠시 이직하고 있는 상태는 경제활동 상태로 본다. 여기에서 일시 휴직은 취업자로서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잠시 이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 또는 가족의 병이나 부상으로 일시 쉬었을 때.</li> <li>2. 휴가, 연가, 훈련, 근무소집 등으로 일시 쉬었을 때.</li> <li>3. 노동쟁의 파업등으로 일시 쉬었을 때(유급인 경우)</li> <li>4. 일기불순, 기계고장 등으로 잠시 조업을 중단하여 쉬었을 때, 단,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월 이상 이직(무급)하고 있는 경우와 사업을 하는 사람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li> </ol>
사례 4	<p>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으로서 제방고치기 등 부락공동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된 노동을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p>
해 설	<p>경제활동 여부는 정부로부터 노임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p>
사례 5	<p>예금의 이자, 고리대금업자 또는 주식의 배당금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는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p>
해 설	<p>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p>



사례 6	접대부와 위안부의 하는 일도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해 설	접대부와 접대행위는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안부의 행위는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접대부의 행위는 일종의 써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위안부나 밀수 행위 도박등은 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⑩ 산 업	⑪ 종사상의 지위
산 업	종사상의 지위
이 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다니신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 직장명이나 사업체명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까?
⑩	⑪
주된사업내용 ----- 직장·사업체이름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근로자
주된사업내용 ----- 직장·사업체이름	① 고용원을 둔

(1) ⑩란 “산업”은 ⑬란의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와 ⑭란의 ① “있다”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업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기 위하여 묻는 항목이다.

### 가. 주된 사업내용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즉 상품을 만드는 곳인지, 상품을 만들면 어떤 종류의 상품을 만드는 곳인지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예 : 포목소매상, 식당, 책상을 만든다.(예시참조)

## 나. 직장·사업체이름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 회사, 공장이름을 쓴다.(현대건설주식회사, (주)금성사 등) 상호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경우 또는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기입한다.(논, 밭, 시장, 농장, 목장, 지하상가 등)

(2) ⑩란 “종사상의 지위”는 ⑩란의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항목이다.

###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경영주를 말한다.

### ② 고용원 없는 경영자

고용원이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경영주를 말하며, 일정하게 어느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그날 그날 막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③ 무급 가족 종사자

직접 임금의 형태로 보수는 받지 않으나 가구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임금, 봉급근로자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급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직장근로자, 가사사용인 등을 말한다.

직장 근로자라 함은 공무원,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감사등), 직원등과 같이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 순히 거마비만 받는 비상근 임원은 제외한다.

가사사용인이라 함은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가정을 돌봐주고 급료를 받는 사람(가정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 가정을 돌보는 가정 주부는 제외한다.

**사례연습**

사례 1	자기 자본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학교 교장이며 관리인이다. 종사상의 지위는?
해 설	자기자본을 출자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재단이사장 또는 학교 교장으로 종사하였다면 “임금·봉급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
사례 2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A는 회사차를, B는 개인 택시를, C는 영업용택시를, D는 사장의 승용차를 운전하되 회사봉급을 받고, E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주인인 개인한테서 봉급을 받을때 종사상의 지위는?
해 설	A는 임금·봉급근로자, B는 고용원 없는 자영자, C, D, E는 임금·봉급 근로자

**⑱ 직 업**

직 업
이 분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위 또는 직명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⑱
말은일의 종류 ----- 부서 및 직책

(1) ⑱란은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급료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일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2) 부서 및 직책은 ⑰란과의 ④ 임금, 봉급근로자에게만 묻고, ⑰란 ①~③ 해당자는 사선「\」을 긋는다. 부서 및 직책은 직업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는 부, 국,

과, 계, 반 등을 기입하고 직책에는 부장, 국장, 상무, 전무, 사장, 과장, 계장, 공장장, 반장 등을 기입한다.

예 : (부서 및 직책)                      (부서 및 직책)  
          개발부개발과장                      경리과경리계장

(3) 말은 일의 종류는 ⑰란 해당자의 전부가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한일은 누가 읽어보더라도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물어 기입한다. 한번의 질문으로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어서 기입하여야 한다.

(예시 : 양품점에서 물건을 판다. 경리사무를 본다. 타자를 친다. 논에서 벼를 베었다.)

주의할 것은 공무원, 회사원, 공원, 사무원등 막연한 직업을 기입해서는 아니된다.

(4) 종사상의 지위란에서 ①~③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서 및 직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와 직책을 기입한다.

예시 사업내용,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내용 기입예

⑯ 산업내용	⑰ 종사상의 지위	⑱ 직업내용
(주된사업내용) 기관차 부품생산 ----- (직장사업체이름) 군대양행공작창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선반을 조작한다. ----- 부서 및 직책 선반부 기능직 5등급
(주된사업내용) 의복제조 ----- (직장사업체이름) 한일합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주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일을 분담해 주고 제품을 검사한다. ----- 부서 및 직책 봉제부 반장

⑯ 산업내용	⑰ 종사상의 지위	⑱ 직 업 내 용
(주된사업내용) 야 채 축 성 재 배 (직장사업체이름) 비 널 하 우 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온상에서 야채를 축성재배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주된사업내용) 미 장 일 (직장사업체이름) 집 집을 돌면서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시멘트 미장일을 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주된사업내용) 무 역 업 (직장사업체이름) 한 성 물 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사장실 대표이사
(주된사업내용) 섬 유 제 품 생 산 (직장사업체이름) 동 방 기 업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회사 화물차 운전을 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총무부 운전기사
(주된사업내용) 벼 농 사 (직장사업체이름) 논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벼를 베었음 ----- 부서 및 직책

<b>⑱ 혼인상태</b>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⑱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에게만 질문하고 만 15세미만의 가구원은 사전「\」을 긋는다.

○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말한다.

① 미 혼 : 이제까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유배우 :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③ 사 별 : 배우자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 않고 혼자 있는 경우로써 6.25 등으로 배우자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별로 간주한다.

④ 이 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경우

**사례연습**

사 례	“갑”이라는 사람은 호적상 “을”이라는 배우자가 있고 “병”이라는 여자와도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을”여, “병”여의 유배우 여부?
해 설	“을”여는 물론 “병”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안했다라도 사실상 결혼관계에 있으므로 유배우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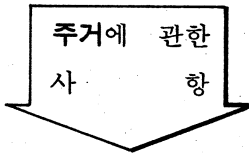
㉔ 혼인연령	
혼인연령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살때 하였습니까?	
01	.....살 생일 전, 후 .....년도
02	생일

- (1) 만 15세이상 기혼자(유배우, 사별, 이혼)에게만 묻되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시기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그리고 만 15세미만의 자와 만 15세이상의 자라도 미혼에 해당되는 자는 사선「\」을 긋는다.
- (2) 혼인연령은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연령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는 때의 연령에 해당하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다가 식을 올린 경우에는 사실상 부부생활을 처음 시작한 연령을 조사하여야 한다.
- (3) 재혼한 사람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했을때의 결혼 연령을 조사하여야 한다.
- (4) “생일전후”란 결혼식 혹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한 날이 본인 생일과 비교할 때 생일전인 경우 “전”에 ○표하고 후일 때는 “후”에 ○표를 한다.

㉑ 생존자녀수	㉒ 사망자녀수	㉓ 총출생자녀수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은 모두 몇 분입니까? ※외지에 나가 생활하는 분도 포함됩니다.	낳은 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분입니까?	지금까지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는 모두 몇 분입니까?
①	②	③
남	남	남
여	여	여
계	계	계

- 만 15세이상의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 부인에게만 질문하며 남자와 미혼여자는 사선「\」을 긋는다.
- 기혼부인이 사실상 낳은 자녀수를 조사 기입한다.
- 재혼부인인 경우 전남편과 현남편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현남편과 전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가. 모든가구

①에서 ⑩란까지는 모든 가구에게 질문한다.

① 거처의 종류

① 택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 택	주택 이외의 거처
① 단독주택	⑤ 여관등 숙박업소
② 아 파트	⑥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③ 연립주택	⑦ 임시막사
④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⑧ 기타(음막, 판자집등)

○ ①~⑧항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 주 택

- ①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 ② 아 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상의 영구건물로써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상가아파트도 여기에 해당한다.)
- ③ 연립주택 :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개념의 주택으로써 다만 건물의 높이가 3층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3층의 빌라, 맨션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 ④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사업 또는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 주택 이외의 거처

⑤ 여관등 숙박업소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단, 주인가구가 여관등 숙박업소 건물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 부문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에 해당되며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여관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 ㉡ 단독주택 」에 해당된다.

⑥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및 대사찰등과 같이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⑦ 임시막사 :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를 말한다.

⑧ 기 타 : 천막집, 판자집, 움막, 암자 등과 같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② 소 유 관 계

② 이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세들어 살고 있습니까?

㉠ 자기집	㉣ 삭월세 (보증부월세)
㉡ 전 세	㉤ 무 상
㉢ 월 세	

○ 이 란은 주가구와 동거가구에만 질문한다.

㉠ 자기집 : 법률상 소유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 ㉒ 전 세 : 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㉓ 월 세 :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㉔ 식월세 (보증부월세) :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매월 보증금에서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 ㉕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가구 형태**

③ 택은 이집을 대표하는 주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㉑ 주가구 (대표가구)                      ㉒ 동거가구

㉓ 집단가구 → 조사끝

※ 이하 모두 사선 「\」 하시오

○ 이 란은 ③란 이후의 각 란의 질문에 적합한 조사대상 가구를 찾기 위한 설문이다.

- ㉑ 주가구 : ① 한 주택에 한 가구가 사는 경우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주가구로 본다.
- ②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물론 주인가구가 주가구가 되나 주인가구가 없이 세든 가구만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중 한가구를 선정하여 주가구로 한다.
- ㉒ 동거가구 : 주가구 이외의 가구를 말한다.
- ㉓ 집단가구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등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는 6인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이를 집단가구라 한다.

#### ④ 사용 방 수

④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⑥ 6이상 (    개 )

-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등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천정의 높이가 1.8 m ( 6척 ) 이상, 넓이가 3.3 m<sup>2</sup> ( 1 평 )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현대식 주택의 주방겸 식당도 방으로 본다.
-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람이 실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으로 보며 단순히 물건만을 쌓아두고 있을 때는 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식수 이용실태

⑤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 ① 상수도    ④ 수동펌프  
② 간이수도    ⑤ 우 물  
③ 자가수도    ⑥ 기 타  
(    )

거처내에 식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가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식수를 조사한다.

⑥ 취사연료

⑥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것 하나만 ○표 하시오 )

- ① 연탄 ② 유류 ③ 가스 ④ 전기 ⑤ 임산연료 ⑥ 기타

- 취사용 연료를 두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한 연료에 ○표시한다.

⑦ 난방연료

⑦ 난방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 ① 연 탄 ④ 전 기  
② 유 류 ⑤ 중앙난방  
③ 임산연료 ⑥ 가스·기타

- (1) 두가지 이상의 난방연료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비용에 관계없이 시간을 보아 주로 많이 쓰는 난방연료를 말한다.

- (2) 조사당시 난방연료를 사용하지 않을시는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연료를 조사한다.

⑧ 문화시설 및 가재

⑧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하시오)

- ① 텔레비전 ④ 세탁기 ⑦ 전축(오디오)  
② 개인용컴퓨터 ⑤ 전화 ⑧ 브이·티·알(V·T·R)  
③ 냉장고 ⑥ 자가용승용차 ⑨ 에어컨

- 현재 갖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를 모두 ○표한다.
- 세탁기는 세탁을 위한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탈수만을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전화기에는 교환전화도 포함한다.
-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가전용만 해당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⑨ 한달 평균생활비**

⑨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실제로 쓰고 있는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동안의 총지출액을 한달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① 20 만원미만            | ⑤ 100 만원이상 ~ 150 만원미만 |
| ② 20 만원이상 ~ 40 만원미만  | ⑥ 150 만원이상 ~ 200 만원미만 |
| ③ 40 만원이상 ~ 70 만원미만  | ⑦ 200 만원이상 ~ 300 만원미만 |
| ④ 70 만원이상 ~ 100 만원미만 | ⑧ 300 만원이상            |

- 가족들의 의식주와 교육,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이외에 저축액까지를 포함하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 1년간의 총지출액을 평균한 금액이므로 지난달의 생활비를 기준해서는 안된다.
- 자가 사용분비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한다.

⑩ 한달 평균소득

⑩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동안의 총소득액을 한달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① 20 만원미만           | ⑤ 100 만원이상 ~ 150 만원미만 |
| ② 20 만원이상~ 40 만원미만  | ⑥ 150 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
| ③ 40 만원이상~ 70 만원미만  | ⑦ 200 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 ④ 70 만원이상~ 100 만원미만 | ⑧ 300 만원이상            |

- 지난 1년간의 총지출액을 평균한 한달소득을 기준하므로 지난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소득을 기준해서는 안된다.
- 세금, 연금, 저축액 등이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하며 현물소득 수 증보조금,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사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소득액을 기재한다.
- 예금이나 적금, 연금 등은 수령일이 속한 년도의 소득으로 파악하나 2개년 이상에 걸쳐 불입한 경우는 불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한다.

**⑪ 소득의 종류**

⑪ 가구원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2개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 |                |             |
|----------------|-------------|
| ① 임금, 급여       | ⑤ 이자 및 배당소득 |
| ② 농림수산소득       | ⑥ 연금소득      |
| ③ 기타사업소득       | ⑦ 생활보호, 보조금 |
| ④ 토지, 건물의 임대소득 | ⑧ 기 타       |

- 토지·건물의 임대소득에는 자격증 임대 및 재화의 임대에 따른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 생활보호, 보조금은 정부, 사회단체,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 친지 또는 독지가로 부터 보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기타의 경우는 부업소득, 재산매각, 복권 당첨금 등 ①~⑦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나. 주택의 주가구**

⑫~⑬란까지는 ①란의 ① ~ ④ 항목 어느 하나의 항목과 ③란의 「① 주가구(대표가구)」에 ○표시된 가구에 한하여 조사한다.

**⑫ 외벽재료**

⑫ 이 집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          |          |
|----------|----------|
| ① 나 무    | ④ 철근콘크리트 |
| ② 적벽돌, 돌 | ⑤ 흙, 흙벽돌 |
| ③ 시멘트제품  | ⑥ 기 타    |

(1) 나 무

기둥이 나무로 되어있는 집을 말한다. 일본집도 여기에 포함한다.





단, 스라브위에 기와로 덮은 집은 스라브에 (○) 표시한다.

(3) 스테이트

각종 형태의 석면-시멘트제품의 지붕재료로 덮힌 집을 말한다.

(4) 스라브 (스라브기와)

평스라브나 경스라브에 기와를 덮은 것을 포함한다.

(5) 합 석

(6) 짚, 갈대

초가집 등이 포함한다.

(7) 기 타

㉠ “기와” ~ ㉡ “짚, 갈대”에 해당되지 않을때 해당된다.

⑭~⑮ 건평, 대지면적

이 집의 건평과 대지면적은 얼마  
입니까?

⑭ 연 건 평                      평

⑮ 대지면적                      평

(1) 건평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  
만을 조사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 차고등은 제외하며 지  
하실은 총건평에 포함시킨다.

(2) 대지면적에는 텃밭을 제외한 담내의 전면적을 조사한다. 따라서 담내의  
정원등은 대지면적에 포함시킨다.

(3)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의 경우 건평과 대지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만을 조사한다.



(4) 수차년도에 걸쳐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신축시기를 기입한다.

**①9 ~ ②2 부 대 시 설**

이 집의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①9부엌시설 : 재래식 입 식  
②0변소시설 : 재래식 수세식  
없 음  
②1목욕시설 : 온수시설 비온수  
시설 없음  
②2상수도시설 : 있음 없음

(1) 부엌시설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  
되는 공간으로서 입식은 조리,  
취사, 싱크대등 입식시설을 장  
치한 부엌을 말하며 재래식은  
구가옥이나 시골등에서 사용하  
는 부엌을 말한다.

(2) 변소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을 수세  
식이라고 하고 수세식을 제외한 변소시설을 재래식이라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에는 온수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4) 상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하는 수도를 말한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의 취수된 물을 정수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각가정에 배수하고 수도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㉓ 난방 시설**

㉓ 이집의 주된 난방시설은 무엇  
 입니까?  
 ① 연탄아궁이  
 ② 연탄보일러  
 ③ 단독기름보일러  
 ④ 중앙난방보일러  
 ⑤ 채래식아궁이  
 ⑥ 가스보일러  
 ⑦ 기 타

- (1) 거주용 부속건물(사랑채등)이 있어 주 건물의 난방시설과 다를 때에는 주건물의 난방시설을 기입한다.
- (2) 셋방의 난방시설과 주가구의 난방시설이 상이할 경우에는 주가구의 난방시설을 기입한다.
- (3) 주가구의 난방시설이 두가지 이

상일 때에는 주된 난방시설을 기입한다.

**다. 단독주택의 주가구 및 동거가구**

㉔, ㉕란은 2가구 이상이 살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㉔ 주 가구**

㉔ 주 가구

1. 이집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2. 다음의 편익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① 부엌시설 .....	개
② 화장실시설 .....	개
③ 출입구시설 .....	개

○ 이 란은 ①란의 「□」단독주택」과 ③란의 「□」주가구(대표가구)에 ○표시된 가구에게만 질문한다.

- 먼저 이집은 몇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가를 조사 기입한다.
- 다음은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집에 설비된 편의시설이 각각 몇개인지 조사 기입한다.

**㉕ 동거가구 전용편의시설**

**㉕ 동거가구**

1. 이 때에는는 다음의 편의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엌 시설 :  있다     없다

화장실시설 :  있다     없다

출입구시설 :  있다     없다

- 이란은 ①란의 「단독주택」과 ③란의 「동거가구」에 표시된 가구에게만 질문한다.

- 이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동거가구에게 전용의 부엌, 화장실, 출입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여 해당란에 표시한다.
- 부엌과 화장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있다」에,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 없다」에 표시한다.
- 출입구시설의 전용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다른가구(주인가구 또는 다른 동거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여 출입할 수도 있고 또한 외부에서도 직접 출입할 수 있으나 출입문이 임시적인 경우 예를 들면, 부엌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전용출입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용 출입문으로 본다.

- ② 2층집의 경우 2층에 하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외부에서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층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실내층계는 전용 출입문으로 보지 않는다.





1989 연령조건표

세는 나이	서기	간지	띠	세는 나이	서기	간지	띠	세는 나이	서기	간지	띠
1	1989	기사	뱀	41	1949	기축	소	81	1909	기유	닭
2	1988	무진	용	42	1948	무자	취	82	1908	무신	잔나비
3	1987	정묘	토끼	43	1947	정해	돼지	83	1907	정미	양
4	1986	병인	범	44	1946	병술	개	84	1906	병오	말
5	1985	을축	소	45	1945	을유	닭	85	1905	을사	뱀
6	1984	갑자	취	46	1944	갑신	잔나비	86	1904	갑진	용
7	1983	계해	돼지	47	1943	계미	양	87	1903	계묘	토끼
8	1982	임술	개	48	1942	임오	말	88	1902	임인	범
9	1981	신유	닭	49	1941	신사	뱀	89	1901	신축	소
10	1980	경신	잔나비	50	1940	경진	용	90	1900	경자	취
11	1979	기미	양	51	1939	기묘	토끼	91	1899	기해	돼지
12	1978	무오	말	52	1938	무인	범	92	1898	무술	개
13	1977	정사	뱀	53	1937	정축	소	93	1897	정유	닭
14	1976	병진	용	54	1936	병자	취	94	1896	병신	잔나비
15	1975	을묘	토끼	55	1935	을해	돼지	95	1895	을미	양
16	1974	갑인	범	56	1934	갑술	개	96	1894	갑오	말
17	1973	계축	소	57	1933	계유	닭	97	1893	계사	뱀
18	1972	임자	취	58	1932	임신	잔나비	98	1892	임진	용
19	1971	신해	돼지	59	1931	신미	양	99	1891	신묘	토끼
20	1970	경술	개	60	1930	경오	말	100	1890	경인	범
21	1969	기유	닭	61	1929	기사	뱀	101	1889	기축	소
22	1968	무신	잔나비	62	1928	무진	용	102	1888	무자	취
23	1967	정미	양	63	1927	정묘	토끼	103	1887	정해	돼지
24	1966	병오	말	64	1926	병인	범	104	1886	병술	개
25	1965	을사	뱀	65	1925	을축	소	105	1885	을유	닭
26	1964	갑진	용	66	1924	갑자	취	106	1884	갑신	잔나비
27	1963	계묘	토끼	67	1923	계해	돼지	107	1883	계미	양
28	1962	임인	범	68	1922	임술	개	108	1882	임오	말
29	1961	신축	소	69	1921	신유	닭	109	1881	신사	뱀
30	1960	경자	취	70	1920	경신	잔나비	110	1880	경진	용
31	1959	기해	돼지	71	1919	기미	양	111	1879	기묘	토끼
32	1958	무술	개	72	1918	무오	말	112	1878	무인	범
33	1957	정유	닭	73	1917	정사	뱀	113	1877	정축	소
34	1956	병신	잔나비	74	1916	병진	용	114	1876	병자	취
35	1955	을미	양	75	1915	을묘	토끼	115	1875	을해	돼지
36	1954	갑오	말	76	1914	갑인	범	116	1874	갑술	개
37	1953	계사	뱀	77	1913	계축	소	117	1873	계유	닭
38	1952	임진	용	78	1912	임자	취	118	1872	임신	잔나비
39	1951	신묘	토끼	79	1911	신해	돼지				
40	1950	경인	범	80	1910	경술	개				

199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 第2次 試驗調查 結果報告

1990. 1.

人口統計課

## 次 例

1. 實施概要 .....	3
2. 試驗調查結果 .....	5
가. 調查要員 採用 및 管理狀態 .....	5
나. 地域 特性別 回收率 및 記載狀態 .....	9
다. 面接環境 및 應答者 特性 .....	11
라. OMR調查票 移記上의 錯誤程度 및 問題點 .....	13
마. 調查要員 懇談會 .....	14
바. 調查票內檢 및 資料處理結果 .....	19
1) OMR調查票의 入力上 主要 問題點 檢討 .....	19
가) 檢討對象 .....	19
나) 檢討方法 .....	19
다) 檢討背景 및 活用分野 .....	19
라) 檢討結果 .....	19
마) 基本分類欄의 漏落, 錯誤記載 및 DATA의 Double Marking의 Error의 最小化 方案 .....	22
2) 第2次 試驗調查票 資料處理結果 .....	24
가) 資料處理된 調查票의 質問內容 .....	24
나) 處理方法 .....	24
다) 重點處理事項 .....	24
라) 處理內容 .....	25
마) 地域特性別, 調查區別, 項目別 및 調查員別 移記程度에 따른 特性 .....	37
바) 不正確한 移記의 最小化方案 .....	38

1. 實施 概要

가. 期 間 : '89. 9.21 - 9. 30 (10日間)

나. 對象地域 : 大田 直轄市 , 天安市 17個洞의 20個 調查區

地 域 特 性	地 域 名	調 查 區 數
고소득 APT 지역	대전 오류동, 태평2동, 천안 원성2동	3 개 조사구
고소득 단독주택지역	대전 괴정동, 선화2동, 천안 원성1동	3 개 조사구
중산층 거주지역	대전 변동, 회덕2동, 천안 성정동, 천안 원성2동	4 개 조사구
서민층 거주지역	대전 신흥동, 가양2동, 천안 신부동, 천안 성황동	4 개 조사구
변두리 거주지역	대전 탄동, 석봉동, 천안 구룡동, 천안 업성동	6 개 조사구

다. 重點 檢討 事項

- 調查要員 採用 및 管理狀態
- 地域 特性別 回收率 및 記載特性
- 面接環境 및 應答者 特性
- OMR 調查票 移記上의 錯誤 程度 및 問題點
- 調查要員을 통한 調查計劃上의 問題點 및 改善意見 聽取
  - 調查項目의 適合性
  - 質問方法의 妥當性
  - 새로운 調查項目의 正確性 및 調查可能性 程度
  - 項目配列의 合理性

라. 試驗調查 日程表

구 분	기 획 요 원	조 사 요 원	동 지도요원
9.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조사 질문표, 조사표배부 및 각종 유인물 배부</li> <li>· 교육준비</li> </ul>		
9.2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지침서 교육 - 강의 및 실습</li> <li>· 가구명부, 면접기록표 지도요원작성사항 교육</li> <li>· 조사방법교육</li> </ul>		
9.2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질문표(40가구), 표본 질문표(20가구) 및 인사말씀을 각 가구에 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재가구 및 조사불응 가구 조치</li> </ul>
9.2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 회수(15가구) 및 기재누락 및 착오기제사항 면접</li> <li>· OMR 조사표에 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 및 OMR조사표 보완</li> <li>· 부재가구 조치</li> </ul>
9.25(월)	"	"	"
9.26(화)	"	"	"
9.27(수)	"	"	"
9.28(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 OMR 조사표, 가구명부, 면접기록표 미비사항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요원 작성사항 작성</li> </ul>
9.29(금)	"	"	"
9.30(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 개최</li> </ul>	"	"

## 2. 試驗調查 結果

### 가. 調查要員 採用 및 管理狀態

#### ○ 調查指針書 教育

調查要員에게 調查指針書를 教育한 다음, 調查要員이 속하고 있는 家口를 對象으로 質問票를 作成하는 實習을 시켜본 結果 經濟活動에 關한 調查 項目의 錯誤記載 事例가 가장 많았고, 職業, 산업항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요원간의 개인능력 차이가 뚜렷하였음.

#### ○ 出退勤 狀態

모든 조사요원에게 아침 10時까지 出勤한 後, 該當調查區에서 實際調查를 한 後, 저녁 5時에 귀청한 後에 퇴근하라고 教育한 後, 各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結果 教育한 대로 이행한 調查員이 대부분이었으나 一部 調查員은 출·퇴근하지 않고 전화로 自身의 近況만을 通報한 사례(선화2동)도 있었음.

#### ○ 職務 遂行 態度

##### - 男女別 職務 遂行 態度

男女別 職務 遂行 態度는 女子가 職務에 충실한 편이며, 질문표에 대한 이해정도도 男子보다 優秀한 편임.

구 분	본시험조사에 대한 열의정도			질문표에 대한 이해정도		
	상	중	하	상	중	하
계	14	6		13	7	
남	11	6		10	7	
여	3			3		

- 職業別 職務 遂行 態度 및 職務 遂行 時間

시도에서 채용한 조사요원은 대학생과 통반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직무수행태도는 어느편이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직무수행시간은 5시간이상이 대부분이었음.

구 분	본시험조사에 대한 열의 정도			질문표에 대한 이해 정도			직 무 수 행 시 간 (단위 : 시간)					
	상	중	하	상	중	하	1미만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계	14	6		12	8					1	5	14
통 장	3	2		2	3					1	3	1
반 장	2			1	1						2	
자유업												
대학생	8	4		9	3							12
무 직	1				1							1
기 타												

- 年 齡 別 職 務 遂 行 態 度

20대와 40대 조사요원이 많았으나 직무수행능력면에서 어느연령층이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다만, 대학생은 지시한 대로 이행하는 편이나, 통·반장은 동지도요원의 편의주의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구 분	본시험조사에 대한 열의 정도			질문표에 대한 이해 정도		
	상	중	하	상	중	하
계	14	6		12	8	
10 이상 - 20 미만	1			1		
20 이상 - 30 미만	8	4		8	4	
30 이상 - 40 미만	1				1	
40 이상 - 50 미만	3	1		2	2	
50 이상 - 60 미만	1	1		1	1	
60 이상 - 70 미만						
70 이상 -						

- 學歷別 職務 遂行 態度

학력이 높은 조사요원이 직무에 충실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센서스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이 높을 수록 직무수행태도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음.

구 분	본시험조사에 대한 열의정도			질문표에 대한 이해정도		
	상	중	하	상	중	하
계	14	6		12	8	
무 학						
국 민	1	1		1	1	
중 학		1			1	
고 등	5			2	3	
대학이상	8	4		9	3	

○ 조사요원의 1일 적정업무량

- 조사요원에게 1일 15가구(전수10가구, 표본5가구)를 방문하여 질문표를 회수한 다음, 기계착오사항이나 누락사항을 면접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OMR 조사표로 이기토록 작업지시를 하였는 바,
- 지시한 대로 이행한 조사요원은 전수질문표 면접시간이 평균5분, 표본질문표 면접시간이 평균 8분이었으며, OMR 조사표 이기시간은 전수가 평균7분, 표본이 13분이었음. 따라서, 1일 총소요시간은 면접시간이 90분(10가구×5분+5가구×8분), OMR 조사표 이기시간이 135분(10가구×7분+5가구×13분) 합계 225분(3시간 45분)으로서, 1일 가용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볼 때, 3시45분은 실제면접및 OMR 조사표 이기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은 조사구로 출·퇴근, 가구와 가구간 이동시간, 부재가구 재방문, 가구명부작성 및 내검등 미비된 행정업무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적정한 업무량으로 판단됨.
- 지시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직접 면접한 조사요원은 전수질문표 면접시간이 평균 10분, 표본질문표 면접시간이 평균16분이었으며, OMR 조사표 이기시간은 전수가 평균7분, 표본이 13분으로서 1일 총소요시간은 면접시간이180분(10가구×10분+5가구×16분), OMR조사표 이기시간이 135분(10가구×7분+5가구×13분) 합계 315분(5시간 15분)으로서, 1일 가용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볼 때, 실제면접시간 5시간15분을 제외한 여유시간이 2시간45분으로 조사구로 출·퇴근, 가구와 가구간 이동시간, 부재가구 재방문, 가구명부작성 및 내검등 미비된 행정 업무처리에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판단됨.



- 질문표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스스로 기재한 다음 기재누락이나 착오기재사항을 면접한 방법이 1시간 30분을 단축시킴.

○ 결 어

- 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제2차 시험조사시 경험한 각 동의 경험을 보면, 임용된 조사요원과 다른 조사요원이 실제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등(대전시 배령2동, 선화2동, 가양2동)이 있었으며, 자기 관내에서 제2차 시험조사를 모르고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도 있었으며, 지시한 대로 조사하지 않고 동지도요원의 과거 경험이나 편의대로 이행한 동도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동지도요원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 지도원 작성사항은 탁상에서 눈 가림식으로 작성되었었으며, 질문표마저 분실한 동도 있었다.
- 우수한 조사요원의 요건으로서는 학력, 경력, 지역 사회에 관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책임감, 사명감이 투철한 조사요원이 보다 더 훌륭하다도 볼 수 있으며, 제3차 시험조사시에는 조사요원의 요건으로서 정신적 요인을 강조할 것이며, 조사요원 교육도 센서스의 중요성 주지 및 강의와 실습으로 3원화하여 교육을 강화하여 지도원, 조사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privacy 보호의식 강화 및 맞벌이 부부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자계식 조사방법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199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때에는 최초로 OMR System 이 도입되므로 종전과는 달리 조사요원에게 질문표 면접시간 이외에도 OMR조사표 이기시간 필요하므로, 면접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제3차 시험조사시에는 질문표를 배부하여 응답대상자가 스스로 기입토록 한 후, 조사원이 기재누락이나 착오기재사항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地域 特性別 回收率 및 記載狀態

( ) 는 백분비

지역특성	방문 가구수	배부 가구 수			회 수 가구수	기 재 상 태			
		계	직접배부	밀봉용 봉투사용		완전기재	부분기재	백 지	
	2차	1,200 (100.0)	1,200 (100.0)	1,085 ( 90.4)	115 ( 9.6)	1,167 ( 97.3)	249 ( 21.3)	790 ( 67.7)	128 ( 11.0)
	1차	541 (100.0)	507 ( 93.7)	-	-	445 ( 87.8)	193 ( 43.4)	178 ( 40.0)	74 ( 16.7)
고지 소독소 층계	2차	360 (100.0)	360 (100.0)	309 ( 85.8)	51 ( 14.2)	328 ( 91.1)	105 ( 32.0)	191 ( 58.2)	32 ( 9.8)
	1차	203 (100.0)	187 ( 92.1)	-	-	158 ( 84.5)	74 ( 39.6)	47 ( 29.7)	37 ( 23.4)
고소독 APT 지역		180 (100.0)	180 (100.0)	166 ( 93.2)	14 ( 7.8)	178 ( 98.9)	53 ( 29.8)	103 ( 57.9)	22 ( 12.3)
고소독 단독주택 지역		180 (100.0)	180 (100.0)	143 ( 79.4)	37 ( 20.6)	150 ( 83.3)	52 ( 34.7)	88 ( 58.7)	10 ( 6.6)
중지 역소 층계	2차	240 (100.0)	240 (100.0)	210 ( 87.5)	30 ( 12.5)	239 ( 99.6)	64 ( 26.8)	166 ( 69.5)	9 ( 3.7)
	1차	218 (100.0)	200 ( 91.7)	-	-	176 ( 88.0)	72 ( 40.9)	82 ( 46.6)	22 ( 12.5)
저지 소독소 층계	2차	600 (100.0)	600 (100.0)	566 ( 94.3)	34 ( 5.7)	600 (100.0)	80 ( 13.3)	433 ( 72.2)	87 ( 14.5)
	1차	120 (100.0)	120 (100.0)	-	-	111 ( 92.5)	47 ( 42.3)	49 ( 44.2)	15 ( 13.5)
서민층 거주지역		240 (100.0)	240 (100.0)	230 ( 95.8)	10 ( 4.2)	240 (100.0)	44 ( 18.3)	175 ( 72.9)	21 ( 8.8)
변두리 거주지역		360 (100.0)	360 (100.0)	336 ( 93.3)	24 ( 6.7)	360 (100.0)	36 ( 10.0)	258 ( 78.7)	66 ( 18.3)

- 지역 특성별로 회수율 및 기재상태를 파악하여 보면 제1차 시험조사 때와 비슷한편이며, 단지 1차 시험조사때와 달리 제2차 시험조사때에는 일용직 조사원 20명을 10일간 유급으로 채용하였다는 점임.
- 배부율은 100%로서 1차 시험조사시의 93.7%보다 높았으나, 이는 제1차 시험조사는 여름 바캉스철이었고, 제2차 시험조사 시기는 추석연휴가 지난시기였기때문으로 풀이되며, 고소득층가구의 부재율이 14.2%로서 제일 높았으나 인근 가구 및 아파트 경비원 등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었으며 본 센서스때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맞벌이 부부 등 대낮에 응답자가 없어서 밀봉용 봉투를 사용한 가구는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115 가구였음.
- 회수율을 보면 제1차 시험조사의 87.8%보다 훨씬 높은 97.3%이며, 일부 조사원 질문포 분실 사례가 없었다면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됨. 지역적으로는 고소득층의 회수율이 낮았으며, 이들 지역이 통계에 대한 참여도가 제일 취약한 지역으로 생각됨.
- 부재가구의 증가, 국민 교육 수준 향상 및 조사환경의 악화로 자계식 조사방법이 국제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방법의 도입관건이 되는 조사표의 기재상태를보면 완전 기재율이 21.3%로서 제1차 시험조사 때의 43.4%보다 훨씬 적으나, 2차 시험조사 때는 형식적인 완전기재보다 내용적으로 착오가 없는 완전 기재만을 집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부분 기재율까지 누계하여 보면 제1차 시험조사때의 83.4%보다 훨씬 높은 89%의 기재율을 보이므로써 자계식 조사의 도입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 특기할만한 사실은 유식층(고소득및 중산층) 거주지역이 서민층, 변두리층보다 훨씬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에서 조사방법의 도입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백지상태의 회수는 11%로서 밀봉용 봉투사용을 9.6%와 대비하여 볼 때 이들가구는 부재가구 내지 맞벌이 부부가구로 추정되며,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으로 보완이 가능한 비율로써 본 센서스 때는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제3차 시험조사시에는 자계식이 보다 가능하도록 기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완벽하게 보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 面接環境 및 應答者 特性

○ 訪問回收

( )는 백분비

지역 특성		방문 가구수	방문 횟수별 면접가능가구			면접 불능
			1 회	2 회	3 회	
계	2차	1,200 (100.0)	735 ( 61.3)	313 ( 26.1)	119 ( 9.9)	33 ( 2.7)
	1차	185 (100.0)	129 ( 69.7)	15 ( 8.1)	1 ( 0.5)	40 ( 21.6)
고소득층 지역 소 계	2차	360 (100.0)	206 ( 57.2)	87 ( 24.2)	35 ( 9.7)	32 ( 8.9)
	1차	72 (100.0)	40 ( 55.6)	6 ( 8.3)	-	26 ( 36.1)
고소득층 APT 지역		180 (100.0)	112 ( 62.2)	50 ( 27.8)	16 ( 8.9)	2 ( 1.1)
고소득층 단독주택 지역		180 (100.0)	94 ( 52.2)	37 ( 20.6)	19 ( 10.6)	30 ( 16.6)
중산층 거주지역	2차	240 (100.0)	139 ( 57.9)	70 ( 29.2)	30 ( 12.5)	1 ( 0.4)
	1차	80 (100.0)	67 ( 83.8)	2 ( 2.5)	1 ( 1.3)	10 ( 12.5)
서민층 거주지역	2차	240 (100.0)	166 ( 69.2)	49 ( 20.4)	25 ( 10.4)	0 ( 0.0)
	1차	20 (100.0)	17 ( 62.2)	2 ( 29.7)	- ( 8.1)	1 ( 0.0)
변두리 거주지역	2차	360 (100.0)	224 ( 62.2)	107 ( 29.7)	29 ( 8.1)	0 ( 0.0)
	1차	13 (100.0)	5 ( 38.5)	5 ( 38.5)	-	3 ( 23.0)

- 1회방문으로 면접이 성공한 비율은 1차때의 69.7%보다 적은 61.3%로서, 2차때는  
 자계식으로 기입한 후 면접하였기 때문에 1회방문했을 때 기제가 전혀 안되어  
 있을경우 재방문하였기 때문이며, 서민층이나 변두리지역에서 1회방문으로 면접이  
 가능한 비율은 높았음.

- 2회까지 누계하여 면접이 성공한 비율은 87.4%로서 1차때의 77.8%보다 높았으며

- 3회 방문가구도 9.9%로서 1차시험조사때의 0.5%보다 높았음. 이는 이번에 자계식 방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며, 면접불능가구도 2.7%로서 1차시험조사때의 21.6%보다 훨씬 적었음.
- 만약, 본 센서스때와 같이 홍보, 조사요원 교육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면접불능가구가 훨씬 줄어들 것이며, 1차 방문하여 면접가능율도 훨씬 높아져서, 조사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 면접장소

( )는 백분비

지 역 특 성		면접 가구수	옥 내	옥 외
계	2차	1,167 (100.0)	900 ( 77.1)	267 ( 22.9)
	1차	145 (100.0)	101 ( 70.0)	44 ( 30.0)
고소득층 지역 소 계	2차	328 (100.0)	253 ( 77.1)	75 ( 22.9)
	1차	46 (100.0)	27 ( 58.7)	19 ( 41.3)
고소득층 APT 지역		178 (100.0)	142 ( 79.8)	36 ( 20.2)
고소득층 단독주택 지역		150 (100.0)	111 ( 74.0)	39 ( 26.0)
중 산 층 거주지역	2차	239 (100.0)	194 ( 81.2)	45 ( 18.8)
	1차	70 (100.0)	54 ( 77.1)	16 ( 22.9)
서민층 거주지역	2차	240 (100.0)	194 ( 80.8)	46 ( 19.2)
	1차	19 (100.0)	12 ( 63.2)	7 ( 36.8)
변 두 리 거주지역	2차	360 (100.0)	259 ( 71.9)	101 ( 28.1)
	1차	10 (100.0)	8 ( 80.0)	2 ( 20.2)

- 면접장소로써는 옥내가 77.1%로서 1차시험조사때의 70.0%보다 훨씬 높으며, 거주특성별로 보면 고소득층은 77.1% (1차 58.7%), 중산층은 81.2% (1차 77.1%), 서민층은 80.8% (1차 63.2%) 였으며, 높은 사유로 추정되는 이유는 1 차때와는 달리 서울지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농촌 변두리지역에서의 옥외면접율이 28.1%로서 1차때의 20.2%보다 높은 이유는 천안시의 대학생이 조사요원으로 활동하여, 농촌지역에서 대학생에 대해 보다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옥외면접율이 1, 2차 시험조사를 통해 20%이상 된다는 사실은 OMR 조사표를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OMR조사표 보관함이나 보관장소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

○ 응답자 특성

응답자로서 가구주의 처, 가구주, 자녀 순으로 1차시험조사때와 같은 편이었고, 남자보다 여자응답자가 훨씬 많았음을 감안하여, 여자조사요원의 보다 많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OMR 조사표 移記上의 錯誤程度 및 問題點

- 표본질문표를 OMR 조사표에 이기시 항목배열이 질문표와 OMR 조사표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으로서 移記 時間이 오래걸리고 錯誤移記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조사요원 및 지도요원 교육시 OMR 조사표 이기방법을 실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기시간도 전수질문표의 경우 7분, 표본질문표는 13분이 소요되며, 한번 이기한 후, 이기과정이 정확한가를 내검하는 데는 조사요원이 내검하는 것보다, 별도의 내검요원이 내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항목별 착오정도는 별지 "바. 조사표내검 및 자료처리결과" 참조 )

다. 調查要員 懇談會

○ 調查項目, 質問票 및 OMR 調查票

의 건 제 시	해 결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주』라는 개념을 호주, 세대주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어정의의 객관성이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침서 교육시 『가구주』 개념과 호주 세대주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주와의 관계를 가구주 - 배우자 - 자녀 - 형제 - 자매 순으로 쓰기가 몹시 힘들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주 - 배우자 - 자녀 순은 필히 준수하고 형제, 자매 이하 순은 응답자 자유로이 쓰도록 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이 항목은 너무도 복잡하며 응답자의 응답의욕을 감소시키며, 출생년도와 띠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띠로 정리하는 경우가 좋을 것 같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력을 쓰는 가구가 많아서 정확한 나이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문표 간결하게 설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지 항목은 배우자가 가구주의 출생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계식 방법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계식으로 하면 출생지, 만 5년전거주지 항목이 조사가 충실한 것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계식으로 한 후, 기계누락사항을 면접식으로 질문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근(학)에 대한 개념의 이해부족으로 도보를 봉근(학)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표에 별도로 주의를 환기시키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지,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항목으로 다른 구시군 또는 다른 동읍면일 경우, 구체적인 주소를 묻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소기계를 생략했으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gration 분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임</li> </ul>

의 건 제 시

대 안

교육정도, 직업, 산업, 소득, 생활비 항목은 프라이버시 항목으로 응답하기를 꺼리는 편이며, 결혼년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생활비, 소득항목은 이중으로 질문하고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많은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

- 제2차 시험조사와 같이 제3차 시험조사도 자계식으로 한 후, 기재누락및 착오 기재사항만 면접하여, 개인의 Privacy를 존중토록 노력할 것이며, 홍보도 보다 더 강화하겠음

직업, 산업항목기재가 어려우니 지침서에 많은 사례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음

- 제3차 시험조사시 반영하겠음

사망자녀수항목은 중복되므로 삭제를 요망함

- Cross Checking 을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임

출생자녀수항목은 남자의 경우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질문표에 주의물 환기시키겠음

주거에 관한 항목으로서 주가구, 동거가구는 개념이 모호하며, 사용방수는 정확히 기재 못하고 있다

- 지침서 교육시 주가구, 동거가구사항을 구분하여 교육토록 하겠으며, 질문표도 좀더 보완하겠음

난방연료항목은 OMR 조사표에 증양난방 칼럼이 누락되어 있었음

- 질문표의 증양난방 칼럼을 삭제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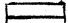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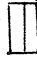
질문표 글씨가 작아 농가의 노인층 응답자에게 자계식으로 하기가 곤란하였음

- 제3차 시험조사 질문표를 설계할때에 뒷면의 공간을 활용하여, 질문표글씨를 크게하는 방안 강구하겠음

조사항목을 만나이별로 도색화하면 시각상 효과적일 것 같음

- 도색화하면 질문표 생산비용이 늘어나니, 만나이별로 시각상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의 건 제 시	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와 OMR 조사표 배열이 달라 질문표를 OMR 조사표에 이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시험조사시 자료처리에 지장이 없는한 반영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질문표가 전반적으로 너무 복잡하며, 사생활 침해항목이 많았으며, 용어가 애매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시험조사시 뒷면을 활용하여 간결한 느낌이 들도록 재설계하겠음. 일종의 Booklet형태로 만들어 자계식 가능토록 용어정의틀 구체화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가 저학력, 저소득계층에는 맞지 않는 항목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쉬운 말로 제3차 시험조사시 반영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MR MARK TYPE을 수평선(  )에서 수직선(  )으로 바꾸면 보다 용이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MR 기계성능상 MARK TYPE을 수직선으로 바꾸는것이 불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는 6인이 기재될 수 있지만 OMR조사표는 5인만 기재할수 있어 이로 인한 이기시간이 더욱더 걸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시험조사시 반영하겠음.</li> </ul>

0 조사방법

의 건 제 시	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에 따라 조사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에서는 면접식이 APT 거주지역에서는 자계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방법을 2원화하면 지도원, 조사 응답자에게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먼저 자계식을 한후 기재누락사항이나,착오기재사항을 면접토록 제3차 시험조사시 반영 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계식조사를 할 경우 기재요령을 첨부해서 질문표와 함께 배부하면 효과적 일 것 같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시험조사 질문표를 설계시, 보다 상세한 기재예시 및 용어정의 보류 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 배부후 1차 방문하여 백지상태로 회수된 가구는 재방문해도 백지상태여서 이런 가구는 면접식이 효율적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표는 자계식으로 가구에 배부한후 백지로 회수된 질문표는 조사요원의 직접 면접토록 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부부가구, 노약자가 집을 지키는 가구가 많아서 이런 가구는 자계식조사가 효율적일 것 같으나, 3차례나 방문해도 기재상태가 백지인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아침(7-8시), 저녁(7-9시) 방문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통반장은 평소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사가 가능하나, 대학생일 경우 조사 불응이 예상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센서스때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시험조사 때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됨.</li> </ul>

○ 기타 건의사항

의 건 제 시	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지침서 교육시 Slide 교육방법이 효율적으로 생각됨.</li> <li>· 혼돈을 야기시키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응답식의 문답식 교육방법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교육을 제3차 시험조사시에는 지침서 교육 및 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습을 반복하여 지침서를 숙달토록 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의 경우 가족수가 많으므로 조사요원의 담당가구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해 보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의 경우 교통사정 및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구 설정시 이에 관한 사항이 고려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MR 조사표 보관용 가방, 볼펜목걸이 등이 필요 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센서스 때에는 조치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통계담당자는 통계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센서스 기간 만이라도 센서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센서스때 각 증양부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서스 조사기간 및 OMR 조사표 이기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착오기재나 기재누락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요원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 하여 반영토록 하겠음.</li> </ul>

## 조사요원명단

<u>조 사 구</u>	<u>임용조사원성명</u>	<u>실제조사원성명</u>
천안시 원성2동	박 우 규	좌 동
" 원성1동	김 용 일	"
" 성 정 동	조 종 훈	"
" 원성2동	조 석 현	"
" 신 부 동	권 혁 종	"
" 성 황 동	정 영 복	"
" 구 룡 동	홍 성 용	"
" "	이 훈 재	홍 성 용
" 업 성 동	황 희 성	좌 동
" "	이 영 집	"
대전시 괴 정 동	박 종 원	"
" 선화2동	김 해 수	백 승 업
" 오 류 동	민 경 순	좌 동
" 태평2동	최 백 서	권 해 련
" 변 동	박 천 우	좌 동
" 회덕2동	윤 기 재	"
" 신 흥 동	심 길 성	"
" 가양2동	김 대 종	여 봉 장
" 탄 동	윤 지 환	좌 동
" 석봉동	강 복 순	"

바. 調查票內檢 및 資料處理結果

1) OMR調查票의 入力上 主要 問題點 檢討

가) 檢討對象

- OMR調查票의 Key分類 Mark ( 家口番號, 總家口員數, 調查票 枚數 等의 記入 Mark ) 狀態.
- Data Mark 의 Double Mark 狀態.

나) 檢討方法

- OMR調查票의 內檢 方式에 依해 한매한매씩 檢討하였음.
- OMR調查票 광학 판독기를 通해 Reading하여 그 結果가 Print된 Sheet上에서 Double Mark를 Check 하였고 實際 OMR調查票 內容과 比較 檢討하였음.

다) 檢討背景 및 活用分野

- 調查票의 入力過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中 現場段階에서 發生되는 主要內容에 對한 現況 및 對處方案을 마련.
- 現場 實查指導 및 教育計劃과 資料處理計劃 部門에 이를 反映하여 入力時間 및 內檢時間의 短縮과 結果資料의 精度提高에 寄與.

라) 檢討結果

(1) 主要項目別 基本分類欄의 記載漏落 및 錯誤現況

單位 : 枚(%)

基本分類欄	集計對象 枚數	記載 漏落 現況			記載 錯誤 現況		
		發生 枚數			發生 枚數		
			大田市	天安市		大田市	天安市
家口番號	1727 (100%)	114 (6.6)	93 (81.6)	21 (18.5)	28 (1.62)	11 (39.3)	17 (60.6)
調查票枚數	1727 (100%)	103 (5.96)	86 (83.5)	17 (16.5)	63 (3.65)	25 (39.7)	38 (60.3)
總家口員數	1727 (100%)	56 (3.24)	42 (75.0)	14 (25.0)	21 (1.22)	12 (57.1)	9 (42.9)

- 全數 및 標本調查票 總 1727 枚 中 家口番號의 漏落枚數가 114枚로서 가장 높은 漏落率( 6.6 %)을 나타냈으며, 調查票 枚數欄도 103枚가 漏落되어 漏落率 5.96%를 나타냈다.

또한 記載錯誤面에서는 總家口員數를 不正確히 移記한 調查票가 63枚로서 記載錯誤率 3.65 % 을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記載錯誤率을 나타냈다.

- 基本分類欄의 平均記載漏落率은 5.26 %, 平均 記載錯誤率은 2.16 % 를 나타냈다
- 調查員의 特性別로는 統班長을 주로 採用한 大田地域보다는 大學生을 주로 採用한 天安市의 移記精度가 좋았다.

(가) 漏落記載事例別 分類

- 특정 調査區內에서 家口의 家口番號, 調査票枚數 등이 大部分의 家口에서 漏落되는 事例가 있음.
- 특정 家口에서 2枚 以上の 調査票을 作成할 境遇 2번째 調査票에도 家口番號, 總家口員數, 調査票枚數 등을 記載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事例가 있음.
- 標本調査家口에서 作成된 調査票中에 첫째 調査票인 全數項目 調査票의 基本分類欄에도 記載하고, 두 번째 調査票인 標本項目 調査票의 基本分類欄에도 記載해야 하나, 두 번째 調査票의 基本分類欄에는 記載되 있지 않은 事例가 있음

(나) 錯誤記載 事例別 分類

○ 家口番號

- 家口番號의 끝자리 1 單位만 Mark한 事例 ( 10 枚 )
- 1 單位 家口番號를 10 單位에 Mark한 事例 ( 3 枚 )
- 其他 ( 15 枚 )

○ 總家口員數

- 女子 家口員數와 總家口員數를 각각 10單位와 1 單位에 Mark한 事例 ( 11 枚 )
- 1 單位 總家口員數를 10 單位에 Mark한 事例 ( 8 枚 )
- 其他 ( 2 枚 )

○ 調査票枚數

- 全體枚數와 部分枚數를 각각 10單位와 1 單位에 Mark한 事例 ( 25 枚 )
- 標本調査票까지 包含하여 調査票枚數를 Counting한 事例 ( 24 枚 )
- 同一 家口에서 2枚 以上이 쓰일 境遇 2번째 調査票에는 2매중 2매로 Mark 해야하나 2매중 1매로 Mark한 事例 ( 6 枚 )
- 其他 ( 8 枚 )

(2) 重複記載 (Data Mark의 Double Mark) 狀態

(가) 主要項目別 重複記載現況

單位 : 家口(%)

		집계대상	전 지역	대전지역	천안지역
항목 별 이중 마크	가구주와의 관계	1039(100)	109(9.1)	103(94.5)	6( 5.5)
	이용교통수단	1039(100)	4(0.38)	4(100.)	-
	지붕재료	1039(100)	3(0.29)	-	3(100)
	난방시설	1039(100)	2(0.19)	-	2(100)
	난방연료	1039(100)	2(0.19)	-	2(100)
	기 타	1039(100)	15(1.44)	6(40.0)	9( 60)
원인 미상의 이중마크 ( 불균소요시간 )		1039(100)	83(7.99)	53(63.8)	30(36.2)

- 總 調査家口 1200家口 中 完全 및 不完全記載되어 回收된 家口는 1039家口였음
- 이 가운데 區分코드를 確認하고 移記하는 가구주와 관계 項目에서 重複記載 狀態가 109家口(10.49%)에서 나타났으며, 불균소요시간 項目에서는 原因未詳의 이중마크가 83家口( 7.99%)에서 나타났다.
- 平均 重複記載率은 2.99%로 나타났다.

(나) 重複記載의 事例別 分類

① 調査員이 重複記載한 境遇

- 家口主와의 關係에서 家口主(구분코드=01)일 境遇 10單位에 "0"을, 1單位에 "1"을 Mark해야하나 그렇지 않고 한 單位에 "01"을 Mark한 事例
- 지붕재료, 난방시설, 난방연료, 이용교통수단에서 主된 內容 하나만 Mark해야 하지만 2 個 以上 Mark한 事例
- 應答內容을 修正할 때 지우고자 하는 內容을 지우지 않고 『/』, 『V』 등을 표시하고, 應答하고자 하는 內容에 Mark를 하여 Double Mark Error가 發生한 事例
- 應答內容을 修正할 때 지우고자 하는 內容이 깨끗이 지우지 않은 狀態로 흔적이 남아있어 새로운 內容에 Mark한 狀態와 弄談比較가 어려우므로 Double Mark Error가 發生한 事例
- 담배제가 묻혀 나와 Double Mark Error가 發生
- 其他

② 原因未詳에 依해 重複記載로 나타난 境遇

○ 通勤所要時間 分單位의 Data Marking은 잘되어 있고 濃度 Level도 正確히 檢出되나, 部分的으로 正確히 읽혀 지지 않고 Double Mark Error 狀態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基本分類欄의 漏落, 錯誤記載 및 DATA의 Double Marking ERROR의 最小化 方案.

(1) 調查票 設計

- 基本分類欄의 처음 移記方法과 나중 移記方法 上의 差異가 있을 境遇를 包含하여 같은 移記作業을 되풀이 하였을 境遇 視覺的 混沌 내지 錯覺을 불러 일으킬 所持가 있으므로 移記方法이 一貫性 있게 할 수 있도록 調查票를 設計했으면 함.
- 調查票 枚數基本欄의 境遇 現在는 "조사표 매수-중-매" 로 印刷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가구의 전수조사표-매중-번째 매" 또는 "이 가구의 표본조사표-매중-번째 매" 으로 바꾸어 設計했으면 함.

(2) 調查票 紙質 : 調查票의 耐久性 및 強度가 좋지 않을 境遇에도 Double Mark Error가 發生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調查票 紙質의 最適化에도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調查員 採用 : 나이 많은 調查員의 境遇 젊은 年齡層에 비해 많은 錯誤가 나타나므로 最小한 50代未滿의 年齡層 특히 纖細한 性格 (家主婦, 女子班長, 女子大學生 等) 을 優先的으로 採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4) 調查員 教育

- 質問票의 內容을 OMR調查票에 移記하는 方法, MARK하는 方法 또는 移記內容의 訂正方法에 對한 教育이 더욱 強化되어야 할 것임.
- 2 가지 以上의 應答이 나올 수 있는 項目 (이용교통수단, 외벽재료, 지붕재료, 식수종류, 취사연료, 난방연료, 난방시설) 등은 主가 된 內容 하나만 應答해야 한다는 점을 教育시 強調하고 質問票에도 이 內容을 눈에 잘 띄이도록 設計했으면 좋겠음.
- 調查票 汚損狀態를 最小化 할 수 있도록 OMR調查票에 對한 移記場所 및 移記環境을 改善해야 할 것임.
  - 男子調查員인 境遇 移記途中 吸煙을 삼가토록 함.
  - 女子調查員인 境遇 손에 짙은 化粧을 하여 調查票를 汚損시킬 수 있으므로 짙은 化粧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訂正할 때는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MARK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우개로 지웠을 境遇 지우개 찌꺼기 등을 깨끗이 除去하도록 함.
  - 먼지, 기름, 물방울 等의 附着에 依한 汚損이 없도록 取扱하고 保管되어야 할 것임.
  - 移記場所로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5) OMR調查票 內檢 : 現場에서의 調查票內檢을 正確히 해야 할 것임.

(6) 調查票 管理

- 調查票 耐久性 및 強度 唯持에 필요한 調查票 保管場所 및 周圍 環境의 恒溫, 恒濕唯持에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OMR調查票가 現地에서 中央의 광학식 마크 판독장치에 입력되기까지 回收, 整理, 移動, 保管管理等 全 節次에 거치는 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調查票의 汚損狀態에 依해서도 Double Mark가 發生할 수 있으므로 이를 最小化 할 수 있도록 管理上의 最適化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7) 光學 마크 判讀 裝置의 判讀 能力 唯持 管理

- Daily Test 및 Check Line Check을 技術的으로 定期的이고, 正確하게 實施하여 만에 하나라도 判讀不良이 일어나지 않도록 點檢한다.
- 判讀室의 作業關係로 쌓일 수 있는 먼지等 汚染狀態에 대한 定期的인 清掃가 必要할 것으로 생각됨. (日本의 境遇 50만매 程度로 月 2回 實施하며, 1회에 3 - 4時間 所要된다.)

(8) Mark Reader Program

Mark의 濃度에는 16段階의 Level이 있는데 여기에 4段階의 濃度 Rank를 賦與한다. 따라서 Rank를 어떤 間隔으로 賦與하는가에 따라 Double Mark를 最小化할 수 있을 것으로 思考됨.  
( 調查票 Mark의 濃도가 가장 密集된 Level을 하나의 Rank로 賦與한다.)



2) 第2次 試驗調查票 資料處理結果

가) 資料處理된 調查票의 質問內容

(1) 全數項目調查票의 質問內容

성별	출생연도	생일
양.음력	교육정도	졸업 여부
통근 여부	이용교통수단	통근(학)소요시간
혼인상태	거처의 종류	소유구분
가구구분	사용방수	식수종류
취사연료	난방연료	의벽재료
지붕재료	연건평	총평수
거주가구수	건축연도	난방시설
부대시설의 부업시설	변소시설	목욕시설
상수도시설	부업시설	화장실시설
주거가능가구수	화장실시설	출입구시설
출입구시설		
동거가구의 부업시설		

(2) 標本項目調查票의 質問內容

경제활동상태	취업 여부	구직활동
혼인연령	혼인연도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	총출생자녀수	생활비
소득		

나) 處理方法

Key Entry에 의해 入力된 質問票內容과 OMR器機에 의해 Reading된 OMR調查票內容을 比較檢討함.

다) 重點處理事項

(1) 第2次 試驗調查地域인 대전시 10個 調查區와 천안시 10個 調查區의 1200 家口를 對象으로 調查된 質問票 內容을 OMR調查票에 어느 程度 正確히 移記하였는가를 알아보는 移記程度

(地域特性別, 調查區別, 項目別, 調査員 特性別 移記程度)

(2) 移記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不正確한 移記를 하였을 境遇의 原因分析

(3) 質問票 內容에 대한 項目別 應答程度

라) 處理內容

(1) 地域 特性別 移記程度

(가) 高所得層 APT地域 : 대전시 오류동, 태평2동, 천안시 원성2동 등 3個 地域

① 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주요 항목	응답대상 건 수	정확한 이기건수	정확한 이기율
1. 거처의 종류	102	94	92.15
2. 부대시설의 화장실시설	100	90	90.00
3. 생일의 양음력 관계	448	402	89.73

②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주요 항목	응답대상 건 수	부정확한 이기건수	부정확한 이기율
1.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100	99	99.00
2. 난방연료	101	62	61.38
3. 경제활동 상태	108	55	50.92

○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의 原因分析

-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 不正確한 移記率 : 99 % )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해 놓은 狀態가 100 % 로 가장 높았음.

- 난방연료 ( 不正確한 移記率 : 61.38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91.93% 로 가장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 ( 不正確한 移記率 : 50.92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98.18 % 로 가장 높았음.

③ 主要 特性

質問項目에 對한 應答率은 96.66 % 이고, 不應答率은 3.34%에 不過했다. 그리고, 質問票의 內容을 OMR調査票에 正確히 移記한 程度는 79.78%이고 非一致率은 20.21%인데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70.23%였고, 질문표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17.94%였다.

(나) 高所得層 單獨住宅 地域 : 대전시 괴정동, 선화2동, 천안시 원성1동 등 3個 地域

① 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주요항목	응답대상 건 수	정확한 이기건수	정확한 이 비율
1. 생일의 양음력 관계	440	389	88.48
2. 거처의 종류	120	103	85.83
3. 성 별	440	371	84.31

②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주요항목	응답대상 건 수	부정확한 이기건수	부정확한 이 비율
1. 소득	28	25	88.28
2. 구직활동	27	24	88.88
3. 혼인연도	51	44	86.27

○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의 原因分析

- 소득 ( 不正確한 移記率 : 89.28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92 % 로 가장 높았음.

- 구직활동 ( 不正確한 移記率 : 88.88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66.66% 로 가장 높았고,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移記하지 않은 狀態도 25 % 로 相當히 높은 原因으로 나타남.

- 혼인연도 ( 不正確한 移記率 : 86.27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88.63 % 로 가장 높았음.

③ 主要 特性

質問項目에 對한 應答率은 97.96 % 이고, 不應答率은 2.04%에 不過했다. 그리고, 質問票의 內容을 OMR調査票에 正確히 移記한 程度는 70.38%이고 非一致率은 29.61%인데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73.14%였고, 移記하지 않은 狀態는 13.48 %,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13.37 %였다.

(다) 中産層 地域 : 대전시 변동 회덕2동, 천안시 성정동, 원성2동 등 4個 地域

① 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主要項目	응답대상 건 수	정확한 이기건수	정확한 이 비율
1. 식수종류	188	158	84.04
2. 생일의 양음력 관계	722	582	80.60
3. 성 별	722	574	79.59

②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主要項目	응답대상 건 수	부정확한 이기건수	부정확한 이 비율
1. 추가구의 출입구 시설	43	36	83.72
2.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144	120	83.33
3. 추가구의 주거가능가구수	43	33	76.74

○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의 原因分析

- 출입구 시설 ( 不正確한 移記率 : 83.72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86.11%로 大部分이었으며,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하지 않은 狀態(8.33%)와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5.55%)도 있었음

-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 不正確한 移記率 : 83.33 % )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99.16%로 가장 높은 原因이었음.

- 추가구의 주거가능 가구수 ( 不正確한 移記率 : 76.74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66.66%로 가장 높았고,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하지 않은 狀態(27.27%)도 相當히 높은 原因으로 나타남.

③ 主要 特性

質問項目에 對한 應答率은 98.07%이고, 不應答率은 1.93%에 不適當하다. 그리고, 質問票의 內容을 OMR調査票에 正確히 移記한 程度는 64.51%이고 非一致率은 35.48%인데,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64.72%였고, 移記하지 않은 狀態는 26.26%,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9.01%였다.

(라) 庶民層 地域 : 대전시 신흥동, 가양2동, 천안시 신부동, 가양2동等 4個 地域

① 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主要項目	응답대상 건 수	정확한 이기건수	정확한 이 비율
1. 생일의 양·음력 관계	651	575	88.32
2. 식수 종류	185	163	88.10
3. 성 별	651	568	87.25

②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主要項目	응답대상 건 수	부정확한 이기건수	부정확한 이 비율
1.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142	119	83.80
2. 동거가구의 출입구시설	42	29	69.04
3. 주가구의 출입구시설, 동거가구의 화장실시설	42	26	61.90

○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의 原因分析

-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 不正確한 移記率 : 83.80 % )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100%로 가장 높은 原因이었음.

- 동거가구의 출입구시설 ( 不正確한 移記率 : 69.04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89.65%로 가장 높은 原因이었음.

- 주가구의 출입구시설 ( 不正確한 移記率 : 61.90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96.15%로 가장 높은 原因이었음.

- 동거가구의 출입구시설 ( 不正確한 移記率 : 61.90 % )

質問票에 應答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88.46%로 가장 높은 原因이었음.

③ 主要 特性

質問項目에 對한 應答率은 96.32% 이고, 不應答率은 3.68%에 不過했다. 그리고, 質問票의 內容을 OMR調査票에 正確히 移記한 程度는 76.26%이고 非一致率은 23.73%인데,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66.72% 였고, 移記하지 않은 狀態는 18.35%,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14.92% 였다.



(마) 변두리 地域 : 대전시 탄동, 석봉동 , 천안시 구룡동, 업성동 등 4個 地域

① 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主要項目	응답대상 건 수	정확한 이기건수	정확한 이 비율
1. 거처의 종류	244	223	91.39
2. 외벽재료	179	158	89.77
3. 지붕재료	176	157	89.20

②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主要項目	응답대상 건 수	부정확한 이기건수	부정확한 이 비율
1. 혼인연도	162	100	61.72
2. 경제활동상태	251	118	47.01
3. 추가구의 주거가능가구수	170	79	46.47

○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의 原因分析

- 혼인연도 ( 不正確한 移記率 : 61.72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46% 로 가장 높았고,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하지 않은 狀態(41%)도 相當히 높은 原因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 ( 不正確한 移記率 : 47.01%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66.94% 로 가장 높았고,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하지 않은 狀態(31.35%)도 높은 原因으로 나타남.

- 추가구의 주거가능 가구수 ( 不正確한 移記率 : 46.47 %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70.88% 로 大部分이었으며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잘못 移記해 놓은 狀態(26.58%)도 높은 原因으로 나타남.

③ 主要 特性

質問項目에 對한 應答率은 90.80 % 이고 , 不應答率은 9.20%에 不適當했다. 그리고, 質問票의 內容을 OMR調査票에 正確히 移記한 程度는 79.26%이고 非一致率은 20.73%인데,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57.36% 였고, 移記하지 않은 狀態는 22.37%,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20.35% 였다.

(2) 調查區別 移記程度

(가) 正確히 移記된 主要 調查區

① 천안시 신부동 5번 調查區

- 調查區 및 調查員 特性 : 庶民層地域으로서 調查員은 20대 초반 男子 大學生이였음
- 移記程度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는 93.94%로 나타났으며,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과 OMR調查票의 內容이 不一致한 境遇는 6.05%에 不過했음

② 대전시 오류동 13번 조사구

- 調查區 및 調查員 特性 : 高所得層 APT地域으로서 調查員은 40대 초반 女子(統長) 調查員이였음
- 移記程度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는 91.48%로 나타났으며,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과 OMR調查票의 內容이 不一致한 境遇는 8.51%에 不過했음

③ 천안시 구룡동 8번 조사구

- 調查區 및 調查員 特性 : 변두리 地域으로서 調查員은 30대 중반 男子 大學生이였음
- 移記程度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는 86.14%로 나타났으며,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과 OMR調查票의 內容이 不一致한 境遇는 13.85%에 不過했음

(나)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調查區

① 대전시 변동 15번 조사구

- 調查區 및 調查員 特性 : 中産層地域으로서 調查員은 30대 중반 男子 (統長) 調查員임.
- 移記程度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는 21.70%에 不過했으며 質問票와 調查票의 記載內容이 不一致한 境遇가 78.29%로 의외로 높은 比率을 나타냈다.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不正確히 移記한 境遇가 66.41%, 移記하지 않은 境遇가 30.77%, 質問票에 未記載된 質問項目에 對해서 OMR調查票에는 任意의 內容이 記載된 境遇가 2.80%였음.

② 대전시 탄동 19번 조사구

- 地域 및 調查員 特性 : 변두리 地域으로서 調查員은 20대 초반 男子(統長) 調查員임.
- 移記程度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는 24.27%에 不過했으며 質問票와 調查票의 記載內容이 不一致한 境遇가 75.72%로 의외로 높은 比率을 나타냈다.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不正確히 移記한 境遇가 80.15%, 移記하지 않은 境遇가 15.71%, 質問票에 未記載된 質問項目에 對해서 OMR調查票에는 任意의 內容이 記載된 境遇가 4.12%였음.

③ 대전시 신흥동 17번 조사구

- 地域 및 調査員 特性 : 庶民層 單獨住宅地域으로서 調査員은 40대 초반 (男子) 統長 調査員임
- 移記程度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는 55.36%에 不適當했으며 質問票와 調査票의 記載內容이 不一致한 境遇가 44.63%로 的의로 높은 比率을 나타냈다. 그 原因別로는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한 境遇가 69.14%, 移記하지 않은 境遇가 23.10%, 質問票에 未記載된 質問項目에 對해서 OMR調査票에는 任意의 內容이 記載된 境遇가 7.75% 였음.

※ 各 調査區別 移記程度는 別添 表3 參照

(3) 項目別 移記程度

(가) 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 正確한 移記率 : 80% 以上 )

주요항목	응답대상 건 수	정확한 이기건수	정확한 이기율
1. 식수종류	830	711	85.66
2. 생일의 양음력	3326	2843	85.47
3. 거처의 종류	841	711	84.54
4. 성 별	3326	2768	83.22
5. 졸업여부	3087	2499	80.95
6. 봉근여부	2645	2120	80.15

(나)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 ( 不正確한 移記率 : 50% 以上 )

주요항목	응답대상 건 수	부정확한 이기건수	부정확한 이기율
1.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642	444	69.15
2. 혼인연도	503	296	58.84
3. 소득	248	132	53.22



○ 不正確히 移記된 主要 質問內容의 原因分析

- 부대시설의 부속시설 (不正確한 移記率 : 69.15 %)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狀態가 99.09% 로 가장 높았음.

- 혼인연도 (不正確한 移記率 : 58.84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62.5 % 로 가장 높았고,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하지 않은 狀態(32.43 %)도 높은 原因으로 나타남.

- 소득 (不正確한 移記率 : 53.22 %)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해 놓은 狀態가 75.75% 로 大部分이었으며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하지 않은 狀態(18.93 %)도 높은 原因으로 나타남.

※ 各 項目別 移記程度는 別添 表1 參照

(4) 調査員의 特性別 移記程度

(가) 年齡別 移記程度

29歲 以下의 젊은 調査員의 移記率이 가장 正確했다. 一般的으로 29歲 以下 젊은 調査員들의 移記程度가 30歲 以上의 調査員에 비해 正確했다.

(나) 職業別 移記程度

職業이 學生인 境遇의 移記程度(80.91 %)가 統班長인 境遇의 移記程度(51.90%) 보다 월등히 優秀했다.

(다) 性別 移記程度

男子 調査員의 移記程度(74.15%)보다 女子 調査員의 移記程度(75.3%)가 보다 正確히 移記하였다.

(라) 學歷別 移記程度

전체 調査員 中 13명을 大學生 調査員으로 採用했는데 이들의 移記程度가 中卒 또는 高卒한 成年層의 調査員에 비해 월등히 優秀했다.

< 第2次 試驗調查 調査員 特性別 移記程度 >

調査員 特性			調査員 數	應答對象 件 數	正確한 移記件數	正確한 移記率	
性別	年齡別	職業및學歷					
전 체 조 사 원	전체	계	20	45562	33864	74.32	
		학생	대재	13	34269	27727	80.91
		봉장	계	6	9826	5100	51.90
			중졸	2	4349	2480	57.03
			고졸	4	5477	2620	47.84
		가사	고졸	1	1467	1037	70.68
	29세이하	계	12	31848	26021	81.70	
		학생	대재	12	31848	26021	81.70
		봉장	계	0	-	-	-
	30-39세	계	3	6013	3078	51.18	
		학생	대재	1	2421	1706	70.46
		봉장	계	2	3592	1372	38.19
			중졸	1	1546	928	60.02
			고졸	1	2046	444	21.70
	40-49세	계	4	6234	3728	59.80	
		학생	대재	0	-	-	-
		봉장	계	4	6234	3728	59.80
			중졸	1	2803	1552	55.36
			고졸	3	3431	2176	63.42
	50세이상	계	1	1467	1037	70.68	
		학생	대재	0	-	-	-
		봉장	계	0	-	-	-
		가사	고졸	1	1467	1037	70.68

調 査 員 特 性			調 査 員 數	應 答 對 象 件 數	正 確 한 移 記 件 數	正 確 한 移 記 率	
性 別	年 齡 別	職 業 及 學 歷					
남 자 조 사 원	전체	계	16	39091	28990	74.15	
		학생	대재	12	31046	25033	80.63
			계	4	8045	3957	49.15
		통장	중졸	1	2803	1552	55.36
			고졸	3	5242	2405	45.89
	29세이하	계	11	28625	23327	81.49	
		학생	대재	11	28625	23327	81.49
		통장	계	0	-	-	-
	30-39세	계	2	4467	2150	48.13	
		학생	대재	1	2421	1706	70.46
			계	1	2046	444	21.70
		통장	중졸	0	-	-	-
			고졸	1	2046	444	21.70
	40-49세	계	3	5999	3513	58.56	
		학생	대재	0	-	-	-
		통장	계	3	5999	3513	58.56
			중졸	1	2803	1552	55.36
			고졸	2	3196	1961	61.36
	50세이상	계	0	-	-	-	
		학생	대재	0	-	-	-
		통장	계	0	-	-	-

調査員 特性			調査員 數	應答對象 件 數	正確한 移記件數	正確한 移記率	
性別	年齡別	職業및學歷					
여 자 조 사 원	전체	계	4	6471	4874	75.30	
		학생	대재	1	3223	2694	83.58
		봉장	계	2	1781	1143	62.18
			중졸	1	1546	928	60.02
			고졸	1	235	215	91.48
		가사	고졸	1	1467	1037	70.68
	29세이하	계	1	3223	2694	83.58	
		학생	대재	1	3223	2694	83.58
		봉장	계	0	-	-	-
	30-39세	계	1	1546	928	60.02	
		학생	대재	0	-	-	-
		봉장	계	1	1546	928	60.02
			중졸	1	1546	928	60.02
			고졸	0	-	-	-
	40-49세	계	1	235	215	91.48	
		학생	대재	0	-	-	-
		봉장	계	1	235	215	91.48
			중졸	0	-	-	-
			고졸	1	235	215	91.48
	50세이상	계	1	1467	1037	70.68	
		학생	대재	0	-	-	-
		봉장	계	0	-	-	-
		가사	고졸	1	1467	1037	70.68

(5) 項目別 應答程度

(가) 應答率이 높은 主要項目 (應答率 : 98 % 以上)

人口에 關한 應答項目이 2項目, 住宅에 關한 項目이 8個로 10個項目이 100%에 가까운 應答率을 나타냈다.

주요 항목	응답대상 건 수	응답 건수	응답 율
1. 봉근소요시간	1368	1368	100
2. 출생년도	3323	3312	99.58
3. 가구구분	841	832	98.93
4. 사용방수	830	821	98.92
5. 식수종류	841	820	98.80
6. 소유구분	841	830	98.69
7. 거처종류	830	830	98.69
8. 난방연료	830	899	98.67
9. 외벽재료	642	832	98.44
10. 지붕재료	642	832	98.44

(나) 應答率이 낮은 主要項目 (不應答率 : 10 % 以上)

人口에 關한 項目이 2項目, 住宅에 關한 項目이 1項目으로서 특히 死亡子女數, 附帶施設의 부屬施設은 不應答率이 70%가 넘게 나타났다.

주요 항목	응답대상 건 수	불응답 건 수	불응답 율
1. 사망자녀수	245	182	74.29
2. 부대시설의 부속시설	642	461	71.81
3. 졸업여부	3087	377	12.21

※ 項目別 不應答程度는 別添 表2 參照

마) 地域特性別, 調査區別, 項目別 및 調査員別 移記程度에 따른 特性

(1) 全數項目의 全體對象 42014件中 正確한 移記件數는 32054件(76.3%)이었고, 標本項目의 全體對象 3548件中 正確한 移記件數는 1810件(51.0%)을 나타냈는데, 全數項目의 移記程度가 標本項目의 移記程度에 비해 正確했다

(2) 第2次 試驗調査質問票의 內容을 OMR調査票에 正確히 移記한 件數는 應答對象 件數(45562件)中 33864件(74.32%)에 달함으로써 25.67%가 質問票의 內容과 OMR調査票의 內容이 不一致하였다. 이러한 不一致의 原因으로써 65.12%가

質問票에 應答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不正確히 移記하였고, 20.28%가 移記하지 않았다. 또한 14.59%는 質問票에 應答되지 않은 內容을 OMR調査票에 記載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地域特性別 正確한 移記率은 中産層 地域이 64.51%, 高所得層이 單獨住宅이 70.38%, 庶民層이 76.28%, 변두리地域이 79.26%, 高所得層 APT 地域이 79.26%로 나타났다.

高所得層 APT地域에 採用된 調査員은 質問에 있는 內容을 가장 正確히 移記한 것으로 나타났고, 中産層 및 高所得層 單獨住宅 地域을 調査한 調査員들은 移記 도중 應答內容을 正確히 移記하지 않고 變形된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質問票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하는데 있어서 가장 理想的인 調査員의 特性은 20대 後半 大學生으로서 女子 調査員인 것으로 나타났다.

(5) 質問票의 應答對象件數 45562件中 2395件(5.26%)이 不應答 하였음. 특히 死亡子女數, 附帶施設의 부업施設, 卒業與否 等の 不應答率은 10%가 넘게 나타났다.

(6) 地域特性別로 應答率은 高所得層 APT 地域이 96.66%, 高所得層 單獨住宅이 97.96%, 中産層이 98.07%, 庶民層이 96.32%, 變두리地域이 90.80%로 나타남으로써 中産層의 應答率이 가장 높았으며, 高所得層보다 低所得層의 應答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바) 不正確한 移記의 最小化 方案

### (1) OMR 調査票 設計

- 現在 定型형으로 되어있는 質問票를 종대형으로 形式으로 質問票를 設計하여 質問票의 Logic과 OMR調査票의 Logic 順序가 一致하도록 設計한다.
- 質問票와 OMR調査票의 質問項目番號가 一致하도록 設計한다.  
( 現在 標本項目은 質問票와 OMR調査票의 項目番號가 不一致 함 )
- 숫자의 各 單位別 Marking을 一括的인 方法으로 할 수 있도록 設計한다.
- 家口員數가 2 - 3 名 마다 一定한 Space 를 두어 視覺的 混濁을 피한다.

### (2) 調査員 採用

- 移記 專門要員을 採用하여 숙달된 移記要員을 養成한다
- 나이 많은 調査員의 境遇 젊은 年齡層의 調査員에 비하여 많은 移記 錯誤를 나타내므로 可能한 한 20대 후반의 젊은 年齡層(특히 大學生)으로서 세세한 性格의 所有者(家庭主婦, 女子班長, 女子大學生 等)를 優先적으로 採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3) 調査員 教育

- 質問票에 있는 그대로의 內容을 OMR調査票에 移記할 것을 強調하여 教育하고, 質問票를 보지도 않고 OMR調査票를 作成하는 일이 없도록 強調하여 教育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됨.
- Double Mark Error 가 發生하지 않도록 Marking 및 訂正方法에 대하여 充分히 教育指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4) 現場에서의 調査票 內檢을 正確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5) 調査票 管理 및 光學 마크 判讀 裝置의 判讀 能力 維持 管理 등을 차질 없이 함으로써 Double Mark Error를 最小化 한다.

### (6) Mark Reader Program의 正確性을 기하여 正確한 Data를 읽을 수 있도록 Programming하므로써 不正確한 移記를 最小化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됨.

별첨 표1. 항목 별 이 기 정 도

항 목	총대상 건 수	정확한 이기건수	정확한 이기율
계	45562	33862	74.32
1. 성별	3326	2768	83.22
2. 출생년도	3326	2481	74.59
3. 생일	3326	2585	77.72
4. 양.음력	3326	2843	85.48
5. 교육정도	3087	2387	77.32
6. 졸업여부	3087	2499	80.95
7. 봉근여부	2645	2120	80.15
8. 이송교봉수단	1368	1034	75.58
9. 봉근(학)소요시간	1368	958	70.03
10. 혼인상태	2450	1827	74.57
11. 거처의 종류	841	711	84.54
12. 소유구분	841	586	69.68
13. 가구구분	841	651	77.41
14. 사용방수	830	638	76.87
15. 식수종류	830	711	85.66
16. 취사종류	830	636	76.63
17. 난방연료	830	598	72.05
18. 외벽재료	642	489	76.17
19. 지붕재료	642	453	70.56
20. 연건평	642	466	72.59
21. 총평수	642	481	74.92
22. 거주가구수	642	477	74.30
23. 건축년도	642	483	75.23
24. 난방시설	642	465	72.43
25. 부대시설의 부엌시설	642	198	30.84
26. " 변소시설	642	492	76.64
27. " 목욕시설	642	478	74.45
28. " 상수도시설	642	459	71.50
29. 주거의 주거가능구수	330	168	50.91
30. " 부엌시설	330	235	71.21
31. " 화장실시설	330	239	72.42
32. " 출입구시설	330	172	52.12
33. 동거가구 부엌시설	160	101	63.13
34. " 화장실시설	160	84	52.50
35. " 출입구시설	160	81	50.63
36. 경제활동상태	735	368	50.07
37. 취업여부	299	179	59.87
38. 구직활동	277	148	53.43
39. 혼인연령	503	256	50.89
40. 혼인연도	503	207	41.15
41. 생존자녀수	245	130	53.06
42. 사망자녀수	245	158	64.49
43. 총출생자녀수	245	124	50.61
44. 생활비	248	124	50.00
45. 소득	248	116	46.77



별첨 표2. 항목별 불응답 정도

항 목	총대상 수	불응답1 수	불응답2 수	불응답 총 수	불응답율
계	45562	688	1707	2395	5.26
1. 성별	3326	0	160	160	4.81
2. 출생년도	3326	0	14	14	0.42
3. 생일	3326	9	43	52	1.56
4. 양.음력	3326	4	174	178	5.35
5. 교육정도	3087	26	70	96	3.11
6. 졸업여부	3087	260	117	377	12.21
7. 통근여부	2645	19	135	154	5.82
8. 이용교통수단	1368	14	42	56	4.09
9. 통근(학)소요시간	1368	0	0	0	0.00
10. 혼인상태	2450	36	113	149	6.08
11. 거처의 종류	841	1	10	11	1.31
12. 소유구분	841	0	11	11	1.31
13. 가구구분	841	0	9	9	1.07
14. 사용방수	830	0	9	9	1.08
15. 식수종류	830	1	9	10	1.20
16. 취사종류	830	0	14	14	1.69
17. 난방연료	830	1	10	11	1.33
18. 의벽재료	642	3	7	10	1.56
19. 지붕재료	642	3	7	10	1.56
20. 연건평	642	1	12	13	2.02
21. 총평수	642	3	12	15	2.34
22. 거주가구수	642	3	13	16	2.49
23. 건축년도	642	4	15	19	2.96
24. 난방시설	642	3	21	24	3.74
25. 부대시설의 부속시설	642	21	440	461	71.81
26. " 변소시설	642	3	17	20	3.12
27. " 목욕시설	642	4	15	19	2.96
28. " 상수도시설	642	7	35	42	6.54
29. 주거의 주거가능구수	330	4	8	12	3.64
30. " 부속시설	330	3	11	14	4.24
31. " 화장실	330	3	12	15	4.55
32. " 출입구	330	3	9	12	3.64
33. 동거가구 부속시설	160	3	10	13	8.13
34. " 화장실	160	3	9	12	7.50
35. " 출입구	160	4	11	15	9.38
36. 경제활동상태	735	16	10	26	3.54
37. 취업여부	299	4	14	18	6.02
38. 구직활동령	277	9	12	21	7.58
39. 혼인연령	503	12	7	19	3.78
40. 혼인연도	503	12	15	27	5.37
41. 생존자녀수	245	14	2	16	6.53
42. 사망자녀수	245	154	28	182	74.29
43. 총출생자녀수	245	14	3	17	6.94
44. 생활비	248	1	6	7	2.82
45. 소득	248	3	7	10	4.03

\* 1. "불응답1"은 질문표와 OMR조사표에 당연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기재된 경우임.

\* 2. "불응답2"은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질문표에는 미기재, OMR조사표에는 기재된 경우를 말함.

별첨 표3. 제 2 차 시험조사 이기상태 및 조사원 특성

이기상태 지역명	이 기 상 태											조 사 원 특 성					
	전체대상	일치건수	일치(%)	일치1(%)	일치2(%)	불일치건	불일치(%)	불1(%)	불2(%)	불3(%)	미기제건	미기제(%)	나이	직업	성별	학력	
전지역	45562	33862	74.32	97.96	2.03	11700	25.67	65.12	20.28	14.59	2395	5.26					
대전시	17769	10738	60.43	98.04	1.95	7031	39.56	71.20	20.65	8.13	782	4.40					
천안시	27793	23124	83.20	97.93	2.06	4669	16.79	55.95	19.73	24.31	1613	5.80					
11 조사구	2421	1706	70.46	99.76	0.23	715	29.53	82.51	3.35	14.12	105	4.33	30	학생	남	자	
12 조사구	1546	928	60.02	99.13	0.86	618	39.97	76.21	15.53	8.25	59	3.81	39	학생	여	자	
13 조사구	235	215	91.48	100.00	0.00	20	8.51	45.00	0.00	55.00	11	4.68	40	학생	여	자	
14 조사구	3223	2694	83.58	98.58	1.41	529	16.41	71.45	12.09	16.44	125	3.88	22	학생	여	자	
15 조사구	2046	444	21.70	88.51	11.48	1602	78.29	66.41	30.77	2.80	96	4.68	34	학생	남	자	
16 조사구	2291	1291	56.35	98.29	1.70	1000	43.64	67.60	24.90	7.50	97	4.23	45	학생	남	자	
17 조사구	2803	1552	55.36	97.68	2.31	1251	44.63	69.14	23.10	7.75	133	4.74	40	학생	남	자	
18 조사구	905	670	74.03	99.40	0.59	235	25.95	73.19	8.08	18.72	48	5.29	45	학생	남	자	
19 조사구	832	202	24.27	97.02	2.97	630	75.72	80.15	15.71	4.12	32	3.84	22	학생	남	자	
20 조사구	1467	1037	70.68	96.04	3.95	430	29.31	64.18	27.67	8.13	76	5.17	50	학생	여	자	
1 조사구	2692	1998	74.21	99.19	0.80	694	25.78	70.02	11.95	18.01	141	5.24	19	학생	남	자	
2 조사구	2145	1668	77.76	97.84	2.15	477	22.23	55.13	25.99	18.86	126	5.86	19	학생	남	자	
3 조사구	2829	2379	84.09	98.10	1.89	450	15.90	51.33	22.00	26.66	165	5.83	22	학생	남	자	
4 조사구	2780	2303	82.84	98.26	1.73	477	17.15	65.61	18.02	16.35	118	4.24	20	학생	남	자	
5 조사구	3021	2838	93.94	98.73	1.26	183	6.05	37.15	10.92	51.91	131	4.32	24	학생	남	자	
6 조사구	2362	1873	79.29	98.29	1.70	489	20.70	68.50	13.90	17.58	118	4.99	26	학생	남	자	
7 조사구	3146	2595	82.48	97.88	2.11	551	17.51	52.81	17.78	29.40	217	6.89	25	학생	남	자	
8 조사구	2923	2518	86.14	95.71	4.28	405	13.85	40.00	41.48	18.51	183	6.25	25	학생	남	자	
9 조사구	3036	2605	85.80	98.34	1.65	431	14.19	58.00	21.11	20.88	133	4.38	25	학생	남	자	
10 조사구	2859	2348	82.12	97.14	2.85	511	17.87	41.68	16.43	41.87	281	9.82	25	학생	남	자	

- \* 1. "일치1"은 질문표와 OMR조사표 기재된 내용이 일치된 경우이며,  
"일치2"은 질문표와 OMR조사표에 당연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 기재된 경우임.
- \* 2. " 불1 "은 질문표와 OMR조사표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된 경우이며,  
" 불2 "은 질문표의 내용이 OMR 조사표에 미기재된 상태이며,  
" 불3 "은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내용에 대해 질문표에는 미기재, OMR조사표에는 기재된 경우를 말함.